

(- -)

2026. 8. 4



가
Korea Law Service Center

- 1.
- 2.
- 3.

- 1.

- 1.
- 2.
- 3.

1. 가

- 1.
- 2.
- 3.

3 3 <2006. 6. 12.>

4 ()

1. “ ”

2. “ ”

() ,

3. “ ”

4. “ ”

5. “ ”

()

6. “ ”

7. “ ” 1 1 12 31 1

가.

가

8. “ ”

12

9. “ ”

[2009. 3. 31.]

4 2()

(“ ”

)

1. 16 1 1 3

2. 37 2 2 67 2

가

3. 74 4

4. 「 」 7 2

5. 「 」 23 1

6.

가

1 3 7 .

,

.

,

.

.

1 5 .

.

[2024. 1. 5.]

2 < 2009. 3. 31.>

5 () 1 3,
3 2, 4 6 , 8 10 14

. < 2011. 7. 4., 2013. 12. 11.>

[2009. 3. 31.]

6 ()

. < 2009. 3. 31.>

<1998. 12. 31.>

「 」 29 1 2

.< 2009. 3. 31.>

12

.< 2009. 3. 31.>

[2009. 3. 31.]

3

7 () (

) 가 . ,

.

[2009. 3. 31.]

8 ()

15

가

가

, 「 가 」

26 2 「 」 25 3

, 1 [「

」 3 2 3 • 4 「 」 3 2 2 • 3

(

) 「

」

3

3

「

」

3

5

]

.<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2024. 1. 5., 2025. 1. 3.>

2

「 가

」

71

2

4

「

」

63

2 4

「

」

57

3

「

」 38 15

.< 2025. 1. 3., 2026. 7. 30.>

1. 「

」

11

3

7

「

」

11

2

7

: 1 6

2.

: 3

30

가

.< 2025. 1. 3.>

.< 2025. 1. 3.>

1990 1 1

3,

3 2,

4,

8

10

1989 12

31

1989

12

31

가

15 2

.< 2013. 12. 11., 2025. 1. 3.>

[2009. 3. 31.]

8 2(

)

1

. ,

(

, ,

)가

2

.< 2010. 1. 7.>

1

.< 2023. 1. 6.>

1. 「 」 2 2 2

2.

3. 가 4 3

4. 가 3

5.

3
2 3

「 」

」 2 2 4 .

[2009. 3. 31.]

9 ()

. < 2011. 1. 10.>

1. [(]가

1 2.

2. 15 2 3

3.

1 1 1 2 1 ,

1 2 15 2 3

1 . , (

), , .< 2011. 1.

10., 2026. 1. 2.>

2 3

가 가 .

[2009. 3. 31.]

9 2 <1990. 1. 15.>

10 () 7 8 2 • 3 ,

8 2 2 9 1 1 • 1 2 • 3

(前歴)

. < 2025. 1. 3.>

1 , .

.< 2013. 3. 23., 2014. 11. 19.>

[2012. 1. 6.]

11 () , ,
 , . (3, 3 2, 4 6 ,
 8 10) (,
 , 「 」 7 1 1 7
 .) (,
 .) . <

2009. 3. 31., 2014. 7. 16., 2026. 6. 30.>

1 28 .<

2009. 3. 31.>

(5, 6) 1
2 (,
 .
)
1 2

.< 2009. 3. 31., 2013. 3. 23., 2014. 11.

19.>

<1990. 1. 15.>

2 3

12 13

, .

.< 2009. 3.

31.>

<1990. 1. 15.>

(5

) . ,
 ,

12 12 1 .<

2009. 3. 31.>

[2009. 3. 31., 2014. 7. 16.]

12 (•) , , , 3, 4 6 , 8
10)

. < 2014. 7. 16.>

28

2 가 .
2

12 13

(3

)

1 1 4

“ ” “ ” .

[2009. 3. 31.]

13 () (“ ”)

1 . , . < 2010. 1. 7.>

1. 1 14 : 1 9

2. 14 16 : 2

<2014. 1. 8.>

1 .
3 14

14

[2009. 3. 31.]

14 ()

. < 2009. 4. 30.,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 ()

2. (3
) [「 가 」 78 2 1

, (

), , 6 가

]

가. • : 18 (13)

. : 12

. , : 6

3. (「 가
」 가
) 「 」 가

: 6

4. 17 1 가 :
1

5. 「 」 8 2

1

.< 2020. 1. 7.>

, , 가

1 2 2 1 .< 2011. 7. 4.>

[2009. 3. 31.]

15 () 14 13 1

, . , 「
」 57 5 1 (가)

. <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2025. 1. 3., 2026. 1. 2.>

1. 「 」

2.

14 1 2 . ,

.

가. : 9

. : 7

. : 5

. , : 3

3. 14 1 3 2

4. , , , , , 가 ,
(
50)

5. 「 」 7 2 「
」 5 2

6. 「 가 」 71 2 4 「 」 44 1 7
. , 1 1
1 (「 」 11 3 7
1 6) ,

6 2. 「 가 」 71 2 5 「 」 44 1 9
90

7. 「 가 」 73 3 1 「 가 」
31 2 2 . 「 」 31 2 2 가
“ ” ,
가 “ ” .

8.

(

)

9. (.),

,

10. 가

[2009. 3. 31.]

16 () 13

1 . < 2014. 1. 8., 2017. 1. 6.>

1.

2. 가 가

3.

1 1 3

.< 2014. 7. 16., 2024. 1. 5.>

4 2 1

2

.

.

4 2 3

,

.< 2024. 1. 5.>

1

,

2

.

,

,

1

「

」

22

1

1

3

2

4

.

4

5

1

.

1

6

.< 2013. 3. 23., 2014. 11. 19.>

[2009. 3. 31.]

17 (가

) 가

29

(가

가

)

.

, 9

1

. < 2009. 3. 31., 2017. 1. 6.>

<1993. 12. 31.>

1

가

,

가

3

7

.< 2009. 3. 31., 2017. 1.

6.>

가

.< 2009. 3. 31.>

<2017. 1. 6.>

[2017. 1. 6.]

18 ()

.

1

가 ,

.

[2009. 3. 31.]

4

19 ()

.

, , ,

.

[2009. 3. 31.]

19 2()

, (

“ ”) . < [2013. 1. 9., 2016. 1. 8., 2019. 1. 8., 2020. 3. 10.>](#)

1.

2. 「 」 16

3.

4.

5.

(

)

「

」 2 1 가 (

,) 2 가 (

,)

1

,

.

< [2013. 3. 23., 2014. 11. 19.>](#)

[2009. 12. 7.]

20 ()

30

. ,

.

가

1

.

[2009. 3. 31.]

21 ()

· , ·
·

32

「 」 4

.< 2013. 3. 23., 2014. 11. 19.>

[2009. 3. 31.]

22 ()

, , , , , ,
·

가 ()

[2009. 3. 31.]

23 ()

) 1

3

(“ ”

()

· ,

·

,

가

· ,

·

(「

」

「

」

7

2

)

가

「

」 4

2

3

.< 2016. 1. 8.>

[2009. 3. 31.]

24 (5)

22 1

. < 2014. 1. 8., 2024. 1. 5.>

1. 5 15

, 「 」 40 1

4 6

2. 2 「 」

(1)

3. (

1)

1 (

)

.< 2011. 8. 29.>

「 」 18

65 1 1

.< 2010. 1. 7., 2011. 8. 29.>

1 3

,

.< 2010. 1. 7., 2011. 8. 29.>

[2009. 3. 31.]

[2014. 1. 8.]

25 ()

. < 2011.

7. 4.>

.

24 1

.

15

.

[2009. 3. 31.]

26 ()

「 가 」

80 . < 2016. 6. 24.>

[2009. 3. 31.]

27 () 가 가
가

. < 2014. 1. 8. >
가

[2009. 3. 31.]

28 () 「 가 」 71 1 1 「
」 44 1 1 • 7 3
()

<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5. 1. 3. >

1. 1 : 70
2. 1 2 : 50
1

50 2

. < 2014. 1. 8. >
「 가 」 47 3
1 2

. < 2014. 1. 8. >

1 2 . < 2014. 1. 8. >

[2009. 3. 31.]

29 ()
()

. <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

1. 「 가 」 73 3 1 2 , 「 」 44 2 1 1
「 」 29 1 1 : 80

2. 「 가 」 73 3 1 5 : 70 . ,
3 3
40

3. 「 가 」 73 3 1 3 • 4 • 6 , 「 」 44 2
1 2 4 「 」 29 1 2 4
: 50 , 3

3

30

.

[2015. 1. 6.]

30 () ,
() .

. < 2017. 1. 6. >

15 7

. < 2016. 6. 24. >

1 2

「 」 19 7

. < 2016. 6. 24. >

[2009. 3. 31.]

30 2(가)

가 가 .

. . . (11

) 8 1000 , 12 (36 2 1
) 8 2800 가 , 가

10 . <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

(13)

가 . , . .

. < 2010. 1. 7., 2018. 1. 18., 2019. 1. 8., 2024. 1. 5., 2025. 1. 3. >

<2010. 1. 7. >

[2009. 3. 31.]

30 3()

(

)

. < 2015. 1. 6., 2016. 12. 30.,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

1. 「 」 3 3

2. 「 」 57 3
3. 「 」 7 4 1
4. 「 」 30 2 2
5. 「 」 19 5
6. 「 」 30 3 1
7. 「 」 48 2

[2014. 1. 8.]

30 4()

30 2

. <

[2013. 12. 11.>](#)

[2010. 9. 10.]

[2013. 12. 11.]

5 < 2009. 3. 31.>

31 ()

.

1

, , ,

.

[2009. 3. 31.]

32 ()

「

」 4

, ,

. <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5. 12. 30.>](#)

, () (,)가

.

,

.<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5. 12. 30.>](#)

[2009. 3. 31.]

32 2()

.

30 3 1

.< 2010. 9. 10.>

1 1

30 3 2

.<

2010. 9. 10.>

[2009. 3. 31.]

5 2

33 ()

31 .

, 31

31

(1 1

)

.<

2016. 1. 8., 2017. 1. 6.>

[2009. 3. 31.]

34 ()

(

.) .

1 • 4

5

.

[2009. 3. 31.]

35 ()

32

33

.

[1998. 12. 31.]

36 ()

32

.

(

36 2 1

)

33

()

. ,

33

,

.< 2011. 1. 10.,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1. (

1

12

11, 2

12 10, 3

12 9, 4

12 8, 5

12 7, 6

12 6, 7

12 5, 8

12 4, 9

12 3, 10

- 12 2, 11 12 1
- 가)
2. (2 가 ,
- 가 5
-)
3. (「 」 13
-)
4. 「 」 3 2 1
- 150 (「 가 」 28 4 1
- 170)
- 33
- ,
- ,

.<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20. 1. 7., 2026. 1. 2.>

- 1.
- 2.
3. (33 5 9
-)
- 4.
- 3

· , 74 1

6

.<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 「 」 3 2 2
- 33 (가
- 150) ,
- ,
- 가
- 150

.< 2010. 1. 7.,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3 5 (5)

3 4 ,

,

.<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4. 11. 19.>

[2009. 3. 31.]

36 2() 「 」 2
「 」, 「 」, 「 」
「 」, 「 」
(“ ”) 33
8

. , 33

,

. < 2011. 9. 6., 2012. 7. 10., 2013. 3. 23., 2014. 11. 19.,

2021. 6. 1.>

1. (1 12 11, 2
12 10, 3 12 9, 4
12 8, 5 12 7, 6
12 6, 7 12 5, 8
12 4, 9 12 3, 10
12 2, 11 12 1

가)

2. (2 가)

3.

「 」 11 4

.< 2022. 1. 4.>

.< 2013. 3. 23., 2014. 11. 19.>

1

가 .<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1. 1. 10.]

37 () 31 31
(.)

12 31

, 1 1

12 31

12 31

. <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6. 1. 2.>

1. (

1 1

1

, 2 1

1

12

11, 3 1

12

10, 4 1

12

9, 5 1

12

8, 6 1

12

7, 7 1

12 6,

8 1

12

5, 9 1

12

4, 10 1

12 3,

11 1

12

2, 12 1

12

1

가

)

2.

(

12

31

2

가

,

12

31

가 5

)

3.

(「

」

13

)

4.

가

.

1

5

.

<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1. 5 ()

4 ()

: 890 9

2. 4 ()

3 ()

: 977 2

3. 3 ()

2 ()

: 868

4. 2 ()

1 ()

: 1,011 9

[2009. 3. 31.]

[2011. 1. 10.]

37 2()

)

36

37

<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36

3

5

33

.< 2024. 1. 5.>

[2009. 3. 31.]

37 3()

35 37 2

가

1

, 8

.< 2016. 1. 8., 2017. 1. 6.>

1. 5 6

2.

3.

4.

5.

[2009. 3. 31.]

38 ()

[4 ()]

,

.< 2017. 1. 6.>

.< 2016. 1. 8., 2017. 1. 6.>

[2009. 3. 31.]

39 ()

(

)

가

.<

2011. 1. 10.>

34 2

.< 2021. 1. 5.>

1 2

.< 2017. 1. 6., 2026. 1. 2.>

1. 「 」

2. 5 ()

1

(

)

3. 「

」 7 2 「

」 5 2

「

」 24 2

1 2

가

가

.< 2021. 1. 5.>

.<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2009. 3. 31.]

39 2()

가

1 가

.< 2013. 3.

23.>

가 가 20
1.5 2 , 가 30
1.2 1.5 , 가

40

, 가 10

가 10

가
.< 2016. 1. 8.>

1.5 2

2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2011. 1. 10.]

40 () 1 1

,

가

. < 2013. 3. 23., 2014. 11. 19.>

[2009. 3. 31.]

41 () (

) 가

. <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1998. 12. 31.]

42 ()

,

가) (

[2009. 3. 31.]

43 () 1
2

[2009. 3. 31.]

44 (5)

42 1

. < 2014. 1. 8., 2024. 1. 5.>

1. 5 15 ,

2. 2 「 」

(1)

3. (

1)

1 (

)

. < 2012. 1. 6.>

1 2

,

. < 2012. 1. 6.>

[2009. 3. 31.]

[2014. 1. 8.]

45 <2023. 1. 6.>

46 () 가 가 ()
가 ()

. < 2014. 1. 8., 2016. 6. 24.>

가 ()

. < 2016. 6. 24.>

[2009. 3. 31.]

47 () 「 가 」 71 1 1 「
」 44 1 1 • 7 3

() . ,

. < 2014.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5. 1. 3.>

1. 1 : 60

2. 1 2 : 40

1

() 40

2

.< 2014. 1. 8., 2016. 6. 24., 2025. 1. 3.>

「 가 」 47 3

1 2

.< 2014. 1. 8.>

1 2 ()

.< 2014. 1. 8., 2016. 6. 24.>

[2009. 3. 31.]

48 ()

. < 2015. 11. 18., 2016. 1. 8., 2019. 1. 8., 2022. 1. 4.>

1. 「 가 」 73 3 1 2 , 「 」 44 2 1 1

「 」 29 1 1 : 70

2. 「 가 」 73 3 1 5 : 60 .

, 3 3

30

3. 「 가 」 73 3 1 3 • 4 • 6 , 「 」 44 2

1 2 4 「 」 29 1 2 4

: 40 . , 3

3 20

.

[2015. 1. 6.]

48 2() 4 (

) 「 」 43 1

(

)

. ,

26 , 47 48 1

.

[2024. 1. 5.]

49 () ,
() .

. < 2017. 1. 6., 2020. 1. 7.>

「 」 31 2 2

31 2 2 가 “ ” ,
가 “

” .< 2016. 6. 24., 2020. 1. 7.>

[2009. 3. 31.]

50 ()
. < 2013. 3. 23., 2014. 11. 19.>

[2009. 3. 31.]

6 < 2001. 11. 13.>

51 () 7 “ ” 「 」 20 2 「
」 32 2 , (

. < 2013. 3. 23., 2023. 7. 11.>

[2007. 11. 13.]

52 () (.
) .

1 • 4 5

[2009. 3. 31.]

53 () 4 3
. < 2016. 1. 8., 2017. 1. 6.>

5 ,

35 .< 2016. 1. 8., 2017. 1. 6.>

[2009. 3. 31.]

54 () 5

3

. < 2013. 3. 23., 2023. 7. 11.>

2 4

,

36

. < 2013. 3. 23., 2023. 7. 11.>

,

.

< 2013. 3. 23., 2014. 11. 19.>

2

7

,

. < 2013. 3. 23.>

[2009. 3. 31.]

55 () 5

35

36 2

.

35

,

. <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09. 3. 31.]

56 () 4

5

37 1

.

“ ” “ ”

. < 2016. 1. 8., 2017. 1. 6.>

5

37

(

)

가 . , 2

. < 2016. 1. 8., 2017. 1. 6.>

6

5

(

)

(6

)

,

. < 2016. 1. 8., 2017. 1. 6.>

5

4

(

)

.< 2016. 1. 8., 2017. 1. 6.>

6 2 가
() . , 14
65 .<

2017. 1. 6.>

5

5 4 1
3 , 8 .<

2016. 1. 8., 2017. 1. 6.>

[2009. 3. 31.]

57 ()
5 37
1 ,

.< 2016. 1. 8., 2017. 1. 6.>

[2009. 3. 31.]

58 () 5 (14)
가 , .<

2017. 1. 6., 2026. 1. 2.>

1. 「 」
2. 5 1
3. 「 」 7 2 「
」 5 2 「
」 24 2
1 가 3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2009. 3. 31.]

59 () 5 1 1
, ,
.

. <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17. 1. 6., 2023. 7. 11.>

1

가

. < 2013. 3. 23., 2023. 7. 11.>

[2009. 3. 31.]

60 ()

. < 2023. 10.

10.>

1. (「 가 」 43 3)

2. 「 」 43 1

3. 「 」 26

[2009. 3. 31.]

61 () 4

6

8 , 9 , 11 13 , 14 (1 3), 15

18 , 「 」 31 , 32 35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12 ” , “ 2

” “ 10 11 ” , “ 3 ” “ 9 ” , “ 4 ” “ 6 8

” , “ 5 ” “ 5 ” , “ 6 ” “ 4 ” , “ 7 ” “ 3 ” ,

“ 8 ” “ 2 ” , “ 9 ” “ 1 ” . < 2010. 9. 10., 2016. 1. 8.,

2017. 1. 6.>

「 」 31

6

7

.

5

41

44 ,

46 48 , 48 2, 49 50

. “ ”

“ ” . < 2016. 1. 8., 2017. 1. 6., 2024. 1. 5.>

47

48

가

[2009. 3. 31.]

7

< 2006. 6. 12.,

2007. 7. 2.>

62 () (「 」 17 2
(“ ”)

1 • 4 5

[2009. 3. 31.]

63 () 31

. < 2013. 3. 23., 2017. 1. 6., 2017. 7. 26.>

[2009. 3. 31.]

64 ()

38 , . < 2013. 12. 11.>

[2009. 3. 31.]

65 () 39

. < 2013. 3. 23., 2014. 11. 19.>

[2009. 3. 31.]

66 () 3

9

4 977 2

, 8

537 5 , 7

(6 56

) 977 2 가 .< 2011. 1. 10., 2012. 1. 6., 2013. 1. 9., 2014. 1. 8., 2015. 1. 6., 2016. 1. 8., 2017. 1. 6.,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1. 1. 5., 2022. 1. 4., 2023. 1. 6., 2024. 1. 5., 2025. 1. 3., 2026. 1. 2.>

1 2

[2009. 3. 31.]

66 2() 3 9

1

[2009. 3. 31.]

67 () ,

65 66

. <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65

.< 2024. 1. 5.>

[2006. 6. 12.]

68 () 40

가

가

.< 2013. 3. 23., 2014. 11. 19.>

[2009. 3. 31.]

69 () (「 」 26 4

)

[2009. 3. 31.]

70 ()

가

가 「 가

」 4

가

.< 2010. 1. 7., 2017. 1. 6.,

2017. 7. 26., 2020. 1. 7.>

1 가 「
 」 20 2 가 41 .< 2010.
 1. 7., 2016. 1. 8., 2021. 1. 5.>

1 2 「 」
 「 가 」 11 1 가
 .<
 2016. 6. 24.>

1 2 가
 가
 .< 2021. 1. 5.>

,
 .<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4., 2021. 1. 5.>

[2009. 3. 31.]

71 ()
 , 3
 20 , 3
 6 30 , 6
 40 . < 2016. 6. 24.>
 1. 「 」 18 5 8
 27 1 2

2. 1

3. 「 」 26 2 5 26 3 2 3

1 ,
 (,
) 3 . ,
 50

.< 2016. 6. 24.>

[2009. 3. 31.]

72 ()
 26 46 48 . < 2023. 1. 6.>
 47 48 가

.

1 71

[2009. 3. 31.]

73 ()

40 44 , 49 50 .

5 8 , 9 11 18 .< 2017. 1. 6.,
2017. 7. 26.>

[2009. 3. 31.]

8 < 2009. 3. 31.>

74 ()

29 1

」 30 1

1

1 • 2 , 39 「

21

」 22

.< 2013. 3. 23., 2014. 11. 19.>

1

가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1

.< 2024. 1. 5.>

4 2 1

4

•

4 2 3

,

.<

2024. 1. 5.>

1

5

1

.<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2009. 3. 31.]

75 () 「 」 3 1
 5 1 • 3 • • •
 (“ • ”)가

. < 2024. 1. 5., 2024. 8. 13.>

1. 16 3 “ ” “ • ” , “
 ” “ • ” .
2. 20 1 “ ” “ • ” .
3. 28 3 47 3 “ ” “
 ” .

[2020. 3. 10.]

76 () 「 」 3 5 3
 16 3 “
 ” “ ” , “ ” “ ”

. < 2024. 1. 5.>

[2023. 1. 6.]

< 12026 ,1986. 12. 30.>

1 () 1987 1 1 .

2 () 11837

2 1 ,
 •

가 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 | 2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1 | 2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 8 10 1986 1 1
 28 11
 .
 11 12
 (1987 1 1 . “
 ”) .

1.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40 || | 1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 39 || | 2 3 | 33 |
 | 2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38 || | 1 2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7 || | 1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 36 || | 2 3 | 30 |
 | 3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35 ||  |1      2      | 29 |
|  +-----+-----+-----+-----+-----+-----+
-----+-----+
|  |1      | 28 ||  |1      | 16 |
+-----+-----+-----+-----+-----+-----+
-----+-----+
|  |1      2      | 27 ||  |1      2      | 15 |
| 6 +-----+-----+-----+-----+-----+-----+
-----+-----+
|  |1      | 26 ||  |1      | 14 |
+-----+-----+-----+-----+-----+-----+
-----+-----+
|  |      |  ||  |1      2      | 13 |
|  |1      2      | 25 || 13 +-----+-----+-----+-----+
-- +
|  |      |  ||  |1      | 12 |
| 7 +-----+-----+-----+-----+-----+-----+
-----+-----+
|  |      |  || 14 |      | 11 |
|  |1      | 24 | +-----+-----+-----+-----+-----+
-- +
|  |      |  || 15 |      | 10 |
+-----+-----+-----+-----+-----+-----+
-----+-----+
|  |      |  || 16 |      | 9 |
|  |1      2      | 23 | +-----+-----+-----+-----+-----+
-----+
|  |      |  || 17 |      | 8 |
| 8 +-----+-----+-----+-----+-----+-----+
-----+-----+
|  |      |  || 18 |      | 7 |
|  |1      | 22 | +-----+-----+-----+-----+-----+
-- +
|  |      |  || 19 |      | 6 |
+-----+-----+-----+-----+-----+-----+
-----+-----+

```

```

|   |           |   || 20 |           |   5 |
|   |1       2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21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0 || 22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19 || 23 |           |   2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8 || 24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17 || 25 |           |   |
| 11 |           |   ||   |           |   1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3 | 1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4 2 | 2 |
| +-----+-----+-----+-----+-----+----- | | |
| -----+-----+ | | |
| 1 | 35 3 | 3 |
| +-----+-----+-----+-----+-----+----- | | |
| -----+-----+ | | |
| 6 1 6 34 4 | 4 | |
| 2 | | |
| +-----+-----+-----+-----+-----+----- | | |
| -----+-----+ | | |
| 6 33 1 | 33 | |
| +-----+-----+-----+-----+-----+----- | | |
| -----+-----+ | | |
| 1 1 6 33 | 6 1 6 32 | |
| 3 | 2 | |
| +-----+-----+-----+-----+-----+----- | | |
| -----+-----+ | | |
| 1 32 | 6 31 | |
| +-----+-----+-----+-----+-----+----- | | |
| -----+-----+ | | |
| 6 1 6 31 | 1 1 6 31 | |
| 4 | 3 | |
| +-----+-----+-----+-----+-----+----- | | |
| -----+-----+ | | |
| 6 30 | 1 30 | |
| +-----+-----+-----+-----+-----+----- | | |
| -----+-----+ | | |
| 1 1 6 30 | 6 1 6 29 | |
| 5 | 4 | |
| +-----+-----+-----+-----+-----+----- | | |
| -----+-----+ | | |
| 1 29 | 6 28 | |
| +-----+-----+-----+-----+-----+----- | | |
| -----+-----+ | | |
| 6 1 6 28 | 1 1 6 28 | |

| | | | | |
|--------------------------------|-----|----|---|----------|
| 6 | | 5 | | |
| +-----+-----+-----+----- | | | | |
| -----+-----+ | | | | |
| 6 | | 27 | 1 | 27 |
| +-----+-----+-----+-----+----- | | | | |
| -----+-----+ | | | | |
| 1 | 1 6 | 27 | 6 | 1 6 26 |
| 7 | | 6 | | |
| +-----+-----+-----+----- | | | | |
| -----+-----+ | | | | |
| 1 | | 26 | 6 | 25 |
| +-----+-----+-----+-----+----- | | | | |
| -----+-----+ | | | | |
| 6 | 1 6 | 25 | 1 | 1 6 25 |
| 8 | | 7 | | |
| +-----+-----+-----+----- | | | | |
| -----+-----+ | | | | |
| 6 | | 24 | 1 | 24 |
| +-----+-----+-----+-----+----- | | | | |
| -----+-----+ | | | | |
| 1 | 1 6 | 24 | 6 | 1 6 23 |
| 9 | | 8 | | |
| +-----+-----+-----+----- | | | | |
| -----+-----+ | | | | |
| 1 | | 23 | 6 | 22 |
| +-----+-----+-----+-----+----- | | | | |
| -----+-----+ | | | | |
| 6 | 1 6 | 22 | 1 | 1 6 22 |
| 10 | | 9 | | |
| +-----+-----+-----+----- | | | | |
| -----+-----+ | | | | |
| 6 | | 21 | 1 | 21 |
| +-----+-----+-----+-----+----- | | | | |
| -----+-----+ | | | | |
| 1 | 1 6 | 21 | 6 | 1 6 20 |

| | | | | |
|---------------------|----|----|-----|----|
| 11 | | 10 | | |
| +-----+-----+ | | | | |
| -----+ | | | | |
| 1 | 20 | 6 | 19 | |
| +-----+-----+-----+ | | | | |
| -----+ | | | | |
| | 19 | 1 | 1 6 | 19 |
| 12 | | 11 | | |
| +-----+-----+ | | | | |
| -----+ | | | | |
| 13 | 18 | 1 | 18 | |
| +-----+-----+-----+ | | | | |
| -----+ | | | | |
| 14 | 17 | 12 | 17 | |
| +-----+-----+-----+ | | | | |
| -----+ | | | | |
| 15 | 16 | 13 | 16 | |
| +-----+-----+-----+ | | | | |
| -----+ | | | | |
| 16 | 15 | 14 | 15 | |
| +-----+-----+-----+ | | | | |
| -----+ | | | | |
| 17 | 14 | 15 | 14 | |
| +-----+-----+-----+ | | | | |
| -----+ | | | | |
| 18 | 13 | 16 | 13 | |
| +-----+-----+-----+ | | | | |
| -----+ | | | | |
| 19 | 12 | 17 | 12 | |
| +-----+-----+-----+ | | | | |
| -----+ | | | | |
| 20 | 11 | 18 | 11 | |
| +-----+-----+-----+ | | | | |
| -----+ | | | | |
| 21 | 10 | 1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9 | 20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8 | 21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7 | 22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6 | 23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5 | 24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4 | 25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3 | 26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 2 | 27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1 | 28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1] 3 3 “ 10 ”

“ 21 ” , “ 12 ” “ 14 ”

, 4 3 “ 11 ” “ 20 ”

” , “ 25 ” “ 13 ”

, 5 3 .

< 12304 ,1987. 12. 9.>()

()

()

[2]

“

,

”

.

< 12371 ,1987. 12. 31.>

()

1988 1 1 . , 9 2 1987 8 1

, 2

1987 12 1 .

()

3959

4

1987 12

1987 12

6

265,500 , 7

218,000

.

()

1987 12 31

.

< 12519 ,1988. 9. 20.>

, [2]

1988

8 1 ,

1988 9 1

.

< 12583 ,1988. 12. 31.>

()

1989 1 1 .

()

1989 1 1

.

< 12630 ,1989. 2. 28.>()

1 ()

.

2

3 ()

.

[2]

“

”

.

< 12734 ,1989. 6. 17.>

1 () . , 2 (9)

1989 3 1 , 13

1989 5 1 .

2 () 12658 .

4

3 () 12656

5

12704

2

4 () 12656 5

가 1986 1 1

16 2 가 (1) (2) 10 .

5 () .

[7] 3 “ ” “ . ” .

[11] 1 가 1) “ . ” “ . ” ,

5) “ . ” “

” , 4 1) “ . . ” “

” , 1) “ ” “

” , “ ” “ ” , “ ” “ ” .

[12] 9 ,

5 . 6 . 7 . 11 . 12

“ 7 . ” .

+ - - - - - + - - - - -

- - - - - +

| 9 | 7 4.5 |

| | |

+ - - - - - + - - - - -

- - - - - +

| 9 2 | 10 3 |

| | |
+ - - - - - + - - - - -
- - - - - +

< 12902 ,1990. 1. 15.>

1 () , 1990 1 1 .
2 () [3]() • [4]() • [5]() • [6]() • [8]() • [9]()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 1 5 6 | 6 |
| () | | |
| [4] | 6 7 | 7 |
| () | 7 8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 1 5 | 6 |
| () | 6 | |
| | 6 7 | 7 |
| | 7 8 | 8 |
| | 8 9 | 9 |
| | 9 10 | 9 |

+ - - - - - + - - - - -
- - + - - - - - +

| 3.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 [4]() • [5]() • [6]() • [8]() • [9 2](1 • 2) [10](•)
 1985 12 31 (5 1981 12 1)
 30 30 , [9]()
 1985 12 31 7 7

.

1

.

1

.

3 (1 • 2)
 12705 2 1 2
 [15]() 4

.

4 () 15 2 3
 5 (3) 1
 (15 , 1 • 16 • 17 19)
 1990 12 31 , ,

.

.

- [2]() 가 2
 1 3
- [3]() • [4]() 1 3
 (3) 1 • 2

3. [5]()・[6]()
4 1

・

4. [10](・)

5. [11](・ ・)・[12](・)
1 4 3 3
・ ・ ,
・ , 가

6. [13]()

< 13048 ,1990. 7. 11.>

, 1990 7 1 .

< 13223 ,1990. 12. 31.>

1991 1 1 .

< 13282 ,1991. 2. 1.>()

1 () .

2 4

5 5 () <74>

<75> .

20 1 “ ” “ ” , 35 3 40 1
“ ” “ ” .

<76> <148>

< 13432 ,1991. 7. 23.>()

() 1991 7 31 .

() [2]

“ ” “ ” .

< 13559 ,1991. 12. 31.>

() 1992 1 1 .

() 3 2

(4) 1991 5 8 1991 12 31 732,000

.

(1) 1

([3] 21 1 2 , [

4] 21 1 , [5] 31 [10]

21) 1992 12 31

.

.

1. [2]

2. [3] • [4] 1 [3]

1 • 2 가 2 1

3. [5] [

2] 1 가

4. [10]

5. [12] 1 4

1 1 .

6. [13]

< 13623 ,1992. 3. 28.> ()

1 () .

2 3

4 ()

.

[1] 11 “ 가 ,

’ ” “ , 가 , ,

” .

[2] “ 가 ” “

가 ” .

[12] 5 “ 가 .

. ” “ . 가 . .

”

.

[24] 12

가 3 “

가 , , ” “ , 가 ,

, ” .

< 13752 ,1992. 10. 30.>()

() .

()

.

[12] 1 “ ” “ •

” , 2 “ ” “ •

” , 4 “ ” “

, • ” .

< 13774 ,1992. 12. 12.>()

1 () .

2 ()

.

[3] 2 가 “ ” “ ”

, “ ” “ ,

, ” .

3

< 13817 ,1992. 12. 31.>

1993 7 1 , 1993 12 31

, , 가 •

. , [1] [3] 2 1993 1 1

. < 1993. 6. 28.>

< 13859 ,1993. 2. 24.>()

1 () 1993 3 1 . < >

2 5

6 ()

[12] 2 , 4 “ ” “
() ” , “ ” “ (

”
2. 1 (. . .
. 2), .
. 2 ,
3 , 4
,

< 13917 ,1993. 6. 28.>

1993 7 1 .

< 14095 ,1993. 12. 31.>

() 1994 1 1 .

() 6

가 1993 12 31 “ ” , “
” , “ ” 가

4 가 .

< 14179 ,1994. 2. 28.> ()

1 () 1994 3 1 . < >

2

3 () .

[12] 2 “ . ” “ . ”
, “ . ” .

< 14200 ,1994. 4. 7.> ()

1 () 1994 4 8 .

2 3

4 () .

[3] 1 “ 2 ” “ ” .

< 14204 ,1994. 4. 9.>()

1 () .

2 ()

[13] “ ” “ ” , “ ” “ ” .

< 14417 ,1994. 11. 26.>()

1 () .

2

3 ()

[2] “ ” “ ” .

< 14438 ,1994. 12. 23.>()

1 () .

2 4

5 () <272>

<273> .

32 1 • 2 38 1 “ ” “ ”

, 35 3 “ ” “ ” .

<274> <327>

< 14441 ,1994. 12. 23.>()

1 () . , • • • < > • • • 4 1

4 1998 1 1 . < 1996. 2. 22.>

2 3

4 ()

.
[1] 11 “ 가 ,”
[2] “ , 가 ” [12]
5 “ 가 ,” .

< 14502 ,1994. 12. 31.>
1995 1 1 , [1] [24] 1994 5 16
.

< 14705 ,1995. 7. 1.>()
() 1995 7 1 .
() .
2 , “ ” “ , ”
.
12 2 “ . . ” “
” .

< 14855 ,1995. 12. 29.>
1996 1 1 .

< 14917 ,1996. 2. 21.>()
1 () .
2
3 () .
10 . “ ”
“ ” .

< 14920 ,1996. 2. 22.>()

1 () 1996 3 1 .

2 () 2)

2!

30 2 2 , 11 15 5 “ ” “ ” .

2@ 3@

< 14934 ,1996. 3. 8.> ()

() .

() .

2 “ ” “ ,

” “ ” “

” .

< 15245 ,1996. 12. 31.>

() 1997 1 1 . , 25 1996 9

1 .

(2) 1

2 6 • 10 • 12 • 13 1997 12 31

. ,

.

1. 2

2. 3 4 1 2 3

1 , 2 가 • 2

3. 5 6 2 2

.

4. 10 • • .

5. 12 1 4 2

2 .

6. 13

< 15551 ,1997. 12. 27.> (가)

1 () 1998 1 1 .

2

3 ()

24 3 “ , 가 ” “ ” .

< 15667 ,1998. 2. 24.>()

1 () 1998 3 1 .

2

3 () .

12 2 가 “ ” “ ” .

< 15690 ,1998. 2. 28.>(가)

1 () .

2 ()

1 14 “ ” “ ” .

14 “ ” “ ” , 1

2 “ ” “ ” , 2 “ ” “ ”

< 15715 ,1998. 2. 28.>()

1 () .

2 5

6 ()

3 1 • 2 • 3 • 4 , 11 3 , 15 7 , 20 1 , 21

3 , 32 1 35 3 “ ” “ ” .

3 4 “ ” “ ” .

32 1 2 “ ” “ ”

” , 38 1 “ ” “ ”

” , 39 2 “ ” “ ” .

35 2 “ ” “ ” , 3 “

• • • • ” “ • •
• • ” .

40 1 “ ” “ ” , “ ” “ ” .

2 .

3 .

1. 가 1 2,061,000 ,

• • • • •
• •

• 2 •

• 1

.

2. , 8

11 .

가. , , ,
• • : 1 19

• •
• •

: 2 18

• : 4 19

• 1 : 1 15 , 2 : 2 12 , 3 : 3

16 , 4 : 4 21

• : 4 21 , : 5 24 , 6 :

6 11 , 7 : 7 9 , 9 : 9 7

14 1. , 15 1, , 16 2.가.(1) • (4), .(1 2) .(3),

17 1. .(2) • (3 2) • (4) • (5) 2. .(2) • (3) • (4), 19 1. .(1) • (3) • (4
2) • (5) 2. .(2) • (3) • (4), 27 . “ ” “

” .

30 “ ” “ ” .

< 15766 ,1998. 4. 1.>()

1 () 1998 4 1 .

2 ()

2 “ ” “ •

” , “ ” “ •

” .

3 1 “ ” “ •

• ” .

< 15808 ,1998. 6. 8.> (가)

1 () .

2

3 ()

2 “ 가 • 가

” “ 가 ” , “

” “ • ”

< 15898 ,1998. 9. 25.> ()

1 () .

2

3 () .

12 2 가 “ ” “ ”

< 16077 ,1998. 12. 31.>

1 () 1999 1 1 . , 39 2000

1 1 .

2 ()
1999 1998 12 31

.

1. (1999 1 1 1 , 7 1

1 2 1 가)

2. (15805)
3. (1998 12 31 2 가)
4. (1998 12 31 2 가)
- 5.
6. 1 33
- 3 () 35 37 2 94.5
- 1999 12 31 () 98.7
- 4 () 1999 12 31 가
- 15805 70 2 1 3 92.5
- 1 3 1999. 3. 31.> 1999 1 1 2 1 3 1 3 55 60
- 1 2
- 5 () 5
- < 16211 ,1999. 3. 31.>(가)
- 1 ()
- 2 3
- 4 ()

1 “가 ” “가 ” .
 1 3 8 “가
 ” “가 ” .
 3 1 “가 ” “가
 ” .
 31 “가 ” “가
 ” .
 2*

< 16218 ,1999. 3. 31.>()
 1 () . < >
 2 3
 4 () 16,077 .
 4 1 “ ” “
 ” .

< 16326 ,1999. 5. 24.>()
 1 () .
 2 3
 4 ()

32 1 • 2 56 1 “ ” “ ”
 .
 53 3 “ ” “ ” .
 <109>

< 16341 ,1999. 5. 24.>()
 1 () .
 2 4
 5 ()

32 “ • 가 • ” “ .
 • 가 • ” .

< 16678 ,1999. 12. 31.>()
 1 () 2000 1 1 .
 2 3
 4 () .
 31 “ , 가 ” “ ,
 가 , ” .

1. _____
 + _____
 - - - - - +
 | | |

[illegible]

2.

(1999 2000 1 1)

3. 가

2

■

The diagram illustrates a 2D grid of points. A dashed rectangle is defined by points at (0,0), (10,0), (10,10), and (0,10). A solid rectangle is defined by points at (2,2), (8,2), (8,8), and (2,8). The points are labeled with their coordinates (x,y).

| x | y | Label |
|----|----|---------|
| 0 | 0 | (0,0) |
| 1 | 0 | (1,0) |
| 2 | 0 | (2,0) |
| 3 | 0 | (3,0) |
| 4 | 0 | (4,0) |
| 5 | 0 | (5,0) |
| 6 | 0 | (6,0) |
| 7 | 0 | (7,0) |
| 8 | 0 | (8,0) |
| 9 | 0 | (9,0) |
| 10 | 0 | (10,0) |
| 0 | 1 | (0,1) |
| 1 | 1 | (1,1) |
| 2 | 1 | (2,1) |
| 3 | 1 | (3,1) |
| 4 | 1 | (4,1) |
| 5 | 1 | (5,1) |
| 6 | 1 | (6,1) |
| 7 | 1 | (7,1) |
| 8 | 1 | (8,1) |
| 9 | 1 | (9,1) |
| 10 | 1 | (10,1) |
| 0 | 2 | (0,2) |
| 1 | 2 | (1,2) |
| 2 | 2 | (2,2) |
| 3 | 2 | (3,2) |
| 4 | 2 | (4,2) |
| 5 | 2 | (5,2) |
| 6 | 2 | (6,2) |
| 7 | 2 | (7,2) |
| 8 | 2 | (8,2) |
| 9 | 2 | (9,2) |
| 10 | 2 | (10,2) |
| 0 | 3 | (0,3) |
| 1 | 3 | (1,3) |
| 2 | 3 | (2,3) |
| 3 | 3 | (3,3) |
| 4 | 3 | (4,3) |
| 5 | 3 | (5,3) |
| 6 | 3 | (6,3) |
| 7 | 3 | (7,3) |
| 8 | 3 | (8,3) |
| 9 | 3 | (9,3) |
| 10 | 3 | (10,3) |
| 0 | 4 | (0,4) |
| 1 | 4 | (1,4) |
| 2 | 4 | (2,4) |
| 3 | 4 | (3,4) |
| 4 | 4 | (4,4) |
| 5 | 4 | (5,4) |
| 6 | 4 | (6,4) |
| 7 | 4 | (7,4) |
| 8 | 4 | (8,4) |
| 9 | 4 | (9,4) |
| 10 | 4 | (10,4) |
| 0 | 5 | (0,5) |
| 1 | 5 | (1,5) |
| 2 | 5 | (2,5) |
| 3 | 5 | (3,5) |
| 4 | 5 | (4,5) |
| 5 | 5 | (5,5) |
| 6 | 5 | (6,5) |
| 7 | 5 | (7,5) |
| 8 | 5 | (8,5) |
| 9 | 5 | (9,5) |
| 10 | 5 | (10,5) |
| 0 | 6 | (0,6) |
| 1 | 6 | (1,6) |
| 2 | 6 | (2,6) |
| 3 | 6 | (3,6) |
| 4 | 6 | (4,6) |
| 5 | 6 | (5,6) |
| 6 | 6 | (6,6) |
| 7 | 6 | (7,6) |
| 8 | 6 | (8,6) |
| 9 | 6 | (9,6) |
| 10 | 6 | (10,6) |
| 0 | 7 | (0,7) |
| 1 | 7 | (1,7) |
| 2 | 7 | (2,7) |
| 3 | 7 | (3,7) |
| 4 | 7 | (4,7) |
| 5 | 7 | (5,7) |
| 6 | 7 | (6,7) |
| 7 | 7 | (7,7) |
| 8 | 7 | (8,7) |
| 9 | 7 | (9,7) |
| 10 | 7 | (10,7) |
| 0 | 8 | (0,8) |
| 1 | 8 | (1,8) |
| 2 | 8 | (2,8) |
| 3 | 8 | (3,8) |
| 4 | 8 | (4,8) |
| 5 | 8 | (5,8) |
| 6 | 8 | (6,8) |
| 7 | 8 | (7,8) |
| 8 | 8 | (8,8) |
| 9 | 8 | (9,8) |
| 10 | 8 | (10,8) |
| 0 | 9 | (0,9) |
| 1 | 9 | (1,9) |
| 2 | 9 | (2,9) |
| 3 | 9 | (3,9) |
| 4 | 9 | (4,9) |
| 5 | 9 | (5,9) |
| 6 | 9 | (6,9) |
| 7 | 9 | (7,9) |
| 8 | 9 | (8,9) |
| 9 | 9 | (9,9) |
| 10 | 9 | (10,9) |
| 0 | 10 | (0,10) |
| 1 | 10 | (1,10) |
| 2 | 10 | (2,10) |
| 3 | 10 | (3,10) |
| 4 | 10 | (4,10) |
| 5 | 10 | (5,10) |
| 6 | 10 | (6,10) |
| 7 | 10 | (7,10) |
| 8 | 10 | (8,10) |
| 9 | 10 | (9,10) |
| 10 | 10 | (10,10) |

가

) 100 54 ,
 . < 2000. 4. 18.>

1 2

. < 2000. 4. 18.>

< 16716 ,2000. 2. 14.> ()

1 () .

2

3 () .

12 2 가 “ ” “ ”

.

< 16785 ,2000. 4. 18.>

1 () .

2 () .

3 “ ” “ ” .

6 1 2 “ 7 1 • 4 • 5 ” “

7 1 • 4 • 5 • 6 ” .

7 1 “ ” “ ” .

7 2 5 “ ” “ 가 ” .

10 1 “ ” “ ” ,

9 “ ” “ 가 ” .

11 1 “ ” “ ” .

15 1 “ ” “ 33

1 4 • ” , 2

“ 4 ” “ 33

5 10

50 4 ,

54 4 ” .

19 9 “ ” “ ” .

2 2 “ ” “ ” .

7 2 1 3 1. “ ” “ 가

” .

10 2 “ ” “ ” .

11 3 3) 가) (2), 4 가
, 2) () 2), 5 1)
) (2) (3), 2) (3) “

” “ ” .

13 “ ” “ ” .

.

17 1 “ ” “ ” .

27 1 “ ” “ ” , 3 “
” “ ” .

29 1 3 “ ” “ ” .

1 1 1. “ , 1 ” “ , 1 , 33

2 가 1 ” , 2 1. “ 2 3

” “ 2 3 , 33 2 가 2 3

” , 3 1. “ 4 5 ,

가 ” “ 4 5 , 33

2 가 4 5 , 가

” .

3 “ ” “ ” .

< 16940 ,2000. 8. 5.>

, 2000 8 1 .

< 17103 ,2001. 1. 4.>

1 () , 2001 1 1 .

2 <2002. 1. 4.>

3 () 가 2 3 1

(

) 1 3 • 10 • 12 • 13

32 2001 12 31

. , 가

, 32 2 3

.

< 17114 ,2001. 1. 29.>()

1 () .

2

3 ()

20 1 “ ” “ ” .
 1 11 “ ” “ ” .
 12 3 “ ” “ ” .
 22 2 “ ” “ ” .
 23 6 “ ” “ ” .
 24 3 “ ” “ ” , 7 “ ” “ ” .
 30 “ ” “ ” .
 32 “ ” “ ” .

4

< 17138 ,2001. 2. 27.>()

1 () 2001 2 28 .

2 4

5 ()

1 12 “ ” “ ” .

< 17275 ,2001. 6. 30.>

1 () 2001 7 1 .

2 () .

7 1 “ ” “ ” .

24 3 “ ” “ ” .

1 “ 1 ” “ 14

” , 1 1 “ 2 ” “ 12

13 ” , 2 1 “ 2 3

” “ 2 3 , 9 11 ” , 3
1 “ 4 5 ” “ 4 5 , 5 8
” .

3 1 3 2 4 , 1
 , 4 (3) “ 2 9 2 ” “ 3 9 2 ” .
3 4 “ ” 51
6 .

24 1 2 2 3 , 1

10 1 4 “ ”
51 12 14 .
2 “ 24 1 ” “ 24 2 ” .
가 .

3 1 “ 1 ” “ 12 ”

가 .
15 2 “ ” “ 12 ” .

9 3 “ 5 ” “ 5 ” .

4 2 1 “ 3 4 ” “ 6 9
” .

3 () 2 3 가
3 1 1 2

< 17407 ,2001. 11. 13.>

1 () 2002 1 1 . , 30 2
4 , 2001 11 1 .
2 () 2002 1 1 4
9 9 1 , 8
2 , 7 3 , 6 4 , 5 5 , 4 6

2001 7 1 4 2002
 1 1 4 7 8 , 3
 9 , 2 10 11 , 1 12 , 2 13 , 1
 14 . 4
 2

3 () 2001 1 1 7
 2002 2001 12 31

1. (2002 1 1 1 , 4 1
 1 4 3 , 7 1 1
 2 1 , 10 1 1 4 1
 가)

2.
 3. (2001 12 31 2 가)
 4.

5. 가
 2002 1 1 7
 2002 2001 59

1 2 가
 56 2 가 가
 1 3 ,

4 () 가 2 3
 1 (30 2 1
) 1 2001 12 31 . , 30 2

2
 5 () 2002 1 1

┌-----┐
 │ │ │

| | |
|---|----|
| 1 | 14 |
| 2 | 13 |
| 1 | 12 |
| 2 | 10 |
| 3 | 9 |
| 4 | 6 |
| 5 | 5 |
| 6 | 4 |
| 7 | 3 |
| 8 | 2 |
| 9 | 1 |

< 17482 ,2002. 1. 4.>

1 () , 2002 1 1 .
2 () 2002 12 31
가

| | | |
|----|-----------|-----------|
| 1. | | 55 |
| 2. | (|) 55 |
| | (60) | |
| 3. | 3,757,000 | 3,302,800 |

4. 3,439,000 3,024,000

1

3 () 2

3 , ()
) . ()
 , 2
 , 3

< 17498 ,2002. 1. 26.>

< 17670 ,2002. 7. 13.>

()
 ()

< 17774 ,2002. 11. 14.>

, 2002 11 1

< 17879 ,2003. 1. 7.>

1 () , 2003 1 1
 2 () 2003 12 31
 가

1. (14)

53

2. (7 13)

() 53 (

58)

3. 3,950,000 3,484,500

4. 3,617,000 3,190,300
1

< 17992 ,2003. 6. 13.>

() 2003 6 13 .
()

53)

< 18122 ,2003. 11. 10.>

, 2003 11 1 .

< 18163 ,2003. 12. 18.> ()

1 () . , . . . < > . . . 4
3

2 3

4 ()

1 12 “ ” “ ” .

< 18217 ,2004. 1. 9.>

1 () , 2004 1 1 .
2 () 2004 12 31
가

1. (14)

53

2. (7 13)
() 53 ()

58)

3. 4,168,000 3,676,100

4. 3,942,000 3,365,800

1

3 (. 1981 12 18)

1 . 1986 1

19 17

< 18337 ,2004. 3. 29.>
 , 2004 3 11 .

< 18416 ,2004. 6. 11.>()
1 () 2004 6 12 .

2

3 ()

3 5 .

3 2 “ ” “ ” .

36 5 “ ” “ ” .

< 18582 ,2004. 11. 9.>
 , 30 2 2004 11 1

.

< 18671 ,2005. 1. 7.>

1 () , 2005 1 1 .

2 () 2005

12 31 「 」 . 「 」

「 가 」

1. (14)
53
2. (7 13)
() 53 ()
58) ,
(1 3 33
1 1 3)
3. 4,265,000 3,764,300
4. 4,034,000 3,446,600
1
- 3 () 33 2 가
2004 12 31 (가
) 4 10 ()
)
- 4 ()
2005 2004 12 31
1. (2005 1 1 1 , 4 1
1 4 3 , 7 1 1
2 1 , 10 1 1 4 1
가)
- 2.
3. (2004 12 31 2 가)
- 4.
5. 가
1 33
1 50
가
33 3 4 4 ()
) 2005 12 31 33
90

< 18715 ,2005. 2. 25.>()

2 6

7 () .

30 3 .

30 3 () 「 」 57 2 2

()

.

8

< 18814 ,2005. 4. 27.>

. , 10 34 2005 3 31

.

< 18843 ,2005. 5. 26.>()

1 () .

2 () .

30 3 .

30 3 () 「 」 57 2 2 , 「

」 7 3 3 , 「 」 9 4 3 「

」 7 3 3

(

)

.

< 18966 ,2005. 7. 27.>()

1 () .

2 ()

.

1 11

“ ” “

”

.

12 3 24 3 “ ”
“ ” .

3

< 19113 ,2005. 11. 4.> ()
1 () .
2 ()
「 」 .
30 3 “ 「 」 9 4 3 「 」 7 3
3 ” “ 「 」 9 4 3 , 「 」 7 3 3
「 」 30 2 2 ” .

< 19120 ,2005. 11. 9.>
 . , 1 30 2 2005 11 1
 .

< 19268 ,2006. 1. 12.>
1 () , 2006 1 1 . , 15
3 2 2006 1 28 .
2 () 2006 12 31
「 」 . 「 」
 . < 2006. 1. 27.>
1. (14)
66
2. (7 13)
() 66 ()
70) . ,
(1 3 33
1 1 3)
 .
3. 5,427,000 4,790,100

4. 5,133,000 4,385,500

1

「 가 」
「 」

(1 2
) 81 . < 2006. 1. 27.>

3 () 3

4 4 () 2006

33 2006 1 1

2006 50 가 .

33 3 4 4 (

) 2006 12 31 33

95

4 () 12

2006
」 2

2 11 3 .

< [12] 2006 >

| | | |
|-------------------------------------|-------|------|
| -----T-----T-----T----- | | |
| | | |
| -----+-----+-----+----- | | |
| 1~16 | [12] | |
| -----+-----+-----+----- | | |
| 17~33 | [12] | 98.5 |
| -----+-----+-----+-----+-----+----- | | |
| 1~33 | [12] | 97 |
| | | |

15 6 12 1

118,200 .

< 19307 ,2006. 1. 27.>(가)
 () , 3 2006 1 1
 .

() .
 19268 2 1 “
 「 가 」
 ” “ ” , 3 .
 「 가 」
 , 「 」
 「 」
 (1 2
) 81 .

< 19521 ,2006. 6. 12.>
 1 () 2006 7 1 .
 2 ()
 (63 1
) 2006 (.
) 1 .
 1 147 4 , 2
 . 529 8 , 3
 . 2006
 . , 38
 .
 3 () (63 1
) 68 2006
 12 31 (.
) 1 .
 1 147 4 , 2
 .
 529 8 . ,
 2006 12 31 2007
 1 1 .

68 2006 12 31 (가 .)

13 12 1 200 , 11 720 , 10 324 5 .

가 1

2 .

4 ()

2006 12 31 「 」 () 66

8 200 5 8 200 5 .

1 「 가 」 1 81

5 ()

6 ()

3 3 2 2 “ ” “ () ” ,

“ 5 ” “ 5 1 3 ” , “ ” “

2006 7 1 ” .

3 3 3 “ ” “

2 2 ” , “ ”

“ ” , “ 2 ” “ 2 2 2

” , “ 2 ” “ 2 2 2

” .

78 1 “ 2 3 ” “ ” .

1 3 .

< 19831 ,2007. 1. 9.>

1 () , 2007 1 1 .

2 () 2007 12 31

「 」・「 」

.

1. (14)

66

2. (7 13)

() 66 (

70) . ,

(1 3 33 1

1 3)

.

3. (

) 66

. ,

8 200 5

8 200 5

.

4. 5,509,800 4,863,100

5. 5,435,900 4,452,400

1

.

「 가 」

, 「 」

「 」

(

1 2 3) 81

.

3 () 3

4 4 () 2007

33

.

4 ()

15 6

2007 12 1 120,100

< 20061 ,2007. 5. 16.>

. , 15 3 3 2008 1 1

< 20152 ,2007. 7. 2.>

1 () , 2007 7 1 . , 13

2 30 3 2008 1 1 .

2 ()

2007

(.) 1

. 1 164 1 , 2

. 537 5

, 3 . 2007

. , 38

, 38

.

3

66 , 38

64

3 () 68

2007 12 31 (

.) 1 .

1 164

1 , 2 .

537 5

, 2007 12 31

2008 1 1

.

, , 가

1 .

4 ()

5 () 「 」
 1 1 “ ” “ () ” ,
 2 “ ” “ () ” .

< 20379 ,2007. 11. 13.>

1 () , 2007 11 12 .
 2 ()

2007

14

, 13 1,200 , 12
 960 , 11 720 , 10
 480 , 9

2007 . , 38

38

14
 65 , 38

3 ()
 68 2008 6 30 14

, 13 1,200 , 12
 960 , 11
 720

, 10
 480 . ,

2008 6 30 2008 7 1

가

1 .

< 20537 ,2008. 1. 9.>

1 () , 2008 1 1 .

2 () 2010 12 31

「 」 • 「 」

. < 2008. 12. 31., 2010.

1. 7.>

1. (14)

(35 1 9 338 2

) 66

2. (7 13)

() 66 (

70) . ,

(1 3 33

1 1 3)

3. (

) 66

. ,

8 423 6

8 423 6

4. 5,946,800 5,248,800

5. 5,840,800 4,784,000

1

. < 2008. 2. 29.>

「 가 」

, 「 」

「 」

(

1 2 3) 81

. < 2008. 2. 29.>

3 () 2007 1 2 2008 1 1

(4)

28 37 1 .

< 20741 ,2008. 2. 29.>()

1 () . < >

2 5

6 ()

•

3 1 3 “ ” “ ”

, 4 “ ” “ ” .

3 2 “ ” “ ” , “

” “ ” .

11 3 , 16 7 , 37 1 6 , 37 2, 39 3 , 40 , 50 ,

70 3 “ 가 ” “ ” .

15 7 21 3 “ ” “ ” .

32 1 “ ” “ ” , “ ” “ ” 2 “ ” “ ”

” “ ” “ ” .

36 2 “ ” “ ”

, 5 “ 가 ” “ ” , 3

• 6 “ 가 ” “ ”

, 4 5 “ ” “ ”

, 6 “ 가 ” “ ” .

54 3 , 55 “ ” “ ” .

58 2 “ ” “ ”

” .

59 1 “ ” “ ” .

63 1 “ ” “ ” .

65 “ 가 ” “ ” , “

” “ ” .

67 “ (가) ” “ ” , “ 가

” “ ” .

68 2 “ ” “ ” .

74 2 5 “ 가 ” “ ” ,

3 “ ” “ ” “ ” “ ”

” .

20537 2 2 “ ”

“ ” , 3 “ 「 」 ” “ 「 「 」 ” .

1 4 “ (1) ” “ ” , 11 “ ” .

12 2 “ ” “ ” , “ ” “ ” .

15 1 , 16 2 가 (1) (4), (1 2) (1 3), (3) , 17 1 (2), (3 2), (3 3), (4) (5) 2 (2), (2 3), (3) (4) , 19 1 (1), (3), (4 2), (4 3) (5) 2 (2), (2 3), (3) (4) “ 가 ”

“ ” .

22 23 6 “ ” “ ”

24 3 “ ” “ ” , “ ” “ ” , 7 “ ”

“ ” .

27 “ ” “ ” “ ” .

30 “ ” “ ” “ ” , “ ” “ ”

“ ” .

31 “ ” “ ” “ ” .

32 “ ” “ ” “ ” , “ ” .

“ ” “ ” . 가 . “ ” .

33 2 가 2 “ ” “ ” “ ” .

34 “ ” “ ” “ ” .

<105>

< 20797 ,2008. 6. 5.> ()

1 () .

2 () .

24 5 “ ” “ 「 」 2 5 ” .

1*

< 20889 ,2008. 6. 27.>

- 1 () .
- 2 (가) 14 1 2
 , .

< 20897 ,2008. 7. 3.> ()

- 1 () .
- 2 ()
 .
1 11 “ ” “ ” .
12 2 “ ” “ ” .
24 3 “ ” “ ” .

< 21242 ,2008. 12. 31.>

- 1 () 2009 1 1 . , 1 13
2008 12 26 .
- 2 () (63
1) 가
68 40 2009 12 31
960 , 2010 1 1 2010 12 31 1 20
가 (“ 가 ”
) 2009 1 1
1 200 .
(63 1
) 68
40 2009 12 31 240 , 2010 1 1
2010 12 31 360 . ,
(“ ”) (“
”) 2009 1 1
720 , 480
 .

1 2
19521 3 1 , 20152
3 1 20379

3 1 2008 12 31
2009 1 1

. , 1 2
.

63 1 가
68 40 2009

12 31 360 , 2010 1 1 2010 12 31 375
가

2009 1 1 420

.

63 1
68 40 2009

12 31 180 , 2010 1 1 2010 12 31 210
.

2009 1 1

300 , 240 .
, 가

가

1 5 . < 2010. 1. 7.>

< 21391 ,2009. 3. 31.>

2009 4 1 . , 12 2009 1 30

.

< 21452 ,2009. 4. 30.>(가)

1 () .

2 () .

14 1 4 “ 17 1 ” “ 17 1 5 ” , “ ”

“ 가 ” .

15 3 .

14 1 4 가 .
 17 “ () ” “ (가
) ” , 5 .
 가 1 • 3 4 .
 “ ” “ ” , “ ” “ ”
 .
 1 5 .

「-----」
 | , 가 |
 L-----J

5 “ ” “ 가
 ” ,
 : 가 ,
 가

15 2 .

「-----」
 | 2. 5() (가 |
 |) |
 L-----J

< 21726 ,2009. 9. 11.>()
 1 () .
 2 () .
 32 , 가 , .

「-----」
 | , 가 , |
 | |
 L-----J

< 21870 ,2009. 12. 7.>
 1 () 2010 1 1 .
 2 () 「 가 」 66

19 2 .

< 21979 ,2010. 1. 7.>

, 2010 1 1 . , 8 2 1 , 13
1 , 30 2 4 14 2011 1 1 .

< 22374 ,2010. 9. 10.>

1 () .

2 () .

22 2 .

22 2() 「 」 2 5

2 6 6 2

10 가 , 11 , 15

, 18 18 6

,

.

1

226 1 150 , 226

1 100 150 .

1 2

.

< 22617 ,2011. 1. 10.>

1 () , 2011 1 1 .

2 () 9 2

,

.

3 () 13 2

「 가 」 26 2

. , .

4 () 15 6

.

5 () 2011 12 31

「 」

.

1. 6,332,700 : 5,589,400

2. 6,219,900 : 5,094,500

1

() 「 가

「

」

68

.

3

「 가

「

」

{

(

) 78

[5 ()

84

]

} 68.54 [5 ()

67.5

]

. < 2012. 1. 6., 2016. 1. 8.>

「 가

「

」

2

(

13

13

)

68

. < 2011. 3. 15.>

「

」

81

.

6 (가)

2012

12

31

30

2

5

7

800

가

, 가

10

.

, 2012

12 31

「

」

5

2

1

「

」

47

2014

12

31

30

2

6 600

가

, 가

10

. < 2012. 1. 6., 2013. 1. 9., 2014. 1. 8.>

1

「

」

「

」

(

)

2014

12

31

30

2

6 600

가

, 가

10

.

<

2012. 1. 6., 2013. 1. 9., 2014. 1. 8.>

7 (

)

「

」

57

5

1

15

15

8 ()

2012 12 31 36 2 , 36 2, 37

2 , 39 1 , 39 2, 49 2 , 30 3, 31 33

「 , 2012 12 31 」 5

2 1 「 」 47

2014 12 31

1 「 」

「 」 (

) 2014 12 31

9 ()

8

12 31

1. (1 1 1 , 2 1

1 12 11, 3 1 12 10, 4 1

12 9, 5 1 12 8, 6 1 12

7, 7 1 12 6, 8 1 12 5, 9 1

12 4, 10 1 12 3, 11 1 12

2, 12 1 12 1 가

, 6 가 가 가

)

2. (12 31 2 가

)

3.

10 ()

21 1 “ ” “ 80

” .

24 1 “ ” “ 80

” .

가 .

1 3

3. 22617 5 3

5 , 4

가 , 11 3

가. 5 3 68

. 5 4 (7 13
) (

) 66 (70) 81 .
. 5 5 「 」 2

81 .

1 2 .

2. 22617 5 6
81 .

24 3 “ ” “
80 ” .

< 22708 ,2011. 3. 15.>()

1 () , 2011 1 1 .

2 () .

22617 5 5 “ 81
” “ (13 13) 68

” .

< 23015 ,2011. 7. 4.>()

1 () 2011 8 24 .

2 () .

5 “ 3 14 ” “ 3 8 10 14
” .

14 3 “ (1 • 2
) ” “ ” .

15 7 “ () ” “
” , “ () ”
“ ” .

25 1 “ () ” “
 ”
 30 2 “ () ” “
 ” , “ () ”
 “ ”
 30 3 “ 「 」 9 5 1 , 「 」 7 4
 1 ” “ 「 」 9 5 1 ”
 1 9 9 2
 9 9 2
 15 4
 16 1

80퍼센트

< 23097 ,2011. 8. 29.>

1 () . , 30 2 2011 1
 1
 2 () 24
 .

< 23116 ,2011. 9. 6.> (.)

1 () 2011 12 28 .
 2 4
 5 ()
 .
 36 2 1 “ 「 」 , 「 」
 ” “ 「 」 ” .

< 23356 ,2011. 12. 8.>()

1 () 2011 12 8 . < >

2 ()

22 1 “ ” “ ” , “ ” “

”

<54>

< 23497 ,2012. 1. 6.>

1 () , 2012 1 1 (44

2011 8 29) . , 10 , 16, 17 19

2012 7 1 .

2 () 44 2011 8 29

3 () 2012 12 31

「 」

1. 6,591,700 : 5,818,000

2. 6,474,300 : 5,302,900

1

4 () 가

1 3 “ 22617

” “ 22617 (23497

) ” ,

“ 66 (70) 81 ” “ 78 (

84) 68.54 (67.5) ” .

< 23632 ,2012. 2. 28.>

1 () 2012 7 22 . , 12

2 () 9 2012 7

22

2 (

,) (2012 7 22 2

2012 7 22) .

37 2 2012 7 22

2 (,)
(2012 7 22 2 2012 7 22) 158 2
가 .

< 23943 ,2012. 7. 10.>()

1 () 2012 7 15 .

2

3 () .

36 2 1 “ 「 」 ” “ 「

」 ” .

12 1 가 “ ” “
” .

< 24299 ,2013. 1. 9.>

1 () .

2 () 2013 1 1 .

3 () 15

「 가 」 71

4 () 2013 12 31

「 」

1. 13 6,808,600 : 6,009,400

2. 13 6,687,300 : 5,477,400

1 .

< 24425 ,2013. 3. 23.>()

1 () . , 6

2 5

6 ()

3 1 4 , 3 2, 10 2 , 11 3 , 15 10 , 16
3 , 7 , 19 2 2 , 21 3 , 32 1 , 2
, 36 2 , 4 , 3 ,
4 , 4 • , 5 , 6 , 36 2
1 , 3 , 3 • 4 , 37 1 4 , 37
2, 39 3 , 39 2 5 , 40 , 41 , 50 , 54 3 ,
55 , 58 2 , 59 1 , 65 • , 67 , 68 2
, 70 3 74 2 • 3 • 5 “ ” “
”

3 4 , 54 1 3 , 55 , 58 2 , 59 1 •
2 “ ” “ ”
36 2 3 , 39 2 2 5 “ ” “
”
51 “ ” “ ”
54 3 4 “ ” “ ”
63 1 “ ” “ ”
1 4 “ ” “ ”
11 “ ” “ ”
“ ” “ ” “ ” “ ” “ ”
”

12 1 “ ”
“ ” “ ” 2 “ ” “ ”
” “ ” “ ”
15 1 “ ” “ ”
”
16 2 2) • 3), 3) 1 • 2 “
” “ ”
17 1 2)) •), 3)가), 2 1)), 2)
, 3)가) 3 가 • “ ” “ ”
”
19 1 2)) •), 3)가), 2 1)), 2)
, 3)가) 3 가 • “ ” “ ”
”

22 3 가

2)

2)

3)

4)

8)

22

1

4

23

6

24

3

7

27

30

31

32

가

가

33

2

3 가

2

34

1^

<129>

< 24916 ,2013. 12. 11.>

1 (

)

2013 12 12

2 (

)

11530

가

3

| 법 시행 전의 직종 | 법 시행 후의 직종 |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
|---|----------------------|---|
| 별정직공무원(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만 해당한다) |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한다) | 일반직 6급 공무원 |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한다) | 일반직공무원 |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
| 기능2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한다) |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기능3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한다)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
|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3 () 11530 가
3

4 () 8 2 , 16 1 가
, 17 2 가 1), 19 2 가 1) 27 1)

< 25000 ,2013. 12. 16.>()

1 () . < >

2 7

8 ()

8 2 “ ” “ ” .
 36 6 “ ” “ ” , “ ”
 “ ” “ ” , “ ”
 “ ”
 16 1 가 “ ” “ ”
 .
 27 1) “ ” “ ”
 30 3 2 “ ” “ ”
 ” , “ ” “ ” “ ” .

< 25070 ,2014. 1. 8.>

1 () . , 28 1 • 2 47 1 •
 2 2014 2 7 .
 2 () 2014 1 1 . ,
 28 1 • 2 47 1 • 2 2014 2 7
 .
 3 () 13 「 가 」
 26 2 . ,

4 (가) 14 1 2
 ,

5 () 28 3 47 3

6 () 「 」 (25000) 57 3
 1 30 3

7 () 16 2 4) 「 」 2 1

8 (3)
 30 2 2 , 37 2 , 66 2 , 3, 4

6 , 10 14 , 32, 33, 35, 37 39
22617 6
2014 12 31 ,
.
1. 3 4 3 3
2. 5 6 3 3
, 가
3. 10
4. 11 12 3 3
.
5. 12 33 2 .
.
6. 13
7. 14
8. 32
9. 33 1 3 3
3 가 3
10. 35 9
11. 38
9 ()
24 1 44 1 .
10 () 2014 2 7
28 1 • 2 47 1 • 2
.
< 25467 ,2014. 7. 16.>
1 ()
2 () 2014 7 1 .
3 ()
2013 12 12 15 1 2
.
4 ()
11530 가 3 2 「

「 8 3 2013 12 12
(“ ”)

24916 2

2013 12 12 2013 12 12

(24299

) 가

(“ ”)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위군 | 가군 | 나군 | 다군 |
|-----|-----------|-----------|-----------|
| 1 | 2,050,300 | 1,517,700 | 1,203,500 |
| 2 | 2,147,500 | 1,600,100 | 1,270,200 |
| 3 | 2,245,000 | 1,683,500 | 1,337,600 |
| 4 | 2,342,300 | 1,767,800 | 1,405,900 |
| 5 | 2,440,100 | 1,850,400 | 1,474,800 |
| 6 | 2,537,700 | 1,933,800 | 1,543,400 |
| 7 | 2,634,900 | 2,018,300 | 1,610,800 |
| 8 | 2,732,100 | 2,100,100 | 1,678,900 |
| 9 | 2,827,600 | 2,177,600 | 1,740,700 |
| 10 | 2,926,000 | 2,252,000 | 1,803,200 |
| 11 | 3,007,900 | 2,324,300 | 1,864,600 |
| 12 | 3,090,000 | 2,384,400 | 1,918,500 |
| 13 | 3,172,000 | 2,443,700 | 1,972,000 |
| 14 | 3,253,300 | 2,502,000 | 2,025,200 |
| 15 | 3,335,300 | 2,560,100 | 2,078,100 |
| 16 | 3,394,300 | 2,617,900 | 2,128,700 |
| 17 | 3,452,600 | 2,673,500 | 2,175,400 |
| 18 | 3,510,900 | 2,728,800 | 2,223,300 |
| 19 | 3,568,500 | 2,777,900 | 2,270,000 |
| 20 | 3,626,200 | 2,828,300 | 2,315,400 |
| 21 | 3,683,900 | 2,878,000 | 2,360,100 |
| 22 | 3,741,100 | 2,928,900 | 2,403,600 |
| 23 | 3,799,000 | 2,974,800 | 2,445,800 |
| 24 | 3,857,000 | 3,025,200 | 2,490,700 |
| 25 | 3,915,100 | 3,071,300 | 2,531,600 |
| 26 | 3,973,900 | 3,120,700 | 2,575,800 |
| 27 | 4,034,400 | 3,169,100 | 2,619,400 |
| 28 | 4,093,400 | 3,214,800 | 2,668,500 |
| 29 | 4,155,200 | 3,260,200 | 2,695,700 |
| 30 | 4,217,200 | 3,305,300 | 2,730,800 |
| 31 | 4,278,800 | 3,350,200 | 2,763,200 |
| 32 | 4,340,200 | 3,398,000 | 2,794,300 |
| 33 | 4,401,100 | 3,440,300 | 2,824,900 |
| 34 | 4,461,600 | 3,487,400 | 2,855,400 |
| 35 | 4,521,800 | 3,533,900 | 2,887,400 |
| 36 | 4,582,000 | 3,575,700 | 2,917,500 |
| 37 | 4,642,800 | 3,617,200 | 2,947,500 |
| 38 | 4,703,600 | 3,658,700 | 2,977,500 |
| 39 | 4,763,400 | | |
| 40 | 4,802,000 | | |

1 (24299

)

1

2013 12 12
2 1 6 가 2013 12

12 .

2013 12 12

24916 2

1 2013 12 12

78 가 ,

,

,

,

.

5 () 3 2

(3 4 1 • 2)

3 2 2014 12 31

3 2 .

< 25751 ,2014. 11. 19.>()

1 () . , 5

.

2 4

5 () <114>

<115> .

3 1 4 , 3 2, 10 2 , 11 3 , 15 10 , 16

3 , 7 , 19 2 2 , 21 3 , 32 1 , 2

, 36 2 , 4 , 3 ,

4 , 4 • , 5 , 6 , 36 2

1 , 3 , 3 • 4 , 37 1 4 , 37

2, 39 3 , 39 2 5 , 40 , 41 , 50 , 54 3 ,

55 , 58 2 , 59 1 , 65 • , 67 , 68 2

, 70 3 74 2 • 3 • 5 “ ” “

”

12 1 “ ” “ ” .

15 1 “ ” “ ”

.

16 2 2) · 3), 3) 1 · 2 “
 ” “ ”
 17 1 2)) ·) 3)가) , 2 1)),
 2)), 3)가) 3 가 • “ ”
 “ ”
 19 1 2)) ·) 3)가) , 2 1)),
 2)) 3)가) , 3 가 “ ” “
 ”
 22 3 2) 3) · 4) · 8) , 1 4
 “ ” “ ” “ ”
 27 “ ” “ ”
 30 “ ” “ ”
 32 “ , 가 ” “ ”
 , 가 ”
 33 2 3 가 2 “ ”
 “ ”
 34 “ ” “ ”
 <116> <418>

< 26041 ,2015. 1. 6.>
 1 ()
 2 () 2015 1 1
 3 () 12598
 4
 3 8
 4 ()
 29 48
 5 () 25467
 5 2014 12 31 25070
 3 2 (“ ”)
 3 2

< 26655 ,2015. 11. 18.>

1 () 2015 11 19 .
 2 () 14 1 2
 가 .

< 26659 ,2015. 11. 20.> ()

1 () 2016 1 25 . < >
 2
 3 ()

1 “ 「 」 ” “ 「 」 ” ,
 10 “ ” “ ” , 4 “ ”
 ” “ ” .

2*

4

< 26877 ,2016. 1. 8.>

1 () .
 2 () 2016 1 1 .
 3 (가) 29 2
 48 2 「 가 」 73 3 1 5
 6 .
 4 () 5
 6 5 6
 2016 12 31 .
 5 () 31
 [4 5
 4 () 5 () , 6 ,
 4 ,

] 2016

2015 12 31

1.

| | | | | | |
|---------|----|---|-----|----|----|
| 가. 2016 | 1 | 1 | : 1 | | |
| . 2016 | 2 | 1 | : 1 | 12 | 11 |
| . 2016 | 3 | 1 | : 1 | 12 | 10 |
| . 2016 | 4 | 1 | : 1 | 12 | 9 |
| . 2016 | 5 | 1 | : 1 | 12 | 8 |
| . 2016 | 6 | 1 | : 1 | 12 | 7 |
| . 2016 | 7 | 1 | : 1 | 12 | 6 |
| . 2016 | 8 | 1 | : 1 | 12 | 5 |
| . 2016 | 9 | 1 | : 1 | 12 | 4 |
| . 2016 | 10 | 1 | : 1 | 12 | 3 |
| . 2016 | 11 | 1 | : 1 | 12 | 2 |
| . 2016 | 12 | 1 | : 1 | 12 | 1 |

2. (2 가)

3. [5 ()]

4.

39 1 31

2017 , 2016 「

」 7 2 .

6 () 가 .

1 3 “ 23497

” “ 23497 26877

” , “ (7 13

) ” “ ” , “ (84) ” “ [5 (

) 84] ” , “ (67.5) ”

“ [5 () 67.5] ” .

< 27257 ,2016. 6. 24.>

1 () 2016 6 25 .

2 (가

) 39 3 , 58 1 70 3 2016 1 1

가 .

3 () 46 47 2016 1 1

.

4 ()

15 7 , 30 2 49 2

5 ()

71

< 27617 ,2016. 11. 29.> ()

1 () 2016 11 30

2 4

5 ()

1 “ 「 , 」 ” “ 「 」 ”

1&

< 27703 ,2016. 12. 30.> ()

1 ()

2 ()

30 3 4 “ 「 」 ” “ 「 」 ”

< 27769 ,2017. 1. 6.>

1 () , 37 2 1 • 2 , 31
33 2017 3 1

2 () 2017 1 1

3 ()

14 1

4 1

15 1 3

2

4 ()

3, 12, 13, 32, 33 35

2017 12 31

1. 3 1 가
2. 12 1
3. 13 1
4. 32
5. 33 5 1
6. 35 1 14

5 () 31

[5 () ,

, 가 , 5 , , 5] 2017 2016 12

31

1.

- 가. 2017 1 1 : 1
- . 2017 2 1 : 1 12 11
- . 2017 3 1 : 1 12 10
- . 2017 4 1 : 1 12 9
- . 2017 5 1 : 1 12 8
- . 2017 6 1 : 1 12 7
- . 2017 7 1 : 1 12 6
- . 2017 8 1 : 1 12 5
- . 2017 9 1 : 1 12 4
- . 2017 10 1 : 1 12 3
- . 2017 11 1 : 1 12 2
- . 2017 12 1 : 1 12 1

2. (2016 12 31 2 가 ,
- 2016 12 31 5

)

3. (「 」 13

)

4.

39 1 31

() 2018 .

< 28211 ,2017. 7. 26.>()

1 () . , 8

2 7

8 () <353>

<354>

63 1 , 70 1 73 2 “ ” “ ”

1 4 “ ” “ ” .

30 “ , ” “ ” .

31

“ ” “ ” .

32 “ , , 가 ”

“ , , ”

<355> <388>

< 28594 ,2018. 1. 18.>

1 () .

2 () 2018 1 1 . ,

6 2017 12 12 , 7 8 2017 12 21

3 () 8 2 「 가

」 71 2 4 「 」 57

3

4 (가) 14 1 2

가

5 () 30 2 2 3

2018 12 31 가

. , 1 2 가 10 .

1. 11 2 : 6 7000

2. 12 (36 2 1

) , , 2 : 6 8700

3. 13 : 5 11

37 2 3 4 2018 12 31

가 .

1. 3 () 2 () : 718 1

2. 2 () 1 () : 837

66 2 2018 12 31

가 .

1. 4 : 810 7

2. 8 : 444 2

3. 7 : 810 7

3 2018 12 31

2 2

.

(월지금액, 단위: 원)

| 계급·직무등급
호봉 | 1급 | 2급 |
|--|-----------|-----------|
| 1 | 3,851,300 | 3,467,200 |
| 2 | 3,986,300 | 3,595,900 |
| 3 | 4,124,800 | 3,726,100 |
| 4 | 4,266,400 | 3,857,800 |
| 5 | 4,411,300 | 3,991,000 |
| 6 | 4,558,000 | 4,124,700 |
| 7 | 4,707,000 | 4,260,000 |
| 8 | 4,857,200 | 4,395,200 |
| 9 | 5,009,400 | 4,531,200 |
| 10 | 5,162,600 | 4,667,400 |
| 11 | 5,315,500 | 4,804,000 |
| 12 | 5,473,400 | 4,945,300 |
| 13 | 5,632,300 | 5,087,500 |
| 14 | 5,791,700 | 5,216,100 |
| 15 | 5,930,900 | 5,334,800 |
| 16 | 6,054,400 | 5,443,600 |
| 17 | 6,164,100 | 5,543,900 |
| 18 | 6,261,700 | 5,635,200 |
| 19 | 6,349,200 | 5,719,800 |
| 20 | 6,427,500 | 5,797,000 |
| 21 | 6,499,700 | 5,867,400 |
| 22 | 6,564,000 | 5,932,100 |
| 23 | 6,618,400 | 5,991,300 |
| 24 | | 6,039,700 |
| 25 | | 6,085,900 |
| 비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14,400원으로 한다. | | |

4 2018 12 31

2 2 .

(월지금액, 단위: 원)

| 계급
호칭 | 1급 | 2급 |
|----------|-----------|-----------|
| 1 | 4,057,400 | 3,774,900 |
| 2 | 4,192,400 | 3,903,600 |
| 3 | 4,330,900 | 4,033,800 |
| 4 | 4,472,500 | 4,165,500 |
| 5 | 4,617,400 | 4,298,700 |
| 6 | 4,764,100 | 4,432,400 |
| 7 | 4,913,100 | 4,567,700 |
| 8 | 5,063,300 | 4,702,900 |
| 9 | 5,215,500 | 4,838,900 |
| 10 | 5,368,700 | 4,975,100 |
| 11 | 5,521,600 | 5,111,700 |
| 12 | 5,679,500 | 5,253,000 |
| 13 | 5,838,400 | 5,395,200 |
| 14 | 5,997,800 | 5,523,800 |
| 15 | 6,137,000 | 5,642,500 |
| 16 | 6,260,500 | 5,751,300 |
| 17 | 6,370,200 | 5,851,600 |
| 18 | 6,467,800 | 5,942,900 |
| 19 | 6,555,300 | 6,027,500 |
| 20 | 6,633,600 | 6,104,700 |
| 21 | 6,705,800 | 6,175,100 |
| 22 | 6,770,100 | 6,239,800 |
| 23 | 6,824,500 | 6,299,000 |
| 24 | | 6,347,400 |
| 25 | | 6,393,600 |

5

2018 12 31

2

.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통 | 연구관 |
|----------|-----------|
| 1 | 2,395,900 |
| 2 | 2,513,300 |
| 3 | 2,630,600 |
| 4 | 2,747,900 |
| 5 | 2,864,900 |
| 6 | 3,034,300 |
| 7 | 3,202,900 |
| 8 | 3,371,500 |
| 9 | 3,539,300 |
| 10 | 3,707,100 |
| 11 | 3,856,300 |
| 12 | 4,005,600 |
| 13 | 4,152,800 |
| 14 | 4,301,400 |
| 15 | 4,448,300 |
| 16 | 4,591,600 |
| 17 | 4,734,100 |
| 18 | 4,876,900 |
| 19 | 5,018,500 |
| 20 | 5,160,100 |
| 21 | 5,278,200 |
| 22 | 5,395,500 |
| 23 | 5,513,100 |
| 24 | 5,630,200 |
| 25 | 5,747,500 |
| 26 | 5,845,600 |
| 27 | 5,944,900 |
| 28 | 6,043,200 |
| 29 | 6,141,100 |
| 30 | 6,239,500 |
| 31 | 6,315,500 |
| 32 | 6,391,800 |

6

2018 12 31

(월지금액, 단위: 원)

| 계급
호통 | 지도관 |
|----------|-----------|
| 1 | 2,395,900 |
| 2 | 2,511,700 |
| 3 | 2,627,200 |
| 4 | 2,743,500 |
| 5 | 2,857,500 |
| 6 | 3,009,700 |
| 7 | 3,161,700 |
| 8 | 3,314,300 |
| 9 | 3,465,900 |
| 10 | 3,616,700 |
| 11 | 3,753,100 |
| 12 | 3,888,600 |
| 13 | 4,024,400 |
| 14 | 4,159,300 |
| 15 | 4,293,200 |
| 16 | 4,411,400 |
| 17 | 4,531,400 |
| 18 | 4,650,400 |
| 19 | 4,768,200 |
| 20 | 4,885,800 |
| 21 | 4,990,600 |
| 22 | 5,095,800 |
| 23 | 5,200,400 |
| 24 | 5,305,100 |
| 25 | 5,409,800 |
| 26 | 5,501,200 |
| 27 | 5,592,200 |
| 28 | 5,683,700 |
| 29 | 5,774,300 |
| 30 | 5,866,200 |
| 31 | 5,928,000 |
| 32 | 5,990,200 |

10

2018 12 31

(월지금액, 단위: 원)

| 계급
등급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치 안 감
소 방 감 |
|----------|--------------|----------------|
| 1 | 3,851,300 | 3,467,200 |
| 2 | 3,986,300 | 3,595,900 |
| 3 | 4,124,800 | 3,726,100 |
| 4 | 4,266,400 | 3,857,800 |
| 5 | 4,411,300 | 3,991,000 |
| 6 | 4,558,000 | 4,124,700 |
| 7 | 4,707,000 | 4,260,000 |
| 8 | 4,857,200 | 4,395,200 |
| 9 | 5,009,400 | 4,531,200 |
| 10 | 5,162,600 | 4,667,400 |
| 11 | 5,315,500 | 4,804,000 |
| 12 | 5,473,400 | 4,945,300 |
| 13 | 5,632,300 | 5,087,500 |
| 14 | 5,791,700 | 5,216,100 |
| 15 | 5,930,900 | 5,334,800 |
| 16 | 6,054,400 | 5,443,600 |
| 17 | 6,164,100 | 5,543,900 |
| 18 | 6,261,700 | 5,635,200 |
| 19 | 6,349,200 | 5,719,800 |
| 20 | 6,427,500 | 5,797,000 |
| 21 | 6,499,700 | 5,867,400 |
| 22 | 6,564,000 | 5,932,100 |
| 23 | 6,618,400 | 5,991,300 |
| 24 | | 6,039,700 |
| 25 | | 6,085,900 |

11 2018 12 31

2

(월지금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1,562,600 | 21 | 2,978,200 |
| 2 | 1,610,000 | 22 | 3,088,200 |
| 3 | 1,658,100 | 23 | 3,197,300 |
| 4 | 1,705,800 | 24 | 3,306,400 |
| 5 | 1,754,100 | 25 | 3,415,700 |
| 6 | 1,802,300 | 26 | 3,525,300 |
| 7 | 1,849,700 | 27 | 3,639,600 |
| 8 | 1,897,300 | 28 | 3,753,700 |
| 9 | 1,945,500 | 29 | 3,873,000 |
| 10 | 1,998,100 | 30 | 3,992,700 |
| 11 | 2,049,700 | 31 | 4,112,000 |
| 12 | 2,102,300 | 32 | 4,231,100 |
| 13 | 2,198,200 | 33 | 4,352,100 |
| 14 | 2,294,300 | 34 | 4,472,700 |
| 15 | 2,390,200 | 35 | 4,593,600 |
| 16 | 2,486,500 | 36 | 4,714,000 |
| 17 | 2,581,700 | 37 | 4,818,700 |
| 18 | 2,681,200 | 38 | 4,923,700 |
| 19 | 2,780,300 | 39 | 5,028,800 |
| 20 | 2,879,300 | 40 | 5,133,100 |

12 2018 12 31

2

(월 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1,976,300 | 21 | 3,888,500 |
| 2 | 2,038,500 | 22 | 4,008,000 |
| 3 | 2,101,100 | 23 | 4,163,900 |
| 4 | 2,163,300 | 24 | 4,319,400 |
| 5 | 2,226,000 | 25 | 4,474,700 |
| 6 | 2,294,600 | 26 | 4,630,000 |
| 7 | 2,363,000 | 27 | 4,785,300 |
| 8 | 2,431,800 | 28 | 4,940,400 |
| 9 | 2,534,800 | 29 | 5,058,500 |
| 10 | 2,638,000 | 30 | 5,176,900 |
| 11 | 2,741,400 | 31 | 5,294,800 |
| 12 | 2,844,100 | 32 | 5,412,900 |
| 13 | 2,946,600 | 33 | 5,531,200 |
| 14 | 3,049,400 | | |
| 15 | 3,169,800 | | |
| 16 | 3,290,000 | | |
| 17 | 3,409,600 | | |
| 18 | 3,529,400 | | |
| 19 | 3,649,800 | | |
| 20 | 3,769,000 | | |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1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14,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7,956,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월지금액, 단위: 원)

| 계급
호칭 | 소장 | 준장 | 대령 |
|--------------------------------------|-----------|-----------|-----------|
| 1 | 5,045,100 | 4,759,400 | 3,863,700 |
| 2 | 5,169,800 | 4,883,100 | 3,993,600 |
| 3 | 5,294,500 | 5,006,800 | 4,123,500 |
| 4 | 5,419,200 | 5,130,500 | 4,253,400 |
| 5 | 5,543,900 | 5,254,200 | 4,383,300 |
| 6 | 5,668,600 | 5,377,900 | 4,513,200 |
| 7 | 5,793,300 | 5,501,600 | 4,643,100 |
| 8 | 5,918,000 | 5,625,300 | 4,773,000 |
| 9 | 6,042,700 | 5,749,000 | 4,902,900 |
| 10 | 6,167,400 | 5,872,700 | 5,032,800 |
| 11 | 6,292,100 | 5,996,400 | 5,162,700 |
| 12 | 6,416,800 | 6,120,100 | 5,292,600 |
| 13 | 6,541,500 | 6,243,800 | 5,422,500 |
| 14 | | | 5,552,400 |
| 15 | | | 5,682,300 |
| 비고
대장: 7,956,300원, 중장: 7,814,400원 | | | |

14 2018 12 31

3

.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액 |
|----|-----------|
| 16 | 7,929,400 |
| 15 | 7,479,600 |
| 14 | 7,032,000 |
| 13 | 6,630,300 |
| 12 | 6,291,500 |
| 11 | 6,128,100 |
| 10 | 5,935,800 |
| 9 | 5,614,500 |
| 8 | 5,231,900 |
| 7 | 4,901,800 |
| 6 | 4,592,200 |
| 5 | 4,293,300 |
| 4 | 3,992,400 |
| 3 | 3,701,600 |

32 2018 12 31

(단위: 천원)

| 구 분 | 연 봉 액 | 구 분 | 연 봉 액 |
|------------|---------|--|---------|
| 대통령 | 224,798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28,154 |
| 국무총리 | 174,274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
술혁신본부장 | 126,304 |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31,848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24,459 |

33 2018 12 31

1. 1 () 2 ()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1급(상당) 공무원 | 110,428 | 73,609 |
| 2급(상당) 공무원 | 102,058 | 68,003 |

2.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치안정감·소방정감 공무원 | 110,428 | 73,609 |
| 치안감·소방감 공무원 | 102,058 | 68,003 |

비고: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이 치안총감 또는 소방총감으로 승진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2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국립대학의 교원 | | 26,091 |

4. 2

(단위: 천원)

|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1호 |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82,137 |
| 2호 |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74,671 |

35

2018 12 31

(단위: 천원)

|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
| 13등급 | 110,428 | 73,609 |
| 12등급 | 110,428 | 71,058 |
| 11등급 | 102,058 | 68,003 |
| 10등급 | 98,000 | 65,828 |
| 9등급 | 94,877 | 63,734 |

비고: 14등급의 연봉액은 124,459천원으로 한다.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해당 연도까지는 임용 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37 2018 12 31

가

(단위: 천원)

| 임용직무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
| 가산액 | 4,442 | 4,402 | 5,411 | 6,472 |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38 2018 12 31

(단위: 천원)

| 기준급 상한액 | 기준급 하한액 |
|---------|---------|
| 100,576 | 64,737 |

1* 39 2018 12 31

(단위: 천원)

| 구 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
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
|---------|--|-----------------------|
| 자율책정 범위 | 90,631 ~ 64,737 | 110,051 ~ 64,737 |

6 () 15215

4

2017 12

(8)

2017 12

3

7 () 14420

3

, 2017 12

12

12

1

| 법 시행 전의 직종 | 법 시행 후의 직종 | 변경임용 후 호봉 |
|----------------------------------|------------|---|
| 기능군무원 | 일반군무원 |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
| 별정군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군무원만
해당한다) | 일반군무원 |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
| | 전문군무경력관 |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
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
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
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
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
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
다. |

8 () 14420

3

(

5

)

,

, 2018

40

9 ()

1

2

2.

「

」

13

68

< 29478 ,2019. 1. 8.>

1 ()

2 () 2019 1 1

3 () 29 3 48

3 「 가 」 73 3 1 3 , 4

6

4 () 30 2 2 3

2019 12 31

30 2 2 3 가 .

1. 11 2

2. 12 (36 2 1)

, 2

3. 13

37 2 3 4

2019 12 31

3 4 37 2 3 4

가 .

66 2

2019 12 31

66 2 가

.

3

2019 12 31

2 2 3

.

4

2019 12 31

2 2 4

.

5

2019 12 31

2 5

.

6

2019 12 31

2 6

.

10

2019 12 31

10 .

11

2019 12 31

2 11 .

12

2019 12 31

, 2 12

.

13

2019 12 31

13 .

14

2019 12 31

3 14 .

32 2019 12 31

32 .

33 2019 12 31

33 .

1. 1 () 2 ()

2. 2

3.

4. 2

5. 2

35 2019 12 31

9 , 10 , 11 , 12 , 13 14

35 .

1^ 37 2019 12 31

9 , 10 , 11 12

37 .

1& 38 2019 12 31

38

1* 39 2019 12 31

39 .

< 30192 ,2019. 11. 5.>

1 () .

2 (가) 14 1 2

.

< 30347 ,2020. 1. 7.>

1 () .

2 () 2020 1 1 .

3 () 30 2 2

2020 12 31

30 2 2 가 .

1. 11 2

2. 12 (36 2 1)

, 2

37 2 3 4 2020 12 31
3 4 37 2 3 4

가 .

66 2 2020 12 31
66 2 가

.

3 2020 12 31
2 2 3

.

4 2020 12 31
2 2 4

.

5 2020 12 31
2 5

.

6 2020 12 31
2 6

.

10 2020 12 31
10 .

11 2020 12 31
2 11 .

12 2020 12 31
, 2 12

.

13 2020 12 31
13 (30 2 3

가) .

14 2020 12 31
3 14 .

32 2020 12 31
32 .

33 2020 12 31

.

1. 1 () 2 ()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1급(상당) 공무원 | 113,432 | 75,612 |
| 2급(상당) 공무원 | 104,834 | 69,854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2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연구관 | 105,369 | 35,087 |
| 지도관 | 97,421 | 35,087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치안정감·소방정감 | 113,432 | 75,612 |
| 치안감·소방감 | 104,834 | 69,854 |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2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국립대학의 교원 | | 26,773 |

5. 2

(단위: 천원)

|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84,371 |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76,703 |

35

2020 12 31

9 , 10 , 11 , 12 , 13 14

(단위: 천원)

|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
| 13등급 | 113,432 | 75,612 |
| 12등급 | 113,432 | 72,992 |
| 11등급 | 104,834 | 69,854 |
| 10등급 | 100,667 | 67,619 |
| 9등급 | 97,459 | 65,468 |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27,845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1^ 37 2020 12 31

9 , 10 , 11 12

37

1& 38 2020 12 31

38

1* 39 2020 12 31

(단위: 천원)

| 구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
|---------|---|-----------------------|
| 자율채정 범위 | 93,097 ~ 66,498 | 113,045 ~ 66,498 |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채정 범위는 132,996천원 ~ 66,498천원으로 한다.

< 30515 ,2020. 3. 10.>(가
28)
2020 4 1 . < >

< 30800 ,2020. 6. 23.>()
1 () . < >
2 8
9 ()
30 3 7
7. 「 」 48 2

10

< 30803 ,2020. 6. 23.>()
1 () . < >
2 ()
30 3 3 “ ” “ ” .

< 31374 ,2021. 1. 5.>
1 ()
2 () 2021 1 1
3 () 30 2 2
2021 12 31
30 2 2 가 .
1. 11 2
2. 12 (36 2 1)
, 2
37 2 3 4 2021 12 31
3 4 37 2 3 4

가 .

66 2 2021 12 31

66 2 가

3 2021 12 31

2 2 3

4 2021 12 31

2 2 4

5 2021 12 31

2 5

6 2021 12 31

2 6

10 2021 12 31

10 .

11 2021 12 31

2 11 .

12 2021 12 31

, 2 12

13 2021 12 31

13 (30 2 3

가) .

14 2021 12 31

3 14 .

32 2021 12 31

32 .

33 2021 12 31

33 .

1. 1 () 2 ()

2. 2

3.

4. 2

5. 2

35

2021 12 31

9 , 10 , 11 , 12 , 13 14

35 .

1^ 37 2021 12 31

9 , 10 , 11 12

37 .

1& 38 2021 12 31

38 .

1* 39 2021 12 31

39 .

4 () 13

「 」 5

2021 (13 2 6

) 2021 12 31 13

가 .

1.

2. 「 」 7 3 가

3. 「 」 2 1 「 」

6 4 3

4. 「 」 18 6

5 () .

15 3 “ 「 」 39 2 ” “ 「 」 39

2 34 2 ” .

< 31380 ,2021. 1. 5.>(473
)

. < >

< 31559 ,2021. 3. 30.>()

1 () .

2 () .

1 12 “ ” “ ” .

< 31709 ,2021. 6. 1.>(

)

1 () 2021 7 13 .

2

3 () .

36 2 1 “ 「 「 ” “ 「 「 ” .

< 32319 ,2022. 1. 4.>

1 () .

2 () 2022 1 1 .

3 () 30 2 2

2022 12 31

30 2 2 가 .

1. 11 2

2. 12 (36 2 1)

, 2

37 2 3 4 2022 12 31

3 4 37 2 3 4

가 .

66 2 2022 12 31

66 2 가

3 2022 12 31

2 2 3

.

4 2022 12 31

2 2 4

.

5 2022 12 31

2 5

.

6 2022 12 31 2 6

10 2022 12 31 10 .

11 2022 12 31 2 11 .

12 2022 12 31 , 2 12

13 2022 12 31 30 2 3 가

13 14 2022 12 31 3 14 .

32 2022 12 31 32 .

33 2022 12 31 33 .

1. 1 () 2 ()

2. 2

3.

4. 2

5. 2

35 2022 12 31 9 , 10 , 11 , 12 , 13 14

35 .

1^ 37 2022 12 31 9 , 10 , 11 12

37 .

1& 38 2022 12 31 38 .

1* 39 2022 12 31 39 .

4 () 13 「 」 5

2022 (13 2 6
) 2022 12 31 13
 가 .

- 1.
2. 「 」 7 3 가
3. 「 」 12
4. 「 」 13
5. 「 」 14
6. 「 」 18 6
7. 「 」 6 4 3
 15666 2 2 3
 가. 「 」 2 1
 . 「 」 10 가
 . 「 」 11 2

< 32447 ,2022. 2. 17.>()
 1 () 2022 2 18 .
 2 ()
 .
 16 2 6) “ 「 」 ” “ 「
 」 ” .
 <72>
 3

< 32627 ,2022. 5. 9.>(가)
 1 () 2022 7 21 .
 2
 3 () .
 1 11 “ ” “ , 가 ” .
 12 2 “ ” “ , 가 ” .
 24 3 “ ” “ , 가 ” .
 30 “ ()
) ” “ (), 가
 ” .

< 32980 ,2022. 11. 8.>()

1 () 2023 3 1 .

2 3

4 () .

12 1 가 , “ ” “ ” .

< 33213 ,2023. 1. 6.>

1 () .

2 () 2023 1 1 .

3 (4) 30 2 2

2023 12 31
30 2 2 가 .

1. 11 4

2. 12 (36 2 1)

, 4

37 2 2023 12 31

37 2 가 .

66 2 2023 12 31

66 2 가

3 2023 12 31

4 4 3

3 2 2023 12 31

4 3 2 .

4 2023 12 31

4 4 4

5 2023 12 31

4 5

6 2023 12 31 6
4

10 2023 12 31

10 .

11 2023 12 31 11 .
4

12 2023 12 31

, 4 12

13 2023 12 31

30 2 3 가

13 .

14 2023 12 31

14 .

32 2023 12 31

32 .

33 2023 12 31

33 .

1. 4 ()

2.

3. 4 가

4. 4

5.

6. 4

7. 4

8. 가

1^ 35 2023 12 31

6 35 .

1& 37 2023 12 31

37 .

1* 38 2023 12 31

38 .

1(39 2023 12 31

39 .

4 () 13

「

」 5

2023

(13 2 6

) 2023 12 31 13

가

.

1.

2. 「 」 7 3 가

3. 「 」 12

4. 「 」 13

5. 「 」 14

6. 「 」 18 6

7. 「 」 6 4 3

15666

2 2 4

가. 「 」 2 1

. 「 」 10 가

. 「 」 11 2

5 () 「 가 」

79

45

72 1

「 가 」 80 4 3 1

3 1

.

< 33622 ,2023. 7. 11.>()

1 () . < >

2 3

4 ()

51 “ ” “ , ” .

54 1 • 2 59 1 • 2 “ ” “

”

.

< 33692 ,2023. 8. 30.>()

1 () .

2 3

4 ()

1 “ (4) ” “
(4) ” .

16 “ ” “ ” .

17 2 “ ” “ ” .

19 2 “ ” “ ” “ ” “ ”

” .

22 3 “ ” “ ” .

5

< 33798 ,2023. 10. 10.>()

1 () 2023 10 12 .

2 () .

60 1 “ 「 가 」 43 2 ” “ 「 가 」 43 3
” .

< 33862 ,2023. 11. 16.>()

1 () . < >

2

3 () .

12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099 ,2024. 1. 5.>

1 () . , 15, 16, 17, 19

22 2024 1 12 .

2 () 2024 1 1 .

3 (.) 15,
 16, 17, 19 22 1
 , 9 1 3
 . 22 1
 22 1 .
 1 15, 16, 17, 19 22

4 ()
 40 2024
 10
 4
 . 33
 .

1. 2023 1 2
 2. 2017 1 1 2022 12 31
 3. 2016 1 1 2023 12 31

5 () 16 2
 4 2 1 1 16 2
 .
 16 2 가
 4 2 1 1 16 2

6 () 74 4
 4 2 1 3 74 4
 .
 74 4 가
 4 2 1 3 74 4

7 () .
 20 .

< 34823 ,2024. 8. 13.>()

1 () 2024 8 14 .

2 ()

10 2 “ ” “ ” .

< 34825 ,2024. 8. 13.>()

1 () 2024 8 14 .

2

3 () .

30 3 6 “ 「 」 ” “ 「 」 ” .

75 “ 「 」 ” “ 「 」 ” .

.

< 35181 ,2025. 1. 3.>

1 () .

2 () 2025 1 1 .

3 () 「 」 11 3 7

2025 1 1 「 가 」 71 2

4 「 」 63 2 4

2025 1 1 8 2 3

.

4 () 「 」 11 3 7

2025 1 1 「 가 」 71 2

4 「 」 44 1 7 2025 1

1 15 6 .

< 35282 ,2025. 2. 25.>()

1 () 2025 3 1 .

2 3

4 () 「 」 12 1 “
” “ ” .

< 35838 ,2025. 11. 4.>()

1 () .

2

3 () .

1 12 “ ” “
” .

< 35948 ,2025. 12. 30.>()

1 () 2026 1 2 . , 4

2 3

4 () <151>

<152> .

3 2, 32 1 , 2 , 39 2 5 , 58 2 74

3 “ ” “ ” .

<153> <176>

< 36013 ,2026. 1. 2.>

1 () .

2 () 2026 1 1 .

3 () 15 6 2 2026 1 1

「 가 」 71 2 5 「 」 44 1 9

1 15 6 2

2026 1 1 90 가

1. 2026 1 1 「 가 」 71 2 5 「 」

44 1 9 90

2. 2026 1 1 「 가 」 71 2 5 「 」
 44 1 9 90
 4 () .
 1 1 가 “ 「 」 12 1 ” “ 「
 」 12 1 ” , “ 「 」 12
 1 가 ” “ 「 」 12 1 가 ” .

< 36147 ,2026. 2. 27.>()
 1 () 2026 3 1 .
 2 4
 5 () .
 12 1 “ , ” “ ” .

< 36489 ,2026. 6. 30.>()
 1 () .
 2
 3 ()
 .
 11 1 “ ” “ , 「 」 7 1 1
 7 ” .

< 36501 ,2026. 7. 7.>()
 1 () .
 2 () .
 32 “ ” “ , 가 ,
 ” .

< 36547 ,2026. 7. 30.>
 1 () 2026 8 1 . ,
 .
 1. 8 3 :

2. 28 1 47 1 : 2026 12 3
2 () 16 2 ,
17 3 19 3
, 9 1 3 .
22 1 .
1 16 2 , 17 3 19 3
.
3 () 1 1 9 12
3 6 「
」 57 3 「 」 38 15
8 3 .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 별표 3 |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
| 별표 3의2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 별표 4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조사사무직·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
| 별표 5 |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
| 별표 6 | 지도직공무원 |
| 별표 8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별표 10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 후보생,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 별표 11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별표 12 |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 |
| 별표 13 |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 별표 14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삭제 <1998.12.31>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6. 1. 2.>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직무등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
| 1 | 4,656,100 | 4,191,600 | 3,781,700 | 3,241,200 | 2,896,400 | 2,389,500 | 2,317,100 | 2,162,100 | 2,133,000 |
| 2 | 4,819,300 | 4,347,100 | 3,921,600 | 3,373,500 | 3,013,400 | 2,500,700 | 2,367,900 | 2,195,700 | 2,147,600 |
| 3 | 4,986,600 | 4,504,700 | 4,065,700 | 3,508,000 | 3,135,000 | 2,615,200 | 2,423,800 | 2,233,800 | 2,168,000 |
| 4 | 5,157,700 | 4,663,700 | 4,210,800 | 3,645,700 | 3,261,300 | 2,732,400 | 2,485,200 | 2,276,600 | 2,194,000 |
| 5 | 5,333,000 | 4,825,100 | 4,358,300 | 3,785,200 | 3,390,900 | 2,853,100 | 2,567,100 | 2,331,700 | 2,226,100 |
| 6 | 5,510,400 | 4,986,500 | 4,507,200 | 3,926,200 | 3,523,000 | 2,977,100 | 2,682,600 | 2,412,900 | 2,264,600 |
| 7 | 5,690,400 | 5,150,200 | 4,658,000 | 4,068,300 | 3,657,300 | 3,101,500 | 2,798,700 | 2,519,600 | 2,309,900 |
| 8 | 5,871,900 | 5,313,600 | 4,809,000 | 4,211,100 | 3,793,200 | 3,226,200 | 2,915,800 | 2,622,400 | 2,367,500 |
| 9 | 6,056,100 | 5,478,200 | 4,961,400 | 4,354,500 | 3,929,600 | 3,351,300 | 3,027,100 | 2,720,300 | 2,456,700 |
| 10 | 6,241,300 | 5,642,500 | 5,113,600 | 4,497,700 | 4,066,800 | 3,468,700 | 3,133,300 | 2,813,000 | 2,542,700 |
| 11 | 6,426,000 | 5,807,700 | 5,266,200 | 4,642,100 | 4,195,300 | 3,580,000 | 3,233,400 | 2,902,700 | 2,624,400 |
| 12 | 6,617,100 | 5,978,600 | 5,424,200 | 4,778,100 | 4,319,000 | 3,689,600 | 3,331,900 | 2,990,300 | 2,705,900 |
| 13 | 6,809,200 | 6,150,500 | 5,571,200 | 4,905,100 | 4,436,400 | 3,792,700 | 3,425,300 | 3,074,500 | 2,783,900 |
| 14 | 7,001,800 | 6,306,200 | 5,707,600 | 5,023,800 | 4,545,900 | 3,890,000 | 3,514,500 | 3,155,100 | 2,859,800 |
| 15 | 7,170,100 | 6,449,600 | 5,833,400 | 5,135,500 | 4,649,400 | 3,983,600 | 3,599,900 | 3,232,400 | 2,932,300 |
| 16 | 7,319,600 | 6,581,000 | 5,950,500 | 5,240,900 | 4,746,800 | 4,071,300 | 3,680,600 | 3,307,100 | 3,002,300 |
| 17 | 7,452,100 | 6,702,000 | 6,059,400 | 5,338,700 | 4,838,400 | 4,154,900 | 3,758,100 | 3,376,800 | 3,070,800 |
| 18 | 7,570,100 | 6,812,700 | 6,160,700 | 5,430,100 | 4,924,800 | 4,234,100 | 3,832,100 | 3,444,300 | 3,134,500 |
| 19 | 7,675,800 | 6,914,900 | 6,254,300 | 5,515,500 | 5,006,300 | 4,309,100 | 3,902,000 | 3,509,300 | 3,197,300 |
| 20 | 7,770,600 | 7,008,100 | 6,342,100 | 5,595,300 | 5,082,700 | 4,379,600 | 3,968,400 | 3,571,100 | 3,257,000 |
| 21 | 7,857,800 | 7,093,400 | 6,423,300 | 5,669,800 | 5,154,500 | 4,447,600 | 4,031,800 | 3,630,200 | 3,313,400 |
| 22 | 7,935,600 | 7,171,600 | 6,498,500 | 5,739,700 | 5,222,000 | 4,511,500 | 4,091,600 | 3,686,900 | 3,367,600 |
| 23 | 8,001,400 | 7,243,100 | 6,567,800 | 5,805,400 | 5,285,600 | 4,571,300 | 4,149,600 | 3,740,800 | 3,419,200 |
| 24 | | 7,301,700 | 6,632,800 | 5,867,300 | 5,345,200 | 4,628,500 | 4,204,500 | 3,792,900 | 3,468,800 |
| 25 | | 7,357,600 | 6,685,800 | 5,923,800 | 5,401,500 | 4,682,800 | 4,256,500 | 3,842,300 | 3,516,000 |
| 26 | | | 6,736,700 | 5,971,800 | 5,454,500 | 4,734,100 | 4,306,500 | 3,890,300 | 3,558,700 |
| 27 | | | 6,783,800 | 6,015,900 | 5,498,400 | 4,782,800 | 4,348,700 | 3,930,200 | 3,595,600 |
| 28 | | | | 6,058,300 | 5,540,700 | 4,823,700 | 4,388,000 | 3,968,700 | 3,631,000 |
| 29 | | | | | 5,579,500 | 4,861,900 | 4,426,100 | 4,005,100 | 3,665,100 |
| 30 | | | | | 5,617,200 | 4,899,800 | 4,462,400 | 4,040,300 | 3,698,400 |
| 31 | | | | | | 4,934,800 | 4,496,500 | 4,074,600 | 3,731,100 |
| 32 | | | | | | 4,967,800 | | | |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책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6. 1. 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직위군 | 가군 | 나군 | 다군 |
|----|-----|-----------|-----------|-----------|
| 1 | | 2,896,400 | 2,317,100 | 2,133,000 |
| 2 | | 3,033,800 | 2,373,300 | 2,147,500 |
| 3 | | 3,171,600 | 2,441,100 | 2,168,400 |
| 4 | | 3,310,400 | 2,521,400 | 2,195,900 |
| 5 | | 3,451,900 | 2,615,300 | 2,230,200 |
| 6 | | 3,590,200 | 2,735,900 | 2,271,600 |
| 7 | | 3,724,200 | 2,858,000 | 2,320,400 |
| 8 | | 3,859,700 | 2,976,900 | 2,377,200 |
| 9 | | 3,996,400 | 3,080,800 | 2,468,600 |
| 10 | | 4,135,800 | 3,183,000 | 2,558,300 |
| 11 | | 4,259,700 | 3,283,500 | 2,640,500 |
| 12 | | 4,380,100 | 3,373,300 | 2,713,100 |
| 13 | | 4,487,600 | 3,463,900 | 2,789,800 |
| 14 | | 4,598,300 | 3,543,000 | 2,867,900 |
| 15 | | 4,714,300 | 3,622,000 | 2,942,800 |
| 16 | | 4,802,300 | 3,703,700 | 3,014,300 |
| 17 | | 4,889,400 | 3,785,800 | 3,077,800 |
| 18 | | 4,967,000 | 3,859,600 | 3,142,600 |
| 19 | | 5,048,800 | 3,928,200 | 3,208,500 |
| 20 | | 5,125,200 | 4,001,300 | 3,275,600 |
| 21 | | 5,207,100 | 4,075,500 | 3,338,900 |
| 22 | | 5,285,200 | 4,140,600 | 3,403,900 |
| 23 | | 5,367,100 | 4,208,700 | 3,463,400 |
| 24 | | 5,451,400 | 4,279,800 | 3,527,200 |
| 25 | | 5,533,700 | 4,345,200 | 3,585,000 |
| 26 | | 5,622,100 | 4,410,700 | 3,647,900 |
| 27 | | 5,707,800 | 4,479,300 | 3,707,600 |
| 28 | | 5,791,400 | 4,548,300 | 3,761,200 |
| 29 | | 5,878,600 | 4,612,500 | 3,813,800 |
| 30 | | 5,960,700 | 4,676,100 | 3,863,400 |
| 31 | | 6,044,900 | 4,739,700 | 3,909,300 |
| 32 | | 6,131,800 | 4,802,900 | 3,953,200 |
| 33 | | 6,217,600 | 4,867,500 | 3,994,700 |
| 34 | | 6,303,000 | 4,928,900 | 4,035,700 |
| 35 | | 6,388,100 | 4,992,500 | 4,079,000 |
| 36 | | 6,473,300 | 5,051,500 | 4,121,700 |
| 37 | | 6,559,100 | 5,110,100 | 4,164,200 |
| 38 | | 6,645,200 | 5,168,900 | 4,206,700 |
| 39 | | 6,729,500 | | |
| 40 | | 6,783,800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개정 2026. 1.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 | 4,905,100 | 4,563,500 | 4,167,700 | 3,619,000 | 3,126,100 | 2,568,400 | 2,472,100 | 2,215,300 | 2,133,000 |
| 2 | 5,068,300 | 4,719,000 | 4,307,600 | 3,751,300 | 3,243,100 | 2,679,400 | 2,493,100 | 2,245,500 | 2,148,600 |
| 3 | 5,235,600 | 4,876,600 | 4,451,700 | 3,885,800 | 3,364,700 | 2,794,000 | 2,539,000 | 2,290,400 | 2,174,000 |
| 4 | 5,406,700 | 5,035,600 | 4,596,800 | 4,023,500 | 3,491,000 | 2,911,100 | 2,610,800 | 2,350,700 | 2,209,500 |
| 5 | 5,582,000 | 5,197,000 | 4,744,300 | 4,163,000 | 3,620,600 | 3,031,800 | 2,710,600 | 2,427,500 | 2,255,500 |
| 6 | 5,759,400 | 5,358,400 | 4,893,200 | 4,304,000 | 3,752,700 | 3,155,800 | 2,826,000 | 2,522,200 | 2,312,600 |
| 7 | 5,939,400 | 5,522,100 | 5,044,000 | 4,446,100 | 3,887,000 | 3,280,100 | 2,942,100 | 2,628,900 | 2,381,600 |
| 8 | 6,120,900 | 5,685,500 | 5,195,000 | 4,588,900 | 4,022,900 | 3,404,900 | 3,059,100 | 2,731,700 | 2,463,400 |
| 9 | 6,305,100 | 5,850,100 | 5,347,400 | 4,732,300 | 4,159,300 | 3,530,100 | 3,170,300 | 2,829,500 | 2,552,800 |
| 10 | 6,490,300 | 6,014,400 | 5,499,600 | 4,875,500 | 4,296,500 | 3,647,400 | 3,276,600 | 2,922,200 | 2,638,600 |
| 11 | 6,675,000 | 6,179,600 | 5,652,200 | 5,019,900 | 4,425,000 | 3,758,800 | 3,376,800 | 3,012,000 | 2,720,500 |
| 12 | 6,866,100 | 6,350,500 | 5,810,200 | 5,155,900 | 4,548,700 | 3,868,400 | 3,475,200 | 3,099,500 | 2,802,100 |
| 13 | 7,058,200 | 6,522,400 | 5,957,200 | 5,282,900 | 4,666,100 | 3,971,500 | 3,568,600 | 3,183,800 | 2,880,000 |
| 14 | 7,250,800 | 6,678,100 | 6,093,600 | 5,401,600 | 4,775,600 | 4,068,800 | 3,657,900 | 3,264,300 | 2,955,600 |
| 15 | 7,419,100 | 6,821,500 | 6,219,400 | 5,513,300 | 4,879,100 | 4,162,400 | 3,743,200 | 3,341,600 | 3,028,100 |
| 16 | 7,568,600 | 6,952,900 | 6,336,500 | 5,618,700 | 4,976,500 | 4,250,000 | 3,823,900 | 3,416,300 | 3,098,400 |
| 17 | 7,701,100 | 7,073,900 | 6,445,400 | 5,716,500 | 5,068,100 | 4,333,800 | 3,901,400 | 3,486,000 | 3,166,800 |
| 18 | 7,819,100 | 7,184,600 | 6,546,700 | 5,807,900 | 5,154,500 | 4,412,800 | 3,975,500 | 3,553,600 | 3,230,600 |
| 19 | 7,924,800 | 7,286,800 | 6,640,300 | 5,893,300 | 5,236,000 | 4,487,900 | 4,045,300 | 3,618,500 | 3,293,300 |
| 20 | 8,019,600 | 7,380,000 | 6,728,100 | 5,973,100 | 5,312,400 | 4,558,500 | 4,111,700 | 3,680,400 | 3,353,200 |
| 21 | 8,106,800 | 7,465,300 | 6,809,300 | 6,047,600 | 5,384,200 | 4,626,200 | 4,175,200 | 3,739,400 | 3,409,400 |
| 22 | 8,184,600 | 7,543,500 | 6,884,500 | 6,117,500 | 5,451,700 | 4,690,200 | 4,235,000 | 3,796,100 | 3,463,600 |
| 23 | 8,250,400 | 7,615,000 | 6,953,800 | 6,183,200 | 5,515,300 | 4,750,100 | 4,293,000 | 3,850,000 | 3,515,100 |
| 24 | | 7,673,600 | 7,018,800 | 6,245,100 | 5,574,900 | 4,807,300 | 4,347,900 | 3,902,200 | 3,564,900 |
| 25 | | 7,729,500 | 7,071,800 | 6,301,600 | 5,631,200 | 4,861,500 | 4,399,900 | 3,951,600 | 3,612,000 |
| 26 | | | 7,122,700 | 6,349,600 | 5,684,200 | 4,912,900 | 4,449,900 | 3,999,600 | 3,654,600 |
| 27 | | | 7,169,800 | 6,393,700 | 5,728,100 | 4,961,600 | 4,492,000 | 4,039,500 | 3,691,600 |
| 28 | | | | 6,436,100 | 5,770,400 | 5,002,600 | 4,531,300 | 4,078,000 | 3,727,000 |
| 29 | | | | | 5,809,200 | 5,040,800 | 4,569,300 | 4,114,300 | 3,761,200 |
| 30 | | | | | 5,846,900 | 5,078,500 | 4,605,800 | 4,149,600 | 3,794,400 |
| 31 | | | | | | 5,113,500 | 4,639,900 | 4,183,800 | 3,827,000 |
| 32 | | | | | | 5,146,400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6. 1. 2.>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봉 | 연구관 | 연구사 |
|----------|-----------|-----------|
| 1 | 2,896,400 | 2,317,100 |
| 2 | 3,038,400 | 2,391,800 |
| 3 | 3,180,100 | 2,477,300 |
| 4 | 3,322,000 | 2,574,400 |
| 5 | 3,463,400 | 2,684,300 |
| 6 | 3,668,200 | 2,816,200 |
| 7 | 3,872,200 | 2,948,500 |
| 8 | 4,075,900 | 3,080,700 |
| 9 | 4,278,800 | 3,211,900 |
| 10 | 4,481,600 | 3,343,400 |
| 11 | 4,662,200 | 3,442,300 |
| 12 | 4,842,600 | 3,541,300 |
| 13 | 5,020,600 | 3,640,700 |
| 14 | 5,200,000 | 3,739,800 |
| 15 | 5,377,800 | 3,838,500 |
| 16 | 5,550,900 | 3,917,400 |
| 17 | 5,723,200 | 3,995,500 |
| 18 | 5,896,100 | 4,074,600 |
| 19 | 6,067,000 | 4,152,500 |
| 20 | 6,238,400 | 4,231,200 |
| 21 | 6,381,100 | 4,306,800 |
| 22 | 6,522,800 | 4,383,100 |
| 23 | 6,665,000 | 4,459,100 |
| 24 | 6,806,500 | 4,534,900 |
| 25 | 6,948,400 | 4,610,300 |
| 26 | 7,067,000 | 4,662,700 |
| 27 | 7,187,000 | 4,714,800 |
| 28 | 7,306,100 | 4,767,300 |
| 29 | 7,424,400 | 4,817,800 |
| 30 | 7,543,300 | 4,869,900 |
| 31 | 7,635,200 | 4,921,800 |
| 32 | 7,727,300 | 4,967,300 |
| 33 | | 5,012,900 |
| 34 | | 5,057,600 |
| 35 | | 5,102,700 |
| 36 | | 5,144,600 |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개정 2026. 1. 2.>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봉 | 지도관 | 지도사 |
|----------|-----------|-----------|
| 1 | 2,896,400 | 2,162,100 |
| 2 | 3,036,700 | 2,231,300 |
| 3 | 3,176,300 | 2,307,600 |
| 4 | 3,316,600 | 2,391,700 |
| 5 | 3,454,600 | 2,484,100 |
| 6 | 3,638,500 | 2,585,700 |
| 7 | 3,822,500 | 2,706,300 |
| 8 | 4,006,900 | 2,826,000 |
| 9 | 4,190,200 | 2,945,900 |
| 10 | 4,372,400 | 3,065,400 |
| 11 | 4,537,300 | 3,168,300 |
| 12 | 4,701,200 | 3,270,800 |
| 13 | 4,865,100 | 3,372,800 |
| 14 | 5,028,200 | 3,474,300 |
| 15 | 5,190,200 | 3,574,600 |
| 16 | 5,333,100 | 3,665,100 |
| 17 | 5,478,300 | 3,755,400 |
| 18 | 5,622,000 | 3,844,800 |
| 19 | 5,764,400 | 3,934,000 |
| 20 | 5,906,500 | 4,023,700 |
| 21 | 6,033,200 | 4,106,700 |
| 22 | 6,160,500 | 4,190,200 |
| 23 | 6,287,000 | 4,272,700 |
| 24 | 6,413,400 | 4,355,300 |
| 25 | 6,540,000 | 4,437,400 |
| 26 | 6,650,700 | 4,499,400 |
| 27 | 6,760,600 | 4,562,200 |
| 28 | 6,871,300 | 4,625,000 |
| 29 | 6,980,800 | 4,687,500 |
| 30 | 7,092,100 | 4,749,000 |
| 31 | 7,166,500 | 4,802,900 |
| 32 | 7,241,800 | 4,849,900 |
| 33 | | 4,897,000 |
| 34 | | 4,943,700 |
| 35 | | 4,990,600 |
| 36 | | 5,034,200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7] 삭제 <1989.6.17>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개정 2026. 1. 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봉 | 우정1급 | 우정2급 | 우정3급 | 우정4급 | 우정5급 | 우정6급 | 우정7급 | 우정8급 | 우정9급 |
|----------|-----------|-----------|-----------|-----------|-----------|-----------|-----------|-----------|-----------|
| 1 | 3,434,000 | 3,197,100 | 2,978,700 | 2,769,500 | 2,570,600 | 2,389,500 | 2,317,100 | 2,162,100 | 2,133,000 |
| 2 | 3,564,000 | 3,322,500 | 3,099,600 | 2,887,900 | 2,685,200 | 2,500,700 | 2,367,900 | 2,195,700 | 2,147,600 |
| 3 | 3,699,200 | 3,452,400 | 3,223,600 | 3,008,500 | 2,803,300 | 2,615,200 | 2,423,800 | 2,233,800 | 2,168,000 |
| 4 | 3,840,400 | 3,587,400 | 3,349,300 | 3,132,300 | 2,923,900 | 2,732,400 | 2,485,200 | 2,276,600 | 2,194,000 |
| 5 | 3,985,900 | 3,726,500 | 3,477,400 | 3,256,300 | 3,048,000 | 2,853,100 | 2,567,100 | 2,331,700 | 2,226,100 |
| 6 | 4,134,700 | 3,868,600 | 3,610,100 | 3,381,700 | 3,172,200 | 2,977,100 | 2,682,600 | 2,412,900 | 2,264,600 |
| 7 | 4,288,400 | 4,013,000 | 3,743,800 | 3,506,500 | 3,296,800 | 3,101,500 | 2,798,700 | 2,519,600 | 2,309,900 |
| 8 | 4,443,500 | 4,160,200 | 3,880,800 | 3,632,200 | 3,421,600 | 3,226,200 | 2,915,800 | 2,622,400 | 2,367,500 |
| 9 | 4,599,500 | 4,307,700 | 4,018,100 | 3,758,600 | 3,547,600 | 3,351,300 | 3,027,100 | 2,720,300 | 2,456,700 |
| 10 | 4,756,200 | 4,456,200 | 4,155,300 | 3,885,400 | 3,673,700 | 3,468,700 | 3,133,300 | 2,813,000 | 2,542,700 |
| 11 | 4,914,100 | 4,604,200 | 4,292,600 | 4,012,900 | 3,791,900 | 3,580,000 | 3,233,400 | 2,902,700 | 2,624,400 |
| 12 | 5,063,700 | 4,737,500 | 4,417,700 | 4,135,300 | 3,906,500 | 3,689,600 | 3,331,900 | 2,990,300 | 2,705,900 |
| 13 | 5,203,300 | 4,861,700 | 4,533,600 | 4,249,600 | 4,015,500 | 3,792,700 | 3,425,300 | 3,074,500 | 2,783,900 |
| 14 | 5,333,000 | 4,979,300 | 4,644,500 | 4,357,600 | 4,118,600 | 3,890,000 | 3,514,500 | 3,155,100 | 2,859,800 |
| 15 | 5,453,400 | 5,088,500 | 4,747,000 | 4,459,500 | 4,216,400 | 3,983,600 | 3,599,900 | 3,232,400 | 2,932,300 |
| 16 | 5,565,600 | 5,192,100 | 4,844,600 | 4,556,300 | 4,308,700 | 4,071,300 | 3,680,600 | 3,307,100 | 3,002,300 |
| 17 | 5,669,300 | 5,287,800 | 4,936,500 | 4,647,300 | 4,396,300 | 4,154,900 | 3,758,100 | 3,376,800 | 3,070,800 |
| 18 | 5,765,400 | 5,378,100 | 5,023,500 | 4,733,200 | 4,478,500 | 4,234,100 | 3,832,100 | 3,444,300 | 3,134,500 |
| 19 | 5,855,100 | 5,462,300 | 5,105,200 | 4,813,600 | 4,556,000 | 4,309,100 | 3,902,000 | 3,509,300 | 3,197,300 |
| 20 | 5,938,200 | 5,541,800 | 5,182,000 | 4,890,300 | 4,630,300 | 4,379,600 | 3,968,400 | 3,571,100 | 3,257,000 |
| 21 | 6,015,800 | 5,615,000 | 5,254,500 | 4,961,900 | 4,700,100 | 4,447,600 | 4,031,800 | 3,630,200 | 3,313,400 |
| 22 | 6,086,900 | 5,684,800 | 5,322,400 | 5,029,400 | 4,764,900 | 4,511,500 | 4,091,600 | 3,686,900 | 3,367,600 |
| 23 | 6,146,100 | 5,749,800 | 5,387,200 | 5,092,800 | 4,826,800 | 4,571,300 | 4,149,600 | 3,740,800 | 3,419,200 |
| 24 | 6,201,400 | 5,804,300 | 5,446,900 | 5,153,300 | 4,885,800 | 4,628,500 | 4,204,500 | 3,792,900 | 3,468,800 |
| 25 | | 5,855,300 | 5,497,700 | 5,209,600 | 4,941,800 | 4,682,800 | 4,256,500 | 3,842,300 | 3,516,000 |
| 26 | | | 5,545,600 | 5,256,400 | 4,993,500 | 4,734,100 | 4,306,500 | 3,890,300 | 3,558,700 |
| 27 | | | 5,591,500 | 5,300,800 | 5,037,600 | 4,782,800 | 4,348,700 | 3,930,200 | 3,595,600 |
| 28 | | | | 5,343,800 | 5,079,400 | 4,823,700 | 4,388,000 | 3,968,700 | 3,631,000 |
| 29 | | | | 5,383,100 | 5,118,200 | 4,861,900 | 4,426,100 | 4,005,100 | 3,665,100 |
| 30 | | | | | 5,156,000 | 4,899,800 | 4,462,400 | 4,040,300 | 3,698,400 |
| 31 | | | | | | 4,934,800 | 4,496,500 | 4,074,600 | 3,731,100 |
| 32 | | | | | | 4,967,800 | | | |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삭제 <2011.7.4>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의2] 삭제 <2011.7.4>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봉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치안감
소방감 | 경무관
소방준감 | 총경
소방정 | 경정
소방령 | 경감
소방경 | 경위
소방위 | 경사
소방장 | 경장
소방교 | 순경
소방사 |
|----------|--------------|------------|-------------|-----------|-----------|-----------|-----------|-----------|-----------|-----------|
| 1 | 4,905,100 | 4,563,500 | 4,167,700 | 3,619,000 | 3,126,100 | 2,698,600 | 2,507,700 | 2,472,100 | 2,215,300 | 2,133,000 |
| 2 | 5,068,300 | 4,719,000 | 4,307,600 | 3,751,300 | 3,243,100 | 2,814,700 | 2,567,700 | 2,493,100 | 2,245,500 | 2,155,600 |
| 3 | 5,235,600 | 4,876,600 | 4,451,700 | 3,885,800 | 3,364,700 | 2,933,000 | 2,640,000 | 2,539,000 | 2,290,400 | 2,187,500 |
| 4 | 5,406,700 | 5,035,600 | 4,596,800 | 4,023,500 | 3,491,000 | 3,054,900 | 2,758,200 | 2,610,800 | 2,350,700 | 2,229,200 |
| 5 | 5,582,000 | 5,197,000 | 4,744,300 | 4,163,000 | 3,620,600 | 3,178,700 | 2,879,500 | 2,710,600 | 2,427,500 | 2,281,100 |
| 6 | 5,759,400 | 5,358,400 | 4,893,200 | 4,304,000 | 3,752,700 | 3,305,500 | 3,001,800 | 2,826,000 | 2,522,200 | 2,343,900 |
| 7 | 5,939,400 | 5,522,100 | 5,044,000 | 4,446,100 | 3,887,000 | 3,435,100 | 3,125,400 | 2,942,100 | 2,628,900 | 2,418,400 |
| 8 | 6,120,900 | 5,685,500 | 5,195,000 | 4,588,900 | 4,022,900 | 3,565,700 | 3,249,000 | 3,059,100 | 2,731,700 | 2,505,600 |
| 9 | 6,305,100 | 5,850,100 | 5,347,400 | 4,732,300 | 4,159,300 | 3,697,600 | 3,373,300 | 3,170,300 | 2,829,500 | 2,585,100 |
| 10 | 6,490,300 | 6,014,400 | 5,499,600 | 4,875,500 | 4,296,500 | 3,820,800 | 3,490,700 | 3,276,600 | 2,922,200 | 2,680,900 |
| 11 | 6,675,000 | 6,179,600 | 5,652,200 | 5,019,900 | 4,425,000 | 3,937,600 | 3,600,800 | 3,376,800 | 3,012,000 | 2,762,900 |
| 12 | 6,866,100 | 6,350,500 | 5,810,200 | 5,155,900 | 4,548,700 | 4,051,200 | 3,709,400 | 3,475,200 | 3,099,500 | 2,844,100 |
| 13 | 7,058,200 | 6,522,400 | 5,957,200 | 5,282,900 | 4,666,100 | 4,158,400 | 3,812,400 | 3,568,600 | 3,183,800 | 2,922,200 |
| 14 | 7,250,800 | 6,678,100 | 6,093,600 | 5,401,600 | 4,775,600 | 4,261,000 | 3,909,100 | 3,657,900 | 3,264,300 | 2,998,100 |
| 15 | 7,419,100 | 6,821,500 | 6,219,400 | 5,513,300 | 4,879,100 | 4,357,000 | 4,002,700 | 3,743,200 | 3,341,600 | 3,070,500 |
| 16 | 7,568,600 | 6,952,900 | 6,336,500 | 5,618,700 | 4,976,500 | 4,449,500 | 4,090,100 | 3,823,900 | 3,416,300 | 3,140,600 |
| 17 | 7,701,100 | 7,073,900 | 6,445,400 | 5,716,500 | 5,068,100 | 4,535,400 | 4,173,700 | 3,901,400 | 3,496,000 | 3,209,100 |
| 18 | 7,819,100 | 7,184,600 | 6,546,700 | 5,807,900 | 5,154,500 | 4,618,100 | 4,252,700 | 3,975,500 | 3,553,600 | 3,273,000 |
| 19 | 7,924,800 | 7,286,800 | 6,640,300 | 5,893,300 | 5,236,000 | 4,695,400 | 4,327,900 | 4,045,300 | 3,618,500 | 3,335,700 |
| 20 | 8,019,600 | 7,380,000 | 6,728,100 | 5,973,100 | 5,312,400 | 4,768,800 | 4,399,300 | 4,111,700 | 3,680,400 | 3,395,400 |
| 21 | 8,106,800 | 7,465,300 | 6,809,300 | 6,047,600 | 5,384,200 | 4,837,900 | 4,467,200 | 4,175,200 | 3,739,400 | 3,451,600 |
| 22 | 8,184,600 | 7,543,500 | 6,884,500 | 6,117,500 | 5,451,700 | 4,904,700 | 4,531,200 | 4,235,000 | 3,796,100 | 3,506,000 |
| 23 | 8,250,400 | 7,615,000 | 6,953,800 | 6,183,200 | 5,515,300 | 4,965,900 | 4,592,000 | 4,293,000 | 3,850,000 | 3,557,600 |
| 24 | | 7,673,600 | 7,018,800 | 6,245,100 | 5,574,900 | 5,025,200 | 4,650,300 | 4,347,900 | 3,902,200 | 3,607,200 |
| 25 | | 7,729,500 | 7,071,800 | 6,301,600 | 5,631,200 | 5,081,100 | 4,705,700 | 4,399,900 | 3,951,600 | 3,654,200 |
| 26 | | | 7,122,700 | 6,349,600 | 5,684,200 | 5,134,000 | 4,756,500 | 4,449,900 | 3,999,600 | 3,697,100 |
| 27 | | | 7,169,800 | 6,393,700 | 5,728,100 | 5,183,300 | 4,800,000 | 4,492,000 | 4,039,500 | 3,733,900 |
| 28 | | | | 6,436,100 | 5,770,400 | 5,225,600 | 4,841,900 | 4,531,300 | 4,078,000 | 3,769,300 |
| 29 | | | | | 5,809,200 | 5,264,800 | 4,881,500 | 4,569,300 | 4,114,300 | 3,803,400 |
| 30 | | | | | 5,846,900 | 5,303,200 | 4,918,600 | 4,605,800 | 4,149,600 | 3,836,800 |
| 31 | | | | | | 5,338,600 | 4,954,300 | 4,639,900 | 4,183,800 | 3,869,200 |
| 32 | | | | | | 5,372,500 | | | | |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2.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6. 1.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2,041,500 | 21 | 3,600,700 |
| 2 | 2,103,300 | 22 | 3,733,600 |
| 3 | 2,166,000 | 23 | 3,865,300 |
| 4 | 2,228,500 | 24 | 3,997,500 |
| 5 | 2,291,500 | 25 | 4,129,400 |
| 6 | 2,354,400 | 26 | 4,261,900 |
| 7 | 2,416,600 | 27 | 4,400,100 |
| 8 | 2,478,600 | 28 | 4,538,000 |
| 9 | 2,495,600 | 29 | 4,682,100 |
| 10 | 2,516,700 | 30 | 4,826,800 |
| 11 | 2,538,300 | 31 | 4,971,100 |
| 12 | 2,585,900 | 32 | 5,115,200 |
| 13 | 2,657,500 | 33 | 5,261,600 |
| 14 | 2,773,700 | 34 | 5,407,500 |
| 15 | 2,889,700 | 35 | 5,553,600 |
| 16 | 3,006,200 | 36 | 5,699,100 |
| 17 | 3,121,000 | 37 | 5,825,700 |
| 18 | 3,241,500 | 38 | 5,952,500 |
| 19 | 3,361,200 | 39 | 6,079,500 |
| 20 | 3,481,000 | 40 | 6,205,700 |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2. 27.>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2,379,500 | 21 | 4,681,500 |
| 2 | 2,454,300 | 22 | 4,825,500 |
| 3 | 2,529,700 | 23 | 5,013,100 |
| 4 | 2,604,500 | 24 | 5,200,300 |
| 5 | 2,679,900 | 25 | 5,387,500 |
| 6 | 2,762,500 | 26 | 5,574,300 |
| 7 | 2,844,900 | 27 | 5,761,100 |
| 8 | 2,927,700 | 28 | 5,948,000 |
| 9 | 3,051,900 | 29 | 6,090,300 |
| 10 | 3,176,100 | 30 | 6,232,600 |
| 11 | 3,300,500 | 31 | 6,374,700 |
| 12 | 3,424,200 | 32 | 6,516,900 |
| 13 | 3,547,700 | 33 | 6,659,200 |
| 14 | 3,671,200 | | |
| 15 | 3,816,100 | | |
| 16 | 3,960,900 | | |
| 17 | 4,105,100 | | |
| 18 | 4,249,300 | | |
| 19 | 4,394,200 | | |
| 20 | 4,537,600 | | |

비고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확정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계급
호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 1 | 6,099,000 | 5,753,700 | 4,671,200 | 4,105,800 | 3,382,700 | 2,805,000 | 2,306,700 | 2,150,400 | 2,544,300 | 3,568,100 | 2,468,000 | 2,181,500 | 2,133,000 |
| 2 | 6,249,900 | 5,903,200 | 4,828,300 | 4,262,800 | 3,536,000 | 2,922,900 | 2,385,000 | 2,240,400 | 2,665,400 | 3,682,100 | 2,577,500 | 2,252,000 | 2,154,300 |
| 3 | 6,400,800 | 6,052,700 | 4,985,400 | 4,419,800 | 3,689,300 | 3,040,800 | 2,463,300 | 2,330,400 | 2,786,500 | 3,796,100 | 2,687,000 | 2,322,500 | 2,175,600 |
| 4 | 6,551,700 | 6,202,200 | 5,142,500 | 4,576,800 | 3,842,600 | 3,185,400 | 2,541,600 | | 2,907,600 | 3,910,100 | 2,796,500 | 2,393,000 | 2,196,900 |
| 5 | 6,702,600 | 6,351,700 | 5,299,600 | 4,733,800 | 3,995,900 | 3,330,000 | 2,619,900 | | 3,028,700 | 4,024,100 | 2,906,000 | 2,463,500 | 2,218,200 |
| 6 | 6,853,500 | 6,501,200 | 5,456,700 | 4,890,800 | 4,149,200 | 3,474,600 | 2,741,300 | | 3,149,800 | 4,138,100 | 3,015,500 | 2,534,000 | 2,249,100 |
| 7 | 7,004,400 | 6,650,700 | 5,613,800 | 5,047,800 | 4,302,500 | 3,619,200 | 2,862,700 | | 3,270,900 | 4,252,100 | 3,125,000 | 2,604,500 | 2,280,000 |
| 8 | 7,155,300 | 6,800,200 | 5,770,900 | 5,204,800 | 4,455,800 | 3,763,800 | | | 3,392,000 | 4,366,100 | 3,234,500 | 2,706,900 | 2,310,900 |
| 9 | 7,306,200 | 6,949,700 | 5,928,000 | 5,361,800 | 4,609,100 | 3,908,400 | | | 3,513,100 | 4,480,100 | 3,344,000 | 2,809,300 | 2,341,800 |
| 10 | 7,457,100 | 7,099,200 | 6,085,100 | 5,518,800 | 4,762,400 | 4,053,000 | | | 3,634,200 | 4,594,100 | 3,453,500 | 2,911,700 | 2,372,700 |
| 11 | 7,608,000 | 7,248,700 | 6,242,200 | 5,675,800 | 4,915,700 | 4,197,600 | | | 3,755,300 | 4,708,100 | 3,563,000 | 3,014,100 | |
| 12 | 7,758,900 | 7,398,200 | 6,399,300 | 5,832,800 | 5,069,000 | 4,342,200 | | | 3,876,400 | 4,822,100 | 3,672,500 | 3,116,500 | |
| 13 | 7,909,800 | 7,547,700 | 6,556,400 | 5,989,800 | 5,222,300 | | | | 3,997,500 | 4,936,100 | 3,782,000 | 3,218,900 | |
| 14 | | | 6,713,500 | 6,146,800 | 5,375,600 | | | | 4,118,600 | 5,050,100 | 3,891,500 | 3,321,300 | |
| 15 | | | 6,870,600 | 6,303,800 | | | | | 4,239,700 | 5,164,100 | 4,001,000 | 3,423,700 | |
| 16 | | | | | | | | | 4,360,800 | | 4,110,500 | 3,526,100 | |
| 17 | | | | | | | | | 4,481,900 | | 4,220,000 | 3,628,500 | |
| 18 | | | | | | | | | 4,603,000 | | 4,329,500 | 3,730,900 | |
| 19 | | | | | | | | | 4,724,100 | | 4,439,000 | 3,833,300 | |
| 20 | | | | | | | | | 4,845,200 | | | 3,935,700 | |
| 21 | | | | | | | | | 4,966,300 | | | 4,038,100 | |
| 22 | | | | | | | | | 5,087,400 | | | 4,140,500 | |
| 23 | | | | | | | | | 5,208,500 | | | | |
| 24 | | | | | | | | | 5,329,600 | | | | |
| 25 | | | | | | | | | 5,450,700 | | | | |
| 26 | | | | | | | | | 5,571,800 | | | | |
| 27 | | | | | | | | | 5,692,900 | | | | |

비고

1. 대장: 9,618,800원, 중장: 9,447,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50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650,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500,0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750,000원, 2학년 900,000원, 3학년 1,200,000원
6. 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개정 2026. 1. 2.>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호봉 | 봉급액 |
|----|-----------|
| 16 | 9,586,300 |
| 15 | 9,042,400 |
| 14 | 8,501,100 |
| 13 | 8,015,800 |
| 12 | 7,606,000 |
| 11 | 7,408,400 |
| 10 | 7,176,100 |
| 9 | 6,787,700 |
| 8 | 6,325,100 |
| 7 | 5,926,200 |
| 6 | 5,551,500 |
| 5 | 5,190,400 |
| 4 | 4,826,500 |
| 3 | 4,475,100 |
| 2 | 4,124,400 |
| 1 | 3,660,300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 8 조 관련)

| 공무원별 | 초임호봉 | 비고 |
|---|--|---|
|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p>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p> <p>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p> <p>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이 표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 <p>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p> |
|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p>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p> <p>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p> <p>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p> | <p>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p> |

| | | |
|--|--|--|
| | <p>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p> <p>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p> <p>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p> <p>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p> <p>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p> <p>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p> <p>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 |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 <p>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p> <p>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확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확정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 <p>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확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확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확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p> |

| | | |
|---|--|--|
| |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p>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p> <p>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p> <p>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확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확정하되,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p>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확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확정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확정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p> |
| 4. 삭제 <2011.7.4> | | |
|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 |
| 6.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 | |

| | | |
|-----------------------------|---|--|
|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 |
| 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p>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 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제 9 조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p> <p>1.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p> <p>2.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2 호·제 4 호 및 제 5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p> | |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 실제경력 | | 간주경력 |
|---|--|--|
|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및 별표 4(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1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
| 2.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기능 1급 이하 기능 5급 이상 공무원의 기능 6급 이하 경력
기능 6급 공무원의 기능 7급 이하 경력
기능 7급 공무원의 기능 8급 이하 경력
기능 8급 공무원의 기능 9급 이하 경력
기능 9급 공무원의 기능 10급 경력 | 기능 6급 경력

기능 7급 경력
기능 8급 경력
기능 9급 경력
기능 9급 경력 |
| 3.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상 공무원의 경감 이하 경력
소방총감 이하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경력
경감·소방경의 경위·소방위 이하 경력
경위·소방위의 경사·소방장 이하 경력
경사·소방장의 경장·소방교 이하 경력 | 경감 경력
소방경 경력
경위·소방위 경력
경사·소방장 경력
경장·소방교 경력 |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1.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
| |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2. 유사 경력 |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과학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 3)의 경력: 100퍼센트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 |
|--|---|
| <p>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p> <p>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p> <p>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에 종사한 경력</p> <p>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p> <p>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p> <p>9)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p> | |
| <p>다. 그 밖의 경력</p> <p>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p> <p>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p> <p>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p> <p>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p> <p>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p> <p>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p> <p>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p> <p>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p> <p>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p> | <p>· 9)의 경력: 100퍼센트</p> <p>· 9) 외의 경력</p> <p>－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p> <p>－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p> |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 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가. 공무원 경력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나. 유사 경력 | 1) 전문·특수경력 | |
| |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
| |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
| |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100퍼센트 |

| | |
|---|---|
| 3) 그 밖의 경력 |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
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 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
| 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가.
공
무
원
경
력 |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 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70퍼센트 |
| |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 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 60퍼센트 |
| 나.
유
사
경 | 1) 전문·특수경력 | |
| |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
| |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 50퍼센트 |

| | | |
|---|--|---|
| 력 |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 |
| |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잠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100퍼센트 |
| | 3) 그 밖의 경력 | |
| |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 |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3. 비교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

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8] 삭제 <1990.1.15>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가. 공무원 경력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나. 유사 경력 | 1) 전문·특수경력 | |
| |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
| |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
| |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100퍼센트 |
| | 3) 그 밖의 경력 | |
| | | |

| | |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
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
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
센트 이내. 다만, 행
정·경영·연구·기
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
정한다. |
| 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
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
센트 이내 |
|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
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
트 이내 |
| 라)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
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
센트 이내 |
| 마)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
한다) | 100퍼센트 이내 |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가.
공
무
원
경
력 |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
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
무한 경력 | 70퍼센트 |
| |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
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
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 제외한다. | 60퍼센트 |

| | | |
|---------|--|---|
| 나. 유사경력 | 1) 전문·특수경력 | |
| |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
| |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
| | 다)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100퍼센트 |
| | 3) 그 밖의 경력 | |
| | 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 |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 |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 100퍼센트 이내 |

3. 비교

-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0] 삭제 <2000.1.8>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1] 삭제 <1990.1.1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1. 교원 경력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 |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 | 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은 제외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이내 |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 |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 80퍼센트 |

| | | |
|----------|---|--|
| |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
| 3. 유사 경력 | <p>가. 강사 등 경력</p> <p>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p> <p>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p> <p>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p>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 <p>나. 연구경력</p> <p>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p> <p>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p> <p>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p> | 100퍼센트 이내 |
| | <p>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p> <p>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p> |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 중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 라. 그 밖의 경력 | |
| | 1)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이내 |
| | 3)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70퍼센트 이내 |
| | 4)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 70퍼센트 이내 |
| |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 70퍼센트 이내 |

|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 |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60퍼센트 이내 |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50퍼센트 이내 |
| 8) 「제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제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제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50퍼센트 이내 |
|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10)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 40퍼센트 이내 |
| 11)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30퍼센트 이내 |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 산 정 공 식 |
|---------------------|
| (총수학연수-16) + 가산연수 = |

비고

-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가산연수
 -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 구 학력대비표

| 해당학력 | 구학력 |
|-------------|---|
| 사범대학 졸업 |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
| 대학 졸업 |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교등사범부(4년제) 졸업 |
| 2년제 교육대학 졸업 |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
| 2년제 사범대학 졸업 |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

| | |
|------------|---|
| 전문대학 졸업 |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
| 사범학교 졸업 |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
| 고등학교 졸업 |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
| 고등학교 1년 수료 |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 구 분 \ 학력별 |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 |
|------------------|-------|---------|
|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 - 10 | - 13 |
|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 - 7 | - 10 |
|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 - 4 | - 7 |
| 대학 조교, 전문대학 조교 | 0 | - 2 |

비고

1. 이 표 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중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중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학에는 중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자 격 별 | 기산호봉 | 비 고 |
|------------|------|--|
| 정교사(1급) | 9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
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
| 정교사(2급) | 8 | |
| 준교사 | 5 | |
| 전문상담교사(1급) | 9 | |
| 전문상담교사(2급) | 8 | |
| 사서교사(1급) | 9 | |
| 사서교사(2급) | 8 | |
| 실기교사 | 5 | |
| 보건교사(1급) | 9 | |
| 보건교사(2급) | 8 | |
| 영양교사(1급) | 9 | |
| 영양교사(2급) | 8 | |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6] <개정 2012.2.28>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

| 대학·전문대학 직명별 | 기산호봉 |
|-----------------|------|
| 교수 | 15 |
| 부교수, 장학관, 교육연구관 | 12 |
| 조교수 | 9 |
| 조교 | 2 |

군인 경력환산율표

| 구분 | 경력 | 호봉 회정 대상별 환산율 | | |
|---------------|--|---------------|--------|--------|
| | | 장 교 | 준사관 | 부사관 |
| 가. 군인경력 |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 80퍼센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 80퍼센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 80퍼센트 | 100퍼센트 | 100퍼센트 |
| | 5) 「군인보수법」 제9조제4호에 따른 해당 신분의 임용 전 군 교육기간. 다만, 환산된 경력연수는 해당 신분의 경력으로 본다. | 50퍼센트 | 50퍼센트 | 50퍼센트 |
| 나. 군인 외 공무원경력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80퍼센트 | 90퍼센트 | 100퍼센트 |
| |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 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 60퍼센트 | 70퍼센트 | 80퍼센트 |
| 다. 유사경력 |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 60퍼센트 | 70퍼센트 | 80퍼센트 |

승진·전보 시 호봉 확정표(제11조제2항 관련)

가.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승진 전 호봉 | 승진 후 호봉 | 승진 전 호봉 | 승진 후 호봉 | 승진 전 호봉 | 승진 후 호봉 |
|---------|---------|---------|---------|---------|---------|
| 1 | 1 | 12 | 11 | 23 | 22 |
| 2 | 1 | 13 | 12 | 24 | 23 |
| 3 | 2 | 14 | 13 | 25 | 24 |
| 4 | 3 | 15 | 14 | 26 | 25 |
| 5 | 4 | 16 | 15 | 27 | 26 |
| 6 | 5 | 17 | 16 | 28 | 27 |
| 7 | 6 | 18 | 17 | 29 | 28 |
| 8 | 7 | 19 | 18 | 30 | 29 |
| 9 | 8 | 20 | 19 | 31 | 30 |
| 10 | 9 | 21 | 20 | 32 | 31 |
| 11 | 10 | 22 | 21 | | |

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 봉급표)를 적용받고 전보하는 공무원

| 다군 호봉 | 나군 호봉 | 나군 호봉 | 가군 호봉 | 다군 호봉 | 나군 호봉 | 나군 호봉 | 가군 호봉 | 다군 호봉 | 나군 호봉 | 나군 호봉 | 가군 호봉 |
|-------|-------|-------|-------|-------|-------|-------|-------|-------|-------|-------|-------|
| 1 | 1 | 1 | 1 | 14 | 9 | 14 | 9 | 27 | 19 | 27 | 19 |
| 2 | 1 | 2 | 1 | 15 | 10 | 15 | 10 | 28 | 20 | 28 | 20 |
| 3 | 1 | 3 | 1 | 16 | 10 | 16 | 10 | 29 | 21 | 29 | 21 |
| 4 | 1 | 4 | 1 | 17 | 11 | 17 | 11 | 30 | 22 | 30 | 22 |
| 5 | 2 | 5 | 2 | 18 | 12 | 18 | 12 | 31 | 23 | 31 | 23 |
| 6 | 3 | 6 | 3 | 19 | 12 | 19 | 13 | 32 | 24 | 32 | 24 |
| 7 | 4 | 7 | 4 | 20 | 13 | 20 | 14 | 33 | 25 | 33 | 25 |
| 8 | 5 | 8 | 5 | 21 | 14 | 21 | 15 | 34 | 25 | 34 | 25 |
| 9 | 5 | 9 | 6 | 22 | 15 | 22 | 16 | 35 | 26 | 35 | 26 |
| 10 | 6 | 10 | 7 | 23 | 16 | 23 | 16 | 36 | 27 | 36 | 27 |
| 11 | 7 | 11 | 7 | 24 | 17 | 24 | 17 | 37 | 28 | 37 | 28 |
| 12 | 8 | 12 | 8 | 25 | 17 | 25 | 18 | 38 | 29 | 38 | 29 |
| 13 | 8 | 13 | 8 | 26 | 18 | 26 | 19 | | | | |

다.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연구사 호봉 | 연구관 호봉 | 연구사 호봉 | 연구관 호봉 | 연구사 호봉 | 연구관 호봉 |
|--------|--------|--------|--------|--------|--------|
| 1 | 1 | 13 | 9 | 25 | 15 |

| | | | | | |
|----|---|----|----|----|----|
| 2 | 1 | 14 | 9 | 26 | 15 |
| 3 | 2 | 15 | 10 | 27 | 16 |
| 4 | 3 | 16 | 10 | 28 | 16 |
| 5 | 4 | 17 | 11 | 29 | 17 |
| 6 | 5 | 18 | 11 | 30 | 17 |
| 7 | 6 | 19 | 12 | 31 | 18 |
| 8 | 6 | 20 | 12 | 32 | 18 |
| 9 | 7 | 21 | 13 | 33 | 19 |
| 10 | 7 | 22 | 13 | 34 | 19 |
| 11 | 8 | 23 | 14 | 35 | 20 |
| 12 | 8 | 24 | 14 | 36 | 20 |

라.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지도사 호봉 | 지도관 호봉 | 지도사 호봉 | 지도관 호봉 | 지도사 호봉 | 지도관 호봉 |
|--------|--------|--------|--------|--------|--------|
| 1 | 1 | 13 | 7 | 25 | 14 |
| 2 | 1 | 14 | 8 | 26 | 14 |
| 3 | 1 | 15 | 9 | 27 | 15 |
| 4 | 2 | 16 | 9 | 28 | 15 |
| 5 | 3 | 17 | 10 | 29 | 16 |
| 6 | 3 | 18 | 10 | 30 | 16 |
| 7 | 4 | 19 | 11 | 31 | 17 |
| 8 | 5 | 20 | 11 | 32 | 17 |
| 9 | 5 | 21 | 12 | 33 | 18 |
| 10 | 6 | 22 | 12 | 34 | 18 |
| 11 | 6 | 23 | 13 | 35 | 19 |
| 12 | 7 | 24 | 13 | 36 | 19 |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이 확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3.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확정할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또는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 나. 다군 8호봉·12호봉·15호봉·18호봉·24호봉·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12호봉·15호봉·22호봉·26호봉·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 다. 다군 9호봉·13호봉·16호봉·19호봉·25호봉·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13호봉·16호봉·23호봉·27호봉·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 나.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9] <개정 2017. 1. 6.>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호봉에서 7호봉으로 승급할 때 • 10호봉에서 11호봉으로 승급할 때 • 14호봉에서 15호봉으로 승급할 때 • 18호봉에서 19호봉으로 승급할 때 • 22호봉에서 23호봉으로 승급할 때 • 26호봉에서 27호봉으로 승급할 때 |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 보수 지급일 | 기관명 |
|--------|--|
| 10일 |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
| 17일 |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 |
| 20일 |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
| 25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개정 2026. 1. 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3,190,500 |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628,600 |
|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548,800 |
|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378,300 |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346,300 |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액

| 지급 시기 | 지 급 액 |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6,332,700원 및 6,219,9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연봉액(고정급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 구 분 | 산 입 방 식 |
|-------------------------------|---|
|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 전년도 봉급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
| 연 봉 제
적 용 대 상
공 무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 × 0.53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33의 제3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8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 성과급적 연봉제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비고: 별표 3의 비고 각 호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 <개정 2026. 7. 7.>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 구분 | 연봉액 | 구분 | 연봉액 |
|------------|---------|--|---------|
| 대통령 | 271,772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54,932 |
| 국무총리 | 210,690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52,696 |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59,401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50,467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개정 2026. 1. 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1급(상당) 공무원 | 133,504 | 88,993 |
| 2급(상당) 공무원 | 123,385 | 82,217 |
| 3급(상당) 공무원 | 114,705 | 77,054 |
| 4급(상당) 공무원 | 104,933 | 60,991 |
| 5급(상당) 공무원 | 86,520 | 42,099 |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68,426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7,125천원으로 한다.

2. 전문직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수석전문관 공무원 | 114,705 | 57,125 |
| 전문관 공무원 | 86,520 | 42,099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 101,104 | 42,099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연구관 공무원 | 124,015 | 42,099 |
| 지도관 공무원 | 114,661 | 42,099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치안정감·소방정감 공무원 | 133,504 | 88,993 |
| 치안감·소방감 공무원 | 123,385 | 82,217 |
| 경무관·소방준감 공무원 | 114,705 | 77,054 |
| 총경·소방정 공무원 | 104,933 | 63,274 |
| 경정·소방령 공무원 | 86,520 | 43,492 |

비고

1.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6. 국립대학의 교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국립대학의 교원 | | 31,416 |

비고: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의 장의 연보수(봉급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임기제공무원

가. 일반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 연봉
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1호 |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99,300 |
| 2호 |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90,277 |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82,072 |
|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70,490 |
| 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93,801 | 53,316 |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81,945 | 41,288 |
| 7호 |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68,922 | 33,075 |
| 8호 |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58,820 | 26,945 |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48,557 | |

비고

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 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단위: 천원)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 가 | | 69,663 |
| 나 | 86,606 | 57,708 |
| 다 | 70,782 | 50,272 |
| 라 | 62,096 | 44,296 |
| 마 | 54,678 | |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연봉등급
직무분야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
|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
받는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외무공무원 | 12등급 | 10등급
·
11등급 | 9등급 | 6등급
~
8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연구직
공무원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연구사 | | | |
| 지도직
공무원 |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지도사 | | | |
| 전문
경력관 | | | |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 전문
경력관
나군 | | 전문
경력관
다군 | |
| 경찰
공무원 | 치안
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소방
공무원 | 소방
정감 | 소방감 | 소 방
준 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 | | | 우정
1급·2급 | 우정
3급~6급 | 우정
7급 | 우정
8급 | 우정
9급 |

비고: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
| S등급 |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C등급 |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대상인원 및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9조제4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5] <개정 2026. 1. 2.>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
| 13등급 | 133,504 | 88,993 |
| 12등급 | 133,504 | 85,910 |
| 11등급 | 123,385 | 82,217 |
| 10등급 | 118,482 | 79,586 |
| 9등급 | 114,705 | 77,054 |
| 8등급 | 105,345 | 70,767 |
| 7등급 | 102,007 | 68,528 |
| 6등급 | 101,353 | 57,125 |
| 5등급 | 86,520 | 42,099 |

비고

1. 14등급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6] <신설 2001.11.13>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명) | 승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
|--------------------|----------------------------|
| 1 | 결원 1인당 7배수 |
| 2 | 결원 1인당 5배수 |
| 3 ~ 5 | 결원 1인당 4배수 |
| 6 ~ 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3배수+20인 |
| 11 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때 1인당 2배수+35인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7] <개정 2026. 1. 2.>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임용직무등급 | 6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
| 가산액 | 8,909 | 4,397 | 5,375 | 5,327 | 6,545 | 7,827 |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8] <개정 2026. 1. 2.>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

(단위: 천원)

| 기준급 상한액 | 기준급 하한액 |
|---------|---------|
| 121,592 | 78,266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9] <개정 2026. 1.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 구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
|---------|---|-----------------------|
| 자율책정 범위 | 109,572 ~ 78,266 | 133,050 ~ 78,266 |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8,266천원부터 156,529천원까지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0] <개정 2020. 1. 7.>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

1.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의
직무급 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 가 등 급 | 나 등 급 |
|------|--------|-------|
| 연간금액 | 13,000 | 7,000 |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
무급 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 가 등 급 | 나 등 급 |
|------|-------|-------|
| 연간금액 | 6,100 | 4,600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1] <신설 2021. 1. 5.>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

| 평가등급(지급등급) | 지급액 |
|------------|--------------------------|
| 매우우수 |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우수 |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통 |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미흡 및 매우미흡 |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비고: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026. 8. 1.] [220 , 2026. 7. 31.,]

| | | |
|---|---|---------------------|
| (| - |)044 - 201 - 8396 |
| (| 가 | -)044 - 201 - 8406 |
| (| - |)044 - 201 - 8401 |
| (| - |)044 - 201 - 8395 |
| (| - |)044 - 201 - 8392 |
| (| - |)044 - 201 - 8421 |



[2026. 7. 1.] [00271 , 2026. 7. 1.,]

() () 061 - 260 - 0732

.

< 3424 ,2010.12.30> ()

1 () 2011 3 1 .

2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6 ,2011.11.18> ()

1 () 2012 3 1 .

2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3619 ,2012.11.13>()

1 () 2013 3 1 .

2 ()

.

() (

)

.

()

.

() .

< 3767 ,2013.11.7.>()

1 () 2014 3 1 .

2 () 「

」

.

()

“

”

“

”

,

.

()

.

()

.

()

()

()

.

< 3857 ,2014.12.26.>()
 1 () 2015 3 1 .
 2 () 「
 」
 가 “ ” “ ” “ ”
 , “ ” “ ”
 . () .

< 3890 ,2015.2.26>
 2015 3 1

< 3984 , 2015.12.31.>()
 1 () 2016 3 1 .
 2 () 「
 」
 () .

< 4140 ,2016.12.22.>()
 1 () 2017 3 1 .
 2 ()
 .
 가 (), ()
 (), ()
) .

< 4354 ,2017.8.3.>()
 1 () 2017 9 1 .
 2 () 「
 」
 .

가 (,)

.

< 452 ,2011.02.22>

2011 3 1 .

< 4568 ,2017.12.28>

.

< 4702 ,2018.8.9>()

1 () 2018 9 1 .

2 () 「

」 .

가 () .

(,) (

) .

(,) (

) .

< 4747 ,2018.12.20>()

1 () 2019 3 1 .

2

3 () 「

」 .

가 (,) (

), ()

.

< 5003 , 2020.2.27.>

2020 3 1 .

< 5189 , 2020.12.10 > ()

1 () 2021 3 1 .

2

3 () 「

」

가 (),

(), ()

< 5301 , 2021.5.13 >

1 () .

2 () 1 가

2021 1 7 .

< 5386 , 2021.7.29 > ()

1 () 2021 9 1 .

2 () 「

」

82() .

< 5482 , 2021.12.23. > ()

1 () 2022 3 1 .

2 () 「

」

가 6 - 7() .

297() “ ”

87() “

”

54() “

”

65() .

5() .

5() .

< 5626 ,2022.12.22> ()

1 () 2023 3 1 .

2 () 「

」 .

“ 1579 - 74 ” “ 1602 -

1 ” .

< 5883 ,2023.12.21> ()

1 () 2024 3 1 .

2 () 「

」 .

54() .

280() .

< 6183 ,2024.12.26> ()

1 () 2025 3 1 .

2 () 「

」 .

297() .

21() .

204 - 6() .

1 27() .

37() .

1169() “

” .

377() .

< 6474 , 2025.12.26 > ()

1 () 2026 3 1 .

2 () 「

」 .

“ 4 48() ” “ 3

48() ” .

25 49 - 13() .

< 271 , 2026.7.1 > ()

1 () .

2 ()

.

[별표]

특수지군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

1. 도서

가. 가지역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여수시 | 삼산면 녹산등대길 8-17 | 거문초등학교 |
| | 삼산면 덕흥1길 30 | 거문중학교 |
| 신안군 | 흑산면 가거도길 18-31 | 가거도초등학교 |
| | 흑산면 가거도길 18-31 | 가거도초등학교신안흑산중학교가거도분교장 |
| | 흑산면 김이수길 29-2 | 흑산초등학교흑산동분교장 |

나. 나지역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여수시 | 남면 대두길 87 | 돌산초등학교두라분교장 |
| 고흥군 | 도양읍 시산석금길 30 | 녹동초등학교시산분교장 |
| 영광군 | 염산면 낙월길 70 | 염산초등학교낙월분교장 |
| 완도군 | 노화읍 서넙도길 68 | 넙도초등학교서리분교장 |
| | 청산면 대모도12번길 12-23 | 청산초등학교모도분교장 |
| 진도군 | 의신면 모도길 12-3 | 의신초등학교모도분교장 |
| | 조도면 서거차도1길 116 | 조도초등학교거차분교장 |
| | 조도면 가사도길 88-22 | 진도서초등학교가사도분교장 |
| 신안군 | 흑산면 진마을길 12-13 | 흑산초등학교 |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 흑산면 홍도1길 53 | 흑산초등학교홍도분교장 |
| | 흑산면 흑산일주로 124 | 신안흑산중학교 |

다. 다지역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여수시 | 남면 금오로 836
남면 우실해안길 5
남면 우실해안길 5
화정면 개도화산3길 8
화정면 개도화산길 50 | 여남초등학교
여남중학교
여남고등학교
여수개도중학교
화정초등학교 |
| 해남군 | 송지면 어불길 50-7 | 어란진초등학교어불분교장 |
| 완도군 | 금당면 금당로 220-23
금당면 금당로 230
노화읍 녀도길 294-31
노화읍 녀도길 294-31
소안면 소안로 213
소안면 비자34번길 17
생일면 생일로579번길 3
생일면 생일로613번길 41 | 금당초등학교
금당중학교
녀도초등학교
녀도초등학교노화중학교녀도분교장
소안초등학교
소안중학교
생영초등학교
금일중학교생일분교장 |
| 진도군 | 조도면 창유1길 36-14
조도면 명지길 66
조도면 명지길 64 | 조도초등학교
조도중학교
조도고등학교 |
| 신안군 | 도초면 서남문로 1698
도초면 서남문로 1493
비금면 유옥우길 21-4 | 도초초등학교
도초고등학교
비금초등학교 |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 비금면 용소길 181-6 | 비금동초등학교 |
| | 비금면 유옥우길 65 | 비금중학교 |
| | 신의면 신의로 710-57 | 신의초등학교 |
| | 신의면 상서길 94 | 신안신의중학교 |
| | 장산면 장산로 277 | 장산초등학교 |
| | 장산면 장산대리길 64 | 장산중학교 |
| | 하의면 안곰실길 33 | 하의초등학교 |
| | 하의면 곰실길 11-8 | 하의중학교 |
| | 하의면 곰실길 11-8 | 하의고등학교 |

라. 라지역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여수시 | 대경도3길 48 (경호동) | 경호초등학교 |
| 완도군 | 금일읍 금일로457번길 38 | 금일초등학교 |
| | 금일읍 금일로725번길 18-13 | 금일동초등학교 |
| | 금일읍 금일로 445-1 | 금일중학교 |
| | 금일읍 금일로 420 | 완도금일고등학교 |
| | 노화읍 노화서로 149 | 노화초등학교 |
| | 노화읍 노화서로614번길 102 | 노화북초등학교 |
| | 노화읍 노화서로 1-14 | 노화중학교 |
| | 노화읍 노화로 763-36 | 노화고등학교 |
| | 보길면 부항길 67 | 보길초등학교 |
| | 보길면 보길동로392번길 6-18 | 보길동초등학교 |
| | 보길면 보길로1-2 | 완도보길중학교 |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 청산면 청산로 1602-1 | 청산초등학교 |
| | 청산면 청산로 1602-1 | 청산중학교 |

2. 벽지

가. 라지역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여수시 | 묘도1길 77 (묘도동)
화정면 백야3길 8-21 | 상암초등학교묘도분교장
안일초등학교백야분교장 |
| 순천시 | 송광면 쌍향수길 1169
송광면 이읍원동길 10
외서면 반월로 6 | 외서초등학교송광분교장
순천승남중학교
외서초등학교 |
| 광양시 | 다압면 향동3길 10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633-13
옥룡면 신재로 1549-8 | 다압초등학교
광양다압중학교
전라남도교육청백운학생수련장 |
| 고흥군 | 도양읍 소록선창길 89-66
영남면 팔영로 1075 | 녹동초등학교소록도분교장
영남초등학교 |
| 보성군 | 노동면 거석길 218 | 노동초등학교 |
| 화순군 | 동면 충의로 789
동면 천덕길 104
동북면 김삿갓로 764
백아면 학천길 22-2
백아면 백아로 1198
이양면 이양로 42 | 동면초등학교
화순동면중학교
화순동북중학교
아산초등학교
화순북면중학교
이양초등학교 |

| 시 군 | 위 치 | 기 관 명 |
|-----|---|--|
| | 이서면 규봉로 979
이양면 이양로 100-35
이양면 이양로 100-35
청풍면 평지촌길 54
한천면 청계길 26
화순읍 칠충로 71
화순읍 칠충로 33
화순읍 진각로 31-9 | 화순초등학교이서분교장
화순이양중학교
화순이양고등학교
청풍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화순중학교
화순제일중학교
화순고등학교 |
| 무안군 | 일로읍 청포로 421 | 일로초등학교청망분교장 |
| 진도군 | 의신면 황모길 25-1 | 의신초등학교접도분교장 |
| 신안군 | 안좌면 김환기길 6
안좌면 중부로 743
안좌면 중부로 790-7
암태면 장단고길 56
암태면 장단고길 10
임자면 임자로 216-4
임자면 장동길 86
임자면 임자로 230-9
임자면 임자로 230-9
자은면 구영1길 44-36
자은면 구영2길 82
증도면 문준경길 218
증도면 증동길 53
팔금면 삼층석탑길 173 | 안좌초등학교
안좌중학교
안좌고등학교
암태초등학교
암태중학교
임자초등학교
임자남초등학교
임자중학교
임자고등학교
자은초등학교
자은중학교
증도초등학교
신안증도중학교
팔금초등학교 |

1.



[2026. 1. 2.] [36015 , 2026. 1. 2.,]

() 044 - 201 - 8399

1 < 2008. 12. 31.>

1 () 「 가 」 47 • 48 「 」 31
가 .
[2008. 12. 31.]

2 () 가 (“ ”) (“ ”) , , .
[2008. 12. 31.]

3 () (「 가 」 16 「 」 2
3 23
 .) , , 7 2 2 1 , 3 5
23
 , 7 2 2 2

. < 2009. 9. 8.,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2008. 12. 31.]

4 () (「 가
 , (「 가
 「 」 4 「 」 4 1
 「 가
 「 가
 「 15 1 (「
 , “ ”)
 . < 2016. 1. 8.>
 1 「 」 16 1 3
 .

[2008. 12. 31.]

2 < 1993. 12. 31.>

5 <1993. 12. 31.>

5 2 <1991. 12. 31.>

6 <2006. 1. 12.>

6 2() 「 」 35 4, 「 」 44
 , 「 」 43 , 「 」
 93 , 「 」 43
 4.1 .

< 2011. 1. 10., 2012. 1. 6., 2020. 6. 23., 2025. 7. 7.>

1 10 가

. . 4

[2008. 12. 31.]

6 3 <1992. 12. 31.>

7 () 1 7
 2 . , .

. . ,

, ,

. <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

2024. 8. 13.>

1. 1 1 1
 7 1 12 31 1

(가) .

2. 7 7 1
 1 1 6 30 1

(가) .

1 1 ()
)

,
 (,
 「 15 1 • 4 • 5 6
 「 12 1 5
) ,
 15 1 15 .

< 2010. 1. 7., 2017. 1. 6.>

| |
|--|
| $\text{지급금액} = \text{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frac{\text{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
|--|

1 2
 가 , (3
 18 5 2) • •
 4 가 .<

2009. 3. 31.>

1 3 1 , 「
 」 22 , 「 가
 」 2 「 」 2 (,
) (• 10
) , 「 14 1 1 • 2 「
 」 13 1 1 • 2 (「
 」 15 「 」 14
) .< 2013. 3. 23., 2014. 11. 19.>

[2008. 12. 31.]

7 2() 2 2 ,
 .
 2 3 「
 」 4 2 (“ ”
) . ,
 2 3 ,
 • • (“
 ”) .< 2013. 3. 23., 2014.

11. 19., 2021. 1. 5., 2024. 1. 5.>

1.

2.

3.

4.

5.

2 1
2 4 . ,

2 2 5

. , 3

2 ㄱ

ㄴ 4 2 1 2
1 2 7 ,
3 .

()

가 .<

[2024. 1. 5.>](#)

5

ㄱ ㄴ 4 7

(“ ”) 50 가 .<

[2016. 1. 8., 2023. 9. 19., 2026. 1. 2.>](#)

3

(.

) 50

.< [2023. 9. 19.>](#)

6 가 7 3 .

< [2016. 1. 8., 2023. 9. 19.>](#)

,

.<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2023. 9. 19.>](#)

2 5 9

. , 3

.< [2013. 3. 23., 2016. 1. 8., 2023. 9. 19.>](#)

ㄱ 가 ㄴ 47 3 1

(

)

, 1

.<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11

.< 2015. 1. 12., 2016. 1. 8., 2023. 1. 6., 2023. 9.

19.>

1

2

가

가

.< 2021. 1. 5., 2023. 9. 19.>

[2008. 12. 31.]

[2016. 1. 8.]

8 <2001. 1. 4.>

9 <2001. 1. 4.>

3 가

< 1988. 12. 31.>

10 (가)

가

5

가

,

가

4

.

,

가

가 4

가

,

7

1

가

.

1

가

가

(

가

1

3

)

.

가 (1

,

2

, 3

)

가

.< 2010. 7. 26., 2017. 1. 6., 2022. 1. 4.>

1.

2.

60

(

55

)

(

.

)

60

가

3.

19

(

.

) 19

가

4.

가

가

가

19

2 2 4 “ 가 ”

.< 2013. 3. 23., 2014. 11. 19., 2018. 9. 18., 2018. 12. 31., 2020. 6.

9., 2022. 1. 4.>

1. 「 」 2

2. 「 가 」 14 1

7

3. 「 」 53 1 6

4. 「 」 40 「 」 41

5 6 1 6

5. 「 」 31 1 6

6. 1 5

1 가 (「 」

.) 2 가

1 .< 2017. 1. 6.>

가 「 가 」, 「 」,

「 」 가

가

가 .< 2010. 1. 7., 2016. 1.

8., 2020. 1. 7.>

1. 가

2. 「 」 2

3. 「 」 2

4. 「 」 4

5. 「 」 49 76

6. 「 」 2 가가

가 가

「 」 36 1

.< 2010. 1. 7., 2010. 5. 4.>

가 (

가) 가 . 가

.< 2010. 1. 7.>

가 가

. , .< 2010. 1. 7.>

1. 가 , 가

.

2. , 가 ,
가

3. , , ,
가

, , , 4
가 .< 2009. 3. 31., 2010. 1. 7.>

1
, 1 가
.< 2010. 1. 7.>

가 .< 2010. 1.
7., 2013. 3. 23., 2014. 11. 19.>
[2008. 12. 31.]

11 () (“ ”
) 가 1 6
. , 가 가
가 .<
2021. 1. 5.>

1.
가. 「 」 2 2
. 「 . 」 2 . .
. 가

2. 「 」 31 「 . 」 2
1 가

(가
) .
15 .< 2021. 1. 5.>

. . .

.< 2021. 1. 5.>

2 3 . ,
가 ,

15 1 , 15 .< 2021. 1.

5.>

4

가

.< 2021. 1. 5.>

• • •

4

, 4

.<

2009. 3. 31., 2021. 1. 5.>

10 4 • 5 • 10 11

.<

2010. 1. 7., 2021. 1. 5.>

• 가

.<

2021. 1. 5.>

[2008. 12. 31.]

11 2()

6 2

• , 가

. < 2024. 1. 5.>

• • •

4

.< 2009. 3. 31.>

[2008. 12. 31.]

11 3() 「 가 」

71 2 4

30

6

, 7

80

•

, 70

70

. < 2025. 1. 3.>

1. 3 : 250

2. 4 6 : 200

3. 7 : 160

1

.< 2020. 8. 25., 2022. 1. 4., 2024.

1. 5., 2025. 1. 3.>

1. 가

:

가.

6

:

2

250

, 3

300

, 4

350

, 5

400

, 6

450

.

7 12 (7 18
) : 1

2. 「 가 」 :

가. 3 :

300
4 12 (7 18
) : 1

. <2022. 1. 4.>

<2025. 1. 3.>

<2025. 1. 3.>

가 9 12 3
6 「 」 57 3 2
(“
”) . ,

.< 2017. 1. 6., 2018. 1. 18., 2020. 1. 7., 2024. 6. 28., 2025. 1. 3., 2026. 1. 2.>

| | | | |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 $\frac{10}{\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1 . , 1 .<
2015. 1. 12., 2025. 1. 3.>

6

18

18

.< 2025. 1. 3.>

1. 가 3

2. 「 가 」

3. 가

「 가 」 47 3

1 2

5

.<

2015. 1. 12., 2017. 9. 5., 2025. 1. 3.>

.< 2015. 1. 12., 2025. 1. 3.>

[2011. 1. 10.]

4

12 () .

7

() . , .

. . . ,

. < 2009. 3. 31., 2016. 11. 29., 2024. 8.

13.>

1

1 10

가 .

1

, 7 2

, 「

」 3 1

5 1 . 3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4. 8. 13., 2025. 1. 3.>

5

가

[2008. 12. 31.]

5

< 2005. 2. 25.>

13 ()

8

9

가

10

10 2

, 10

. < 2025. 1. 3.>

[2008. 12. 31.]

14 ()

가

가

11

[2020. 1. 7.]

14 2() 「

」 57 4 3 , 「

30 3 2 , 「

」 49 2 , 「

」 30 4 2 , 「

」 53 2 3 , 「

」 38 2 3 「

」 58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0 가· 가

6

)

20

. < 2016. 12. 30., 2020. 3. 10.,

2020. 6. 23., 2020. 8. 25., 2024. 8. 13., 2025. 1. 3., 2026. 1. 2.>

| |
|--|
|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 2020. 6. 23.>

$$\text{월 지급금액} = 20\text{만원} \times \frac{\text{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 시간}}{40\text{시간}} \times \frac{1}{\text{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2016. 1. 8.]

14 3() 35

, . < 2018. 1. 18.>

[2008. 12. 31.]

6 < 1998. 12. 31.>

15 ()

. 「 」 33

1 4 7 1

. < 2013. 12. 11.>

(

「 」 30 2 3

가 3 5 .) 55 [「

」 33 5 7 , 「

」 3

55 , 「 」 33 8 • 9

(

8) 60 , 「 」 3, 3

2, 4, 8 10 8 8

60 , 「 」

13

60 , “ ”] 209 1 150 .

<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2025. 1. 3., 2026. 1. 2.>

2 12 .

1

1 4 , 1 57 . <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 가 12 1 2 (“ ”) (“ ”)

2. 「 3 1 「 2 1

3. 가 (“ ”) (月) . 1 (分) 1

.< [2012. 8. 22.>](#)

1. : 「 가 9 1 . , . .

2. 1 : (日) 1 .

가. : . 가 : 1 5 2 1

가 .<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 [2012.](#)

[8. 22.>](#)

「 가 47 3 1 5 가 , 1 1

. 2 .<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1 8

.<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2008. 12. 31.]

16 ()

. 15 1

. < 2013. 1. 9.>

1.

2. .

1 8 , 15 2
209 1 50 .< 2012. 1. 6.>

15 8 9 .< 2012. 8. 22.>

[2008. 12. 31.]

[2013. 1. 9.]

17 () 9 18
. 15 1

. < 2012. 8. 22.>

1 15 2 26 1 150

.< 2012. 1. 6.>

15 8 9 .< 2012. 8. 22.>

[2008. 12. 31.]

[2012. 8. 22.]

17 2() 13

. < 2013. 1. 9., 2026. 1. 2.>

1. , : 7.8

2. 「 」 12 1 가

: 9

3. 2 : 7.8

4. 13 1 • 2 3 :

9

1 • • (

) , •

가 (

) .< 2013.

1. 9., 2017. 1. 6., 2021. 1. 5.>

1 ,

.< 2013. 1. 9.>

[2008. 12. 31.]

6 2 < 2001. 1. 4.>

18 () 16

, 4 7 1 17 2 2
 . <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2026. 1. 2.>

[2008. 12. 31.]

18 2 <2011. 1. 10.>

18 3(가) (“ ”)

가 . , 7 1

가 60

15

[2008. 12. 31.]

18 4 <2011. 1. 10.>

18 5(가) 1 , (「 」 17 2

.) , 12

「 가 」 16 5 , 16 2, 16 3

17 가 . ,

. < 2012. 1. 6., 2015. 1. 12., 2016. 1. 8., 2020. 3. 10.,

2020. 12. 31., 2024. 1. 5.>

1. ()

2.

3. 「 가 」 29 3 70 1 5 7

4. 「 」 13 3 28 1 1 (「 가 」
 70 1 5) • 2

5. 「 」 10 4

6. 「 」 37 1 4

7. 「 가 」 69 1 「 」 27

8. 18

가 6 30 12 31 (

) , . ,

.< 2012. 1. 6., 2016. 1. 8.>

1 2 가 , 6 30

가 6 30 가 가 10 .<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 30 가 : 6 30 86 × 1/30 × 5

2. 12 31 가 : [12 31 86 × 1/30 × 가

] - 1 가

3 1 2 가

.< 2012. 1. 6., 2013. 1. 9., 2018. 1. 18.>

1. 6 30 : 86 × 1/30 ×

가 (10)

2. 7 1 12 31

가. 6 30 가 : 3 1

. 7 1 가 : [86 ×

1/30 × 가] - 2 가 가

1 4 가 가

가 .<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08. 12. 31.]

18 6() 15

. , . .

, 7 1 .<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2017. 1. 6., 2020. 1. 7.>

[2008. 12. 31.]

18 7() . 가 . 가

「 19 , 20

2 . 3 , 21 1 . 2 , 22 , 23 2 . 3 25 .

“ ” “ . 가 . 가 ” .<

2011. 1. 10.>

[2008. 12. 31.]

7 < 2008. 12. 31.>

19 ()

.

7 , 10

11 [14 3 , 11

3 4)(3) (

)] .< 2010. 1. 7., 2019. 1. 8., 2026. 1. 2.>

11 (,

14 3)

.

< 2010. 1. 7., 2010. 7. 26., 2010. 10. 18., 2013. 3. 23., 2013. 12. 11., 2014. 1. 8., 2014. 7. 16., 2017. 1. 6., 2017. 7. 26., 2019. 1. 8., 2020. 3. 10., 2020. 8. 25., 2021. 1. 5., 2021. 3. 30., 2024. 1. 5., 2025. 1. 3., 2025. 10. 1.>

1. 11 2 가 () 5) 9)

2. 11 [1 11)()

3 7)(

6)]

3 3)(

)

3. 11 3 7)(

6)

1

4. 11 3 가 (

) 1 ()

5. 11 3 10)(

.

1 ()

6. <2010. 1. 7.>

7. 11 3 4)(3

)

8. 11 3 1) 3) (,

)

9. 11 3 ()
3 11))()
10. 11 3 () 3 7)[15
(16 21)
]
11. 11 3 가 ()
3 8)()
12. 11 3 17)(「 가 」 26 2
)
13. 11 3 4)(「 」 43 3
)
1 ()
13 2. 11 3 4)
14. 11 3 16)(. . .
)
가. 11 1 ()
. 11 3 11)가)()
15. 11 3 [(對民)]
16. 11 [3 4)(「 」 43 3
)] 3 ()
17. 11 3 21)
18. 11 3 23)(「 」 3 5 2
. . .
)
가. 11 1 ()
. 11 3 ()
1 . . .
(
) .< 2011. 1. 10.>
. . ()
. . . .
18 18 6 ,
4 ,

. . . 3 1
 , (30)
 . . (11 1 ,
 2 가 1) · 3) 3
) · 가 . , .
 .
 , 11 2 가 (2)
) · () [(가)]
 8) 가)]
 가 (「
 」 2 .)
 11 3 () 2) · 3) , 15
 가 11
 3 7)[15 (16 21)
] .< 2009. 3. 31., 2010. 1. 7.,
 2010. 7. 26., 2014. 1. 8., 2017. 1. 6., 2018. 1. 18., 2021. 1. 5., 2025. 1. 3.>

가 · 가 · 가 · 가

. ,
 , 가 . . .
 . . ()
) .< 2011. 1. 10., 2017. 1. 6., 2020. 1. 7.>

, , , (11
 3), , , ,
 , , 가 .
 < 2016. 1. 8., 2016. 6. 24., 2017. 1. 6., 2018. 1. 18., 2020. 1. 7.>

1. 「 가 」 70 78
 (, 가) .

2. 「 가 」 73 3 「 」 31 2
 2 「 」 31 2 2 가
 “ ” ,
 가 “ ” .

.<

2013. 12. 11.>

21)) .< 2013. 12. 11., 2020. 8. 25.>

11 1 3 (

)

13 14

.< 2010. 1. 7.>

「 」 33

가 ,

.

(「 」 36 2 1

) .

가

.< 2011. 1. 10., 2022. 1. 4.>

, , 가

「 」 2

.< 2017. 1. 6., 2020.

1. 7.>

「

」 7 2 「

」 5 2

「

」 24

.< 2024. 1. 5.>

[2008. 12. 31.]

20 () 「 」 7
1

가

[2008. 12. 31.]

21 (. .)

「 가

」

74

4 ,

74

2

74

3

(1

)

「

」

22

1

(

)

.< 2011. 8. 29.>

(

1

)

「

」

22

1 ()
() .< 2011. 8. 29.>

[2008. 12. 31.]

[2011. 8. 29.]

22 ()

「 」 3 2 3 ,
 ,

「 」 3 3 • 57 3 1 , 「
」 7 4 1 , 「 」 19 5 1 , 「
」 30 2 2 , 「 」 48

2 「 」 30 3 1

. ,가

, . < 2011. 1. 10., 2011. 7. 4.,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5. 1. 12., 2020. 1. 7., 2020. 3. 10., 2020. 6. 23., 2024. 8. 13.>

1

.< 2013. 3. 23., 2014. 11. 19.>

[2008. 12. 31.]

[2013. 12. 11., 2013. 12. 16., 2020. 6. 23.]

22 2() 「 」 3 2 4

2 6 6 2

10 가 , 11 3 , 12

, 13 , 14 (11 3 17)

), 15 , 16 , 17

, 18 , 18 5 가 18 6

. ,가

. < 2013. 12. 11., 2021. 1. 5., 2022. 1. 4., 2024. 1. 5.>

<2022. 1. 4.>

1

.< 2013. 3. 23., 2014. 11. 19., 2022. 1. 4.>

[2010. 9. 10.]

[2013. 12. 11.]

23 () 「 」 74 1
7 2, 12 17
, 17 2, 18 , 18 5 「
22

. < 2011. 1. 10.,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 」 4 2 1
1 「 」 4 2 3

. < 2024. 1. 5.>

1

. < 2013. 3. 23., 2014. 11. 19., 2024. 1. 5., 2025. 12. 30.>

[2008. 12. 31.]

23 2() .
. < 2021. 1. 5., 2023. 9. 19., 2025. 1. 3.>

1. 7 2 1 4 , 9 , 15 5 1 , 7 , 24
2 4 “ ” “ . ”
2. 7 2 11 , 10 6 • 10 , 11 3 8 15 8 “
” “ • ”

3. <2024. 1. 5.>

[2020. 3. 10.]

24 () 10 11 가
가 「 」 19 1
4 가
[2016. 6. 24.]

< 10957 ,1982. 12. 20.>

1 ()

2 ()

.

.

.

20,000

.

6 (

)

4

5

1982 12 31

20,000

.

< 11033 ,1983. 2. 1.>

()

, 1983 1 1

, 11

2

1983 4 1

, 가

5 1. 가 (

)

1984 9 1

. < 1983. 10. 8.>

<1983. 7. 1.>

< 11165 ,1983. 7. 1.>

.

[4]

5

• 5

11033

2

1983 6 1

1984 10 1

. <

1983. 10. 8., 1984. 10. 4.>

< 11246 ,1983. 10. 8.>

, 1983 10 1

.

< 11345 ,1984. 1. 31.>

, 1984 1 1

.

< 11516 ,1984. 10. 4.>

, 1984 10 1

.

< 11609 ,1984. 12. 31.>

1985 1 1 .

< 11737 ,1985. 8. 12.>(가)

1 () .

2 ()

.

[11] 2 가 2) “ ”

“ 가 . ” , “ . ” “ . ”

3

< 11759 ,1985. 9. 9.>

() , 1985 7 1 . , 12 (

) 1986 1 1 .

() 3

3

.

< 11848 ,1986. 1. 25.>

() , 1986 1 1 .

() .

1986 1 1 1985 12 31

7 2 (8 3 11 3 2 .

) , ()

10 . , 7 2

. < 1986. 12. 30.>

() 2

(11850) 2

30 가 1985 12 31

2 (11850) 2

.

()

1

.

< 12499 ,1988. 8. 1.>

, 1 1988 3 1 , 11

1988 7 1 .

< 12585 ,1988. 12. 31.>

() 1989 1 1 . , 5 1989 10 1

, 11 3 가 4 1989 7 1 , 11 4

1989 11 1 .

() .

1989 6 30

.

< 12734 ,1989. 6. 17.>()

1 () . < >

2 4

5 () .

[7] 3 “ ” “ . ” .

[11] 1 가 1) “ . ” “ . ” , 5)

“ . ” “ ” “ ”

” , 4 1) “ . . ” “

” , 1) “ ” “ ” ,

“ ” “ ” , “ ” “ ” .

[12] 9 ,

5 . 6 . 7 . 11 . 12 “

7 . ” .

+ - - - - - + - - - - -

- - +

| 9 | 7 4.5 |

| | |

+ - - - - - + - - - - -

- - +

| 9 2 | 10 3 |
| | |

+ - - - - - + - - - - -
- - +

< 12903 ,1990. 1. 15.>

1 () , 1990 1 1 .
1 5 1 • 15 17 • 19 8 12
1990 10 1 , 11 1 1990 3 1 ,
11 4 1990 4 1 , 1990 7
1 () .
2 (3) .
5 (11 •
19 11 4) 1990 12 31
.
.

< 12910 ,1990. 1. 30.>()

() .

() .
6 2 1 “ ” “ ” .

< 13049 ,1990. 7. 11.>

() , 1990 7 1 .
(3) 12902
5 2 6
2 1990 12 31 12583
3 4 .

< 13188 ,1990. 12. 27.>()

1 () .

•

■

)

•

7

1

,

“

• •

•

)

■

)

■

2)

•

2

11

1

■

)

.

2 4

5 5 () <70>

<71>

12 3 “ ” “ ” .

<72> <148>

< 13363 ,1991. 4. 27.>

.

< 13560 ,1991. 12. 31.>

1992 1 1 . , 11 2 1 , 6 2 11 4

(25,000 30,000) 1992

10 1 , 5 1 1992 11 1 , 6 3

1992 12 1 . 1992 12

12

.

< 13623 ,1992. 3. 28.> ()

1 () .

2 3

4 ()

.

[11] 2 가 2) “ 가 .

. ” “ . 가 .

”

.

< 13818 ,1992. 12. 31.>

1993 1 1 . , 11 2 1993 7

1 , 11 4 (60,000 70,000

) 1993 10 1 .

< 13870 ,1993. 3. 6.>()

1 () .

2 3

4 ()

19 3 6 “ ” “ ” .

<188>

< 14096 ,1993. 12. 31.>

1 () 1994 1 1 .

2 () .

3 2 “ ” “ ” .

2 2 “ ” “ ” .

” .

4 1 1 4 “ ” “ 1 ” .

< 14204 ,1994. 4. 9.>()

1 () .

2 ()

[7] 3. “ ” “ ” .

< 14430 ,1994. 12. 19.>()

1 () 1995 1 1 .

2 5

6 () .

[11] 1 가

4) .

4) 1 . .

4

3

< 14438 ,1994. 12. 23.>()

1 () .

2 4

5 () <270>

<271> .

3 “ ” “ ” .

[11] 4 가 , 4 , 5 1)) 2, 5 1))

(3), 5 2)) (3) “ ” “ ” [13]

“ ” “ ” .

<272> <327>

< 14503 ,1994. 12. 31.>

1 () 1995 1 1 .

2 () . .

[11] 4

가 1

, 1 1 .

3 () .

3 2 “ ” “ (가) ” .

3 4 “ ” “ (가) ” .

2 “ ” “ (가) ” .

< 14548 ,1995. 3. 23.>()

1 () .

2 ()

11 “ ” “ ” .

< 14856 ,1995. 12. 29.>

1996 1 1 . , 9 1 , 11 2 ,
11 4 가 1996 7 1 , 11 2 1997 1
1 .

< 14920 ,1996. 2. 22.>()

1 () 1996 3 1 .
2 () 1(
2)
11 1 • 2 , 12 2 , 11 2 • • 13 “
” “ ” .
2! 3@

< 14997 ,1996. 5. 7.>

, 1996 5 1 .

< 15135 ,1996. 8. 8.>()

1 () .
2 6
7 ()
12 3 “ ” “ ” .
9 1 9) () “ ” “ ”
, 12 () “ ” “ ”
11 3 “ • • ” “ ”
, “ ” “ ” , 4
“ ” “ ” .

<116>

8

< 15246 ,1996. 12. 31.>

1997 1 1 .

< 15551 ,1997. 12. 27.> (가)

1 () 1998 1 1 .

2

3 ()

.

11 2 가 2) “ . 가 ” “ ” .

< 15690 ,1998. 2. 28.> (가)

1 () .

2 ()

.

6 1 2 “ ” “ ” .

7 1 , 10 1 , 11 1 , 15 1 3

“ ” “ ” .

15 2 , 19 9 3 “ ” “ ”

” .

< 15805 ,1998. 6. 1.>

() . , 11 2 1998

4 1 .

() 6 3 1998 12 31

. , 1

.

1.

2.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20 | 40 | 60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1 | 1 | 3 |
| | | 1 | |
| | 가 | 3 | |
| | | • | 1 |
| | • 1 | (가 | |
| | | • 1 | |
| | | | |
| | | • 2 | |
| | | 가 • | |
| | | 3 | |
| | | 3 | |
| ----- | | | |
| | | • 1 | 3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5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3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3 | • 4 | • |

≤ 15994 ,1998. 12. 31.>()
 1 () .
 2 ()
 .
 11 2 2) “ • ” “ ” .

[illegible]

< 16211 ,1999. 3. 31.> (가)

1 () .

2 3

4 ()

•

2 2 , 3 13 “ 가 ” “ 가 ” .

 2^*

< 16326 ,1999. 5. 24.>()

1 () .

2 3

4 ()

3 “ ” “ ” .
<109>

< 16626 ,1999. 12. 28.> ()

1 () 2000 1 1 .

2 3

4 ()

11 , “ ” “ ”

< 16690 ,2000. 1. 8.>

() , 2000 1 1 . , 12 3 ,
7 1 7 2 2001 1 1 .
()

1999 3 8

< 16785 ,2000. 4. 18.> ()

1 () .

2 () .

3 “ ” “ ” .

6 1 2 “ 7 1 • 4 • 5 ” “

7 1 • 4 • 5 • 6 ” .

7 1 “ ” “ ” .

7 2 5 “ ” “ 가 ” .

10 1 “ ” “ ” ,

9 “ ” “ 가 ” .

11 1 “ ” “ ” .
 15 1 “ ” “ 33
 1 4 • ” , 2
 “ 4 ” “ 33
 5 10
 50 4 , 54
 4 ” .
 19 9 “ ” “ ” .
 2 2 “ ” “ ” .
 7 2 1 3 1. “ ” “ 가
 ” .
 10 2 “ ” “ ” .
 11 3 3) 가) (2), 4 가
), 2) () 2), 5 1)
) (2) (3), 2) (3) “
 ” “ ” .
 13 “ ” “ ” .

< 17104 ,2001. 1. 4.>

1 () , 2001 1 1 .
 2 ()
 3 ()
 2001 12 31 6 3
 . ,
 .
 3 () 7 2 • 2 2 2 3
 2000 .
 4 () .
 8 2 .
 8 2 ()
 3 ,
 3 . , 1 가
 가 .

- 1.
- 2.
- 3.

가 71 1 1 ,

44 1 1

, 가 71 1

3 5 2 ,

44 1 2 11

2 • 3 7

,

.

.

2 3 “ • ” “ ” .

.

15 “ ” “ ” .

.

28 1 “ 7 2 ” “

7 2 ” .

.

3 2 “ ” “ ” .

.

17 1 “ ” “ ” .

.

11 2 1 “ 7 2 ”

“ 7 2 ” .

.

44 4 “ ” “ ” .

.

2 1 1 • 2 • 2 6 1 “ ” “

” .

.

13 2 “ ” “ ” .

.

3 2 “ ” “ ” .

.

10 2 13 3 “ ” “

” .

7 , 22 “ ” “ ” .

5 4 “ ” “ ” .

< 17108 ,2001. 1. 27.>()
() .

()
19 3 8 “ () ” “ () ” .

11 4 “ ” “ ”

” , 2) “ ” “ ” , 2) ()

1) 2) .
1) , 1

2) .

< 17114 ,2001. 1. 29.>()

1 () .

2

3 ()

12 3 “ ” “ ” .

11 2 가 2) 3 1) “

” “ ” .

15 (, • ,) “ , () ,

” “ , , () , ” .

4

< 17138 ,2001. 2. 27.>()

1 () 2001 2 28 .

2 4

5 ()

.

11 2 1) 5) 3) “ • ” “ ” .

< 17158 ,2001. 3. 27.>()

1 () 2001 3 27 .

2 () .

7 1 “ ” “ ” .

19 2 3 7 “ ” “ ” .

11 4 “ ” “ ” .

2%

3

< 17356 ,2001. 9. 12.>

.

< 17408 ,2001. 11. 13.>

2002 1 1 . , 11 3, 18 , 18 5 1 • 2
3 , 11 3 2001 11 1

.

< 17483 ,2002. 1. 4.>

, 2002 1 1 .

< 17671 ,2002. 7. 13.>

() .

■

■

• • • • • • • • •

■

■

■

< 18219 ,2004. 1. 10.>

, 2004 1 1 .

< 18375 ,2004. 4. 24.>

, 2004 4 1 . , 11 3 1

2004 2 25 .

< 18416 ,2004. 6. 11.>()

1 () 2004 6 12 .

2

3 ()

.

12 3 “ ” “

가 ” , “ ” “

가 ” .

11 4 2) 가 “ ” “ 가 ”

.

< 18672 ,2005. 1. 7.>

, 2005 1 1 .

< 18715 ,2005. 2. 25.>()

1 () .

2 7

8 (「 」)

.

6 2 2 “ ” “ ” .

5 “ ” “ ” .

5 14 2 .

14 2 () 「 」 57 3 1

가
5

3 . ,

22 “ (.

“ () ” “ () ” , 1

「 」 2 4

,

,

, 「 」 57 2 2

. ,

.

< 18815 ,2005. 4. 27.>

15 . , 7 4 , 2 2, 2 3, 14
2005 3 31 .

< 18843 ,2005. 5. 26.> ()

1 () .

2 ()

.

22 1 .
「 」 2 4

,

,

, 「 」 57 2 2 , 「

「 7 3 3 , 「 」 9 4 3 「

「 7 3 3

. , .

< 18966 ,2005. 7. 27.>()

1 () .

2 ()

.

19 7 “ ” “ ” .

11 2 가 2) “ ” “

” .

3

< 18972 ,2005. 7. 27.>(3)

1 () .

2 () .

11 2 가 6)

“ ” “ 3 ” .

< 19113 ,2005. 11. 4.>()

1 () .

2 ()

「 」 .

14 2 “ 「 」 57 3 1 ” “ 「 」 57

3 1 「 」 30 3 1 ” .

22 1 “ 「 」 9 4 3 「 」

7 3 3 ” “ 「 」 9 4 3 , 「 」 7

3 3 「 」 30 2 2 ” .

< 19121 ,2005. 11. 9.>

. , 14 3 11 2005 11 1

.

< 19269 ,2006. 1. 12.>

, 2006 1 1 .

< 19522 ,2006. 6. 12.>

1 () 2006 7 1 .

2 ()

가 11

4 1)

.

「

」

가

11 4 1)

.

3 ()

3

(

3

) 2007 6 30

.

2007

2006

.

4 ()

2006 12 31

(

2007

1 1

)

15

.

12

14

가

7

11

5 ()

.

.

.

.

1

.

< 19586 ,2006. 6. 30.> ()

1 () .

2

3 ()

11 4 1) “ • ” “ 119 • 119 ”

.

4

< 19832 ,2007. 1. 9.>

, 2007 1 1 .

< 19857 ,2007. 2. 1.> ()

() .

() .

14 2 “ 「 」 57 3 1 「 」 30
3 1 ” “ 「 」 57 3 1 , 「 」 30 3 1
「 」 53 2 1 ” .

< 20079 ,2007. 6. 4.> ()

1 () .

2 ()

9 8 “ ” “ ” .

< 20153 ,2007. 7. 2.>

1 () , 2007 7 1 . , 14

2 22 2008 1 1 .

2 ()

3 (

3

) 2008 6 30

. 2008

2007

3 ()

2007 12 31 (

2008 1 1) 15

12

14

가

7

11

가

1

2

< 20168 ,2007. 7. 18.>()

1 ()

2 4

5 ()

4 1 “ 「

」

”

“ 「

」 15 1

”

< 20380 ,2007. 11. 13.>

1 ()

, 2007 11 12

2 (

)

9

(

9

)

2008 12 31

2008

2007

3 ()

2008 6 30 (

2008 7 1) 15

12

14

가

7

11

가

1

2

< 20402 ,2007. 11. 30.> ()

1 () .

2

3 () .

11 4 “ ” “ ” .

4

< 20538 ,2008. 1. 9.>

, 2008 1 1 .

< 20741 ,2008. 2. 29.> ()

1 () . < >

2 5

6 ()

3 “ ” “ ” “ ” .

7 4 , 10 3 6 9 , 11 3 3 , 15 5 , 17 3 ,
18 5 3 , 22 2 “ 가 ” “ ”

7 2 2 5 “ ” “ ” ,

6 “ 가 ” “ ” .

12 3 “ ” “ ” 가 ”

“ ” .

19 3 6 “ ” “ ” .

23 1 “ 가 ” “ ” , 2

“ ” “ ” ”

.

2 4 1 “ 가 ” “ ” .

5 2 “ ” “ ” .

7 2 3 1 “ 가 ” “ ” .

9 1 “ ” “ ” ”

“ ” “ ” .

10 2 “ ” “ ”

” .

11 1 가 (가)) “ ” “ ”

” , “ ” “ ” “ ” “ ”

” .

11 2 가 1) “ ” “ ” ” ,

2) “ . . . ”

” “ . . . ”

4) “ ” “ ” ” ,

5) “ ” “ 가 ” .

11 3 2) “ ” “ ” ” ,

3) “ ” “ ” .

11 3 1) “ . . . ”

“ . 가 . ” ,

1) 가) (가) “ ” “ ”

” , 3) 가) (2) “ ”

” “ ” .

11 4 “ ” “ ” “ ”

” .

11 4 1) “ ,

, ,

, ” “

, 가 ,

, ” .

11 4 , “ ”

“ ” .

11 4 2) (가) “ 가 ” “
 ” .
 11 4 “ ” “ ” .
 11 5 가 (가)) (2)
 (), () “ ” “
 ” .
 13 “ ” “
 ” .
 15 “ , ” “ ” , 4
 “ 가 ” “ ” .
 <105>

< 20875 ,2008. 6. 25.> ()
 1 () 2008 7 1 .
 2 13
 14 ()
 .
 10 3 3 .
 3. 「 」 53 1 6
 15
 < 20897 ,2008. 7. 3.> ()
 1 () .
 2 ()
 .
 11 2 2) “ ” “ ”
 .

< 21057 ,2008. 9. 30.>
 1 () , 5 2008 7 1
 , 11 5 가 2008 1 1 .

2 ()
 12 3 . 가 .
 3 () 7 2
 3 7 2 3
 2009 6 30 .

< 21078 ,2008. 10. 8.> ()
 1 () .
 2 3
 4 ()
 9 8 () “ . ”
 “ ” .

< 21243 ,2008. 12. 31.>
 1 () 2009 1 1 . , 15 5 , 16 3
 17 3 2009 3 1 .
 2 ()
 2009 12 31 (2010 1 1
) 15
 .

2009
 12 31 50 .
 1 2
 19522 4 1 , 20153
 3 1 20380
 3 1 2008 12 31
 . , 가 1 2
 .
 , , 가
 1
 3 .

3 ()

14

11 5

2009 12 31

· ,

가

,

가

2009 12 31

.

1)

가)

(, :)

| 가 | | | | | |

| | |

· | | | | | | | |

|

-----+-----+-----+-----+-----+-----+-----+-----
 --+--+--+--+--+--+--+--+--

13 , 가 (| 3,156 | 3,350 | 3,546 | 3,703 | 3,897
 | 4,091 | 4,247 | 4,404 | 4,560 | 4,754

가), | | | | | | | |

|

-----+-----+-----+-----+-----+-----+-----+-----
 --+--+--+--+--+--+--+--+--

1 , 가 (), | 2,758 | 2,927 | 3,098 | 3,235 | 3,405
 | 3,574 | 3,711 | 3,848 | 3,984 | 4,154

12 , | | | | | | | |

|

-----+-----+-----+-----+-----+-----+-----+-----
 --+--+--+--+--+--+--+--+--

2 , (| 2,519 | 2,673 | 2,830 | 2,955 | 3,109 | 3,264
 | 3,389 | 3,514 | 3,639 | 3,794

·), 10 · 11 , | | | | | | | |

| |

-----+-----+-----+-----+-----+-----+-----+-----
 --+-----+-----+-----+-----+-----
 3 , (), | 2,295 | 2,436 | 2,579 | 2,693 | 2,834
 | 2,975 | 3,089 | 3,203 | 3,316 | 3,457
 9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가 ,
 | , | | , , | ()
 • | (가)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6,271 | 580,269 | 531,670 | 2,825 | 3,393
 | 3,856 | 3,932 | 4,008 | 4,163
 가 (가), | | | | |
 | |

-----+-----+-----+-----+-----+-----+-----+-----
 +-----+-----+-----+-----+-----+-----+-----+-----
 --

1 , 가 (| 5,479 | 506,395 | 464,540 | 2,469
 | 2,962 | 3,365 | 3,432 | 3,498 | 3,632

-----+-----+-----+-----+-----+-----

-----+-----+-----+-----+-----+-----

13 , | 32,103 | 38,711 | 39,622 | 7,190 | 5,196
| 5,534 | 7,527 | 148,641 | 27,021 | 28,217

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가 | (| | 27,998 | | 33,784 | | 34,562 | | 6,275 | | 4,536 |
| | 4,832 | | 6,572 | | 129,721 | | 23,607 | | 24,651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25,540 | | 30,789 | | 31,535 | | 5,719 | | 4,137 |
| | 4,407 | | 5,993 | | 118,223 | | 21,565 | | 22,5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23,277 | | 28,067 | | 28,735 | | 5,213 | | 3,772 |
| | 4,019 | | 5,465 | | 107,770 | | 19,652 | | 20,521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가) (, :)

| | | | | | | | | | |
|-------------------------------------|---------|---------|--------|-----|-----|-----|-----|-----|-----|
| () | 2% | 4% | 6% | 8% | 10% | 12% | | | |
| 14% | 16% | 18% | 20% | | | | | | |
| · | | 4% | 6% | 8% | 10% | 12% | 14% | | |
| 16% | 18% | 20%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58 | 117 | 175 | 233 | 291 | 350 | 408 |
| 466 | 524 | 583 | | | | | | | |
| 가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가 | (| 51 | | 101 | | 152 | | 203 | | 253 | | 304 | | 355 |
| | 405 | | 456 | | 507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46 | | 92 | | 138 | | 184 | | 230 | | 276 | | 323 |
| | 369 | | 415 | | 461 | | | | | | | | | | | |
| | • |) | , 10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42 | | 84 | | 126 | | 168 | | 210 | | 251 | | 293 |
| | 335 | | 377 | | 419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2 , 10 • 11 •
 2010 1 1
 13 , •
 가 1
 1 2
 19522
 4 2 , 20153
 3 2 20380
 3 2 2008 12 31
 가
 • , 1
 2
 11 5 가 (가) 가)
 2010 12 31
 < 21385 ,2009. 3. 31.>
 2009 4 1 , 7 1 12 1
 2008 12 26 , 11 2009 1 1 .

가

()

가

— — — — |

가

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 , | | 29,428 | | 30,135 | | 5,466 | |
| | 4,213 | | 5,7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6 | | 25,590 | | 26,195 | | 4,753 | |
| | 3,666 | | 4,986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5 , , | | 23,330 | | 23,913 | | 4,333 | |
| | 3,347 | | 4,552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4 | | 21,289 | | 21,827 | | 3,954 | |
| | 3,056 | | 4,156 | | | | | | | | |

가

가

— — L

가

가

3

| | | | | | | | |
|--|--|--|--|-------------|---------|-------|---|
| | | | | ○ () (%) = | -가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1 | 가 , “ ” | | |
| | | | | | 1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5 6
“ ” “ • 가 ” .
14 $4 \cdot 5$ (), • ($4 \cdot 5$), 5 8
, ($4 \cdot 5$), (가 •) (, •
,) .

| | | | | | |
|-------------|----------|-----|---------------|-------|---|
| $4 \cdot 5$ | (), | · | ($4 \cdot 5$ |) , 5 | 8 |
| | , | | ($4 \cdot 5$ |) , | |
| (가 | · |) , | 가 | | |

15 5 (), • , 5 , (5),
() (, • ,)

5 (), • , 5 , |
 (5), (), 가 |

< 21717 ,2009. 9. 8.>()

1 () . < >

2 3

4 ()

3 “ 1 ” 2 4 ” “ 1 ” 2 3 ”

< 21920 ,2009. 12. 30.> (

)

1 () 2010 4 2 .

2 () .
 11 4 “ . ” “
 ” , 가) “ .
 : 40,000 ” .

< 21980 ,2010. 1. 7.>
 , 2010 1 1 .

< 22151 ,2010. 5. 4.> ()
 1 () 2010 5 5 .
 2 3
 4 () 1^
 1&
 10 6 “ 「 」 21 1 ” “ 「 」 36 1 ”
 .
 1* <192>

< 22290 ,2010. 7. 21.> ()
 1 () 2010 7 26 .
 2 ()
 18 , 18 4 1 18 6 “ ” “
 ” .

< 22301 ,2010. 7. 26.>
 1 () . , 19 3 • 5 11
 2010 7 1 .
 2 () .
 35 3 8 가 “ , ” “ [「
 」 11 3 3)(
)], [1

3

< 22374 ,2010. 9. 10.>()
 1 () .
 2 () .
 22 2 .
 22 2() 「 」 2 5
 2 6 6 2
 10 가 , 11 , 15
 , 18 18 6
 ,
 .
 1
 226 1 150 , 226
 1 100 150 .
 1 2

< 22454 ,2010. 10. 18.>()

1 ()

2 ()

19 3 9 “ ” “ ” .

11 3 4) 5) “ ” “

” , 4) “ ” “

” , 11)) “ ” “

” .

< 22618 ,2011. 1. 10.>

1 () , 2011 1 1 .

2 () 11 3

. , .

3 <2018. 1. 18.>

< 22962 ,2011. 6. 7.>()

1 () 2011 6 15 .

2 ()

11 3 6) 가) “ ,

” “ ” .

1(

3

< 23015 ,2011. 7. 4.>()

1 () 2011 8 24 .

2 ()

22 1 “ 「 」 9 5 1 , 「 」 7

4 1 ” “ 「 」 9 5 1 ” .

2 2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 비고 |
|------------------|------------------|---------------|--|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인
(중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 40,000원 |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 하사 15,000원 |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2

기능직공무원

2 3 4

2 4 2 “ ” “ ”

12 「 」 3, 4, 8, 9, 9 2,

1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15

< 23099 ,2011. 8. 29.>

1 () , 17 2 1 , 18 5 2

15 2011 1 1

2 () 21 2

< 23116 ,2011. 9. 6.>()

•

1 () 2011 12 28
2 4
5 ()

•

11 2 4) “ () ” “
”
13 “ () ”
“ ”

< 23499 ,2012. 1. 6.>

, 2012 1 1

•

< 23644 ,2012. 2. 29.>()

1 () , . . . < > . . . 2
3 2012 7 22
2
3 ()

•

11 2 가 5) “ • ” “ ”
11 2 가 6) “ ” “
” , “ ” “ ”
11 2 가 9) 9) “ • ”
“ ”
11 3 가 1) 가) “ 6 • ”
“ 6 ”

<69>

4

< 24048 ,2012. 8. 22.>

2012 9 1 .

< 24300 ,2013. 1. 9.>

1 () .

2 () 2013 1 1 .

3 () 11 3 6 11

3 1

.

< 24425 ,2013. 3. 23.>()

1 () . , 6

.

2 5

6 () 1^

1& .

3 . , 7 4 , 7 2 2 5 , 6 , 10 3

6 , 11 , 11 3 7 , 15 4 3 , 6 . 9 , 18

5 5 , 22 2 , 22 2 3 , 23 1 2 “

” “ ” .

7 2 7 “ ” “ ” .

12 3 “ ” “ ” , “ ” “

” , “ ” “ ” , “ ” ”

“ ” .

19 3 2 3 “ ” “

” .

2 4 1 “ ” “ ” .

5 2 2 “ ” “ ” .

6 2 2 “ ” “

” , 3 “ ” “ ”

.

66

"

"

"

2

,

“

"

6

"

6

“

"

;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 |
|------------|------------|--|---|
| 1.기술
분야 | 기술정
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과 같은 영 별표 2의 토건·
전신·기계·화공·선박·농
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
의 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
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
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
의 경찰공무원 및 합정의 정
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
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
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
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
·공업·합정·항공·기상
·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
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
·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
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
나) 안전행정부 국립과학수사연구
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
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 |

| | |
|--|--|
|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
무원 | 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
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
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
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하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직
가산하여 지급한다. |
|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
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
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
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
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
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
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
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
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
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
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 | 월 30,000원 이하 |

 <img
id="13447491"> <img
id="13447492"> <img
id="13447493"> <img
id="13447494"> <img
id="13447535"> <img
id="13447536"> <img
id="13447537"> <img
id="13447538"> <img
id="13447539"> <img
id="13447540"> <img
id="13447523"> <img
id="13447541"> <img
id="13447526"> <img

id="13447512"> <img
id="13447513"> <img
id="13447514"> <img
id="13447515"> <img
id="13447516"> <img
id="13447517"> <img
id="13447518"> <img
id="13447519"> <img
id="13447520"> <img
id="13447521"> <img
id="13447522"> <img
id="13447524"> <img
id="13447525"> <img
id="13447542">

13

“

”

“

”

.

15

“

”

“

,

”

,

“

,

”

“

”

,

5

8

“

”

“

”

.

1*

<129>

< 24918 ,2013. 12. 11.>

1 (

)

2013

12

12

.

2 (

.

)

24916

2

3

.

.

.

3 (

)

14

18

6

11530

가

24854

11

15

11

15

.

4 (

)

2013

가

2 2

2 4

.

< 25000 ,2013. 12. 16.> ()

1 (

)

.

<

>

2

7

8 (

)

.

22

“

”

“

”

,

1

“

”

“

”

,

“

”

“

”

,

“

”

“

”

.

< 25072 ,2014. 1. 8.>

1 ()

2 () 2014 1 1

3 ()

「 」 (25000

) 57 3 1

(“

”)

14 2

22 1

, 가

< 25469 ,2014. 7. 16.>

1 () , 11 2

2015 1 1

2 () 19 3 8 • 13 • 14 , 11 3

12 2

2014 7 1

< 25751 ,2014. 11. 19.> ()

1 () , 5

2 4

5 () <116>

<117>

3 • , 7 4 , 7 2 2 5 , 6 , 10 3

6 , 11 , 11 3 7 , 15 4 3 , 6 • 9 , 18

5 5 , 22 2 , 22 2 3 , 23 1

2 “

”

“

”

12 3

1

7 2

•
•
(“ • ”) ,

2 4 1 “ ” “ ”
5 2 2 “ ” “ ”
6 3 “ ” “ ”
7 2 “ ” “ ”
7 2 3 1 “ ” “ ”
9 1 , 6 “ ”
9 6 “ ” “ ” “ ”

10 2 “ ” “ ”
11 1)(2) 3 1)
“ ” “ ”
11 2 가 4) “ ” “ ”

11 3 가 3) 가)(2), 4)
가)(2), 1), 2)),
17) 가) •) 4 가
(가))(2)() () “ ”

11 3 가 1) “ • • ” “ ”
11 3 가 2), 2) 가)(3)
,)(2) • (3) 4) “ ”

11 3 2)가)) “ ”
11 3 6)) “ ”

6) (가) (2) “ ”

” “ ” .
 11 3 11) “ , ” “
 ” .
 13 “ ” “ ” .
 15 4 7 “ ” “ ”

.
 <118> <418>

< 26048 ,2015. 1. 12.>

1 () .
 2 () 2015 1 1 .
 3 () 7 2 8
 7 2 1
 .
 4 () 2015 12 31
 2 3 2
 25467 3 2
 .

< 26596 ,2015. 10. 20.> (.)

1 () .
 2
 3 () .
 11 2 3)) “ ” “
 ” .

4

< 26659 ,2015. 11. 20.> ()

1 () 2016 1 25 . < >
 2
 3 ()

7 1 “ ” “ ” .

2*

4

< 26878 ,2016. 1. 8.>

1 () .

2 () 2016 1 1 .

3 () 9 6

“ ” 2016 1 24 “ ” .

< 27220 ,2016. 6. 14.>()

1 () . < >

2 5

6 () .

18 “ , ” “ ” .

18 6 “ • • ” “ •

” .

< 27258 ,2016. 6. 24.>

1 () 2016 6 25 . , 15 2 13

2016 7 1 .

2 () 10 2 2016 1 1

3 (•

) ,

19 7 .

< 27617 ,2016. 11. 29.>(

)

1 () 2016 11 30 .

2 4

5 ()

7 12 “ • ” “ ” .
1&

< 27620 ,2016. 11. 29.>()

1 () 2016 11 30 .

2 3

4 () .

18 18 6 “ ” “ ” .
2^

< 27703 ,2016. 12. 30.>()

1 () .

2 ()

14 2 1 “ ㄱ ” “ ㄱ ” .

< 27770 ,2017. 1. 6.>

1 () . , 15 2 , 18 6, 19 3

16 • 13 , 11 3 13

2017 3 1 , 10 2 3 4 2018 1 1

2 () (10 2 3 4) 2017

1 1 .

3 () 15 8

4 () 27769

31 2 2

2017 .

< 27787 ,2017. 1. 10.>()

1 () 1 .

2

3 ()

.

11 3 2) “ ” “ ” ,

2) () “ ” “ ” .

< 28171 ,2017. 6. 27.>

1 () 2017 7 1 .

2 () 11 3 2 1 2017

7 1

.

< 28211 ,2017. 7. 26.>()

1 () . , 8

.

2 7

8 () <354>

<355>

.

12 3 “ ” “ ”

” .

19 3 2 3 “ ” “ ” .

9 1 , 6 “

” “ ” .

11 1 3) “ ㄱ ”

” “ ㄱ

」 ” ,

)(2) “ ” “ ” “ ” “ ”

” .

11 3 가 1) “ . . . ”

“ . . . ” .

11 3 가 2), 2) 가)(3)
 ,)(2) • (3) 4) “ ”
 “ ”
 11 3 1) “ • ” “ • •
 ”
 11 3 1) “ ” “ ,
 ” “ 2)가)) “
 ” “ ”
 11 3 6)가) 7) “ ” “
 ”
 11 3 6)) 6) (가
)(2) “ ” “ ”
 11 3 11)가)) “
 ” “ ” 13) “
 ” “ ”
 15 “ ” “ ,
 .
 <356> <388>

< 28284 ,2017. 9. 5.>
 1 ()
 2 () 2017 9 1
 3 () 2017 9 1
 11 3
 2017 9 1
 15 2

< 28595 ,2018. 1. 18.>
 1 ()
 2 () 2018 1 1
 2 2, 2 3, 7, 11, 12 15
 2017 12 21
 3 ()
 28594 7 8

4 ()
14420

2018

2 2

2 3

5 (,)
12 , 14 18 6

14420

7, 11 15

, 7,
11 15

< 28870 ,2018. 5. 8.> ()

1 () 2018 5 10

2 ()

9 1 “ ” “ . .
”

< 29030 ,2018. 7. 3.>

1 ()

2 () 11 3 2 2018 7 1

3 () 2018 6 30

11 3 2

< 29180 ,2018. 9. 18.> ()

1 () 2018 9 21

2 17

18 ()

10 3 4 “ 「 」 45 ” “ 「

」 40 ”

4#

19

< 29182 ,2018. 9. 18.>()

1 () 2018 9 21 .

2 15

16 () .

10 3 4 “ ㄱ 55 ” “ ㄱ

ㄴ 41 5 6 ” .

< 29450 ,2018. 12. 31.>()

1 () 2019 7 1 .

2 ()

10 3 1 “ 1 6 ” “ ” .

3

< 29479 ,2019. 1. 8.>

1 () .

2 () 2019 1 1 .

3 () 2018 12 31

11 3 .

< 30348 ,2020. 1. 7.>

1 () .

2 () 2020 1 1 . ,

11 4 가 2020 7 1 .

3 () 2019 12 31

11 3 5 .

< 30515 ,2020. 3. 10.>(가
28)
2020 4 1 . < >

< 30760 ,2020. 6. 9.>()
1 () 2020 6 11 .
2 11
12 ()

10 3 5 .
5. 「 」 31 1 6
3^
13

< 30800 ,2020. 6. 23.>()
1 () . < >
2 8
9 ()

6 2 1 “ 「 」 43 ” “ 「
」 43 , 「 」 93 ” .
14 2 1 “ 「 」 30 3 1 ”
“ 「 」 30 3 1 , 「
」 49 1 ” .
22 1 “ 「 」 30 2 2 ” “ 「
」 30 2 2 , 「 」 48 2 ”
.
11 1 3) “ 「 」
1 2 ” “ 「 」 3 1 ” .

10

< 30803 ,2020. 6. 23.>()

1 () . < >

2 ()

.

14 2 2 “ ”

“ ”

.

22 “ ” “ ” , 1 “

”

“

”

.

< 30971 ,2020. 8. 25.>

1 () .

2 ()

11 3 2 .

< 31351 ,2020. 12. 31.>()

1 () 2021 1 1 .

2

3 ()

.

18 5 1 4 “ ㄱ ” 10 3 22 1 1 ” “ ㄱ

” 13 3 28 1 1 ” , 7 “ ㄱ

” 21 “ ㄱ ” 27 ” .

< 31376 ,2021. 1. 5.>

1 () .

2 () 2021 1 1 .

< 31380 ,2021. 1. 5.>() 473

. < >

< 31559 ,2021. 3. 30.>()

1 () .

2 ()

11 2 가 5) , 9) 1)

“ ” “ ” .

< 31589 ,2021. 3. 30.>

4 1 .

< 32167 ,2021. 11. 30.>

2021 12 9 .

< 32223 ,2021. 12. 16.>()

1 () 2022 1 13 . < >

2 4

5 ()

11 3 1) “ 「 」 7 2 ”

“ 「 」 10 2 ” .

<66>

6

< 32321 ,2022. 1. 4.>

1 () .

2 () 2022 1 1 .

3 () 11 3 (3

) 2022 1 1

.

4 () 11 3 3

5 ()
「 5 2022
15 17 2022 12 31
「 5
2022

< 32485 ,2022. 2. 22.>()
1 ()
2 ()
9 6 “ ” “ ”

< 32627 ,2022. 5. 9.>(가)
1 () 2022 7 21
2
3 ()
11 2 가 2) “ ” “ • 가 ”

< 33215 ,2023. 1. 6.>
1 ()
2 () 2023 1 1
3 ()
「 5 2023
15 17 2023 12 31
「 5
2023
4 () 「 가
「 47 3 ()
() 15 8

3

.

.

< 33692 ,2023. 8. 30.>()

1 ()

.

2 3

4 ()

.

11 1 “ ” “ ” .

5

< 33733 ,2023. 9. 19.>

1 ()

.

2 () 7 2 7 2024

,

.

< 34101 ,2024. 1. 5.>

1 ()

.

2 () 2024 1 1

.

3 () 2024 1 1

11 3 2

.

11 3 2

11 3 2 1

2024 1 1

2024 1 1

3

3

.

11 3 2 1

2024 1 1

2024 1 1

3 2024 1 1

11 3 2

.

4 () 11 3 4 2

「 가 」 70 1 3

< 34505 ,2024. 5. 14.>(가)

1 () 2024 5 17 .

2

3 ()

9 1 가 , 6 “ ” “ ” .

9 6 “ ” “ ” .
11 3 가 1) “ ” “ 가 ” .
2(

< 34618 ,2024. 6. 28.>

1 () 2024 7 1 .

2 () 2024 6 30
11 3 5 .

< 34823 ,2024. 8. 13.>()

1 () 2024 8 14 .

2 ()

7 1 “ ” “ ” .

12 1 “ ” “ ” .

< 34825 ,2024. 8. 13.>()

1 () 2024 8 14 .

2

3 ()

12 3 “ 「 」 ” “ 「 」 ” .
14 2 1 “ 「 」 ” “ 「 」 ” .
「 」 ” .

22 1 “ 「 」 ” “ 「 」 ” .

< 35182 ,2025. 1. 3.>

1 () . , 12 3 2025 5

1 .

2 () 2025 1 1 .

3 () 11 3 1 • 2 7 2025

1 1 .

4 () 11 3 5 7

2025 1 1 .

5 () 11 3 7

2025 1 1

2025 1 1

11 3 2 1 , 2

7 2025 1 1

18 ,

18 2025 1 1

.

6 () 2025 1 1

2025 1 1 11

3 3 4 .

< 35638 ,2025. 7. 7.>()

1 () 2025 7 8 .

2 () .

6 2 1 “ 「 」 35 3 ” “ 「 」 35

4 ” .

< 35696 ,2025. 8. 5.>()

1 () 2025 8 7 .

2 ()

9 6 “ ” “ 가 . . .

” .

2#

< 35811 ,2025. 10. 1.> (306
)

. ,

.

< 35838 ,2025. 11. 4.> ()

1 () .

2

3 ()

11 2 가 5) , 9) 1)

“ ” “ ” .

< 35948 ,2025. 12. 30.> ()

1 () 2026 1 2 . , 4

.

2 3

4 () <152>

<153>

3 , 23 3 , 10 1 , 10 2 , 11 3 가 3)가
) (2), 4)가) (2), 4)), 13)), 4 가

, 13 15 7 “ ” “
” .

<154> <176>

< 36015 ,2026. 1. 2.>

1 () .

2 () 2026 1 1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88.12.3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

2. 정근수당 가산금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 비고 |
|------------------|--------------|-----------|--|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하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 40,000원 | |
| 5년 미만 | | 3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연구사·지도사 |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 군인 |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
| 군무원 | 6급 이하 |
| 국가정보원 직원 | 1급 이하 및 전문관 |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 우정직군 | 전체 |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 | | | | | | | | | | | | |
|-------------------------------------|------------------------------|-------------|---------------------------|------------|---|------------|---|------------|-------------------------------|------------|-----|-----|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 | 가군 | | | 나군 | | | 다군 | | | | | |
| | 26호봉 | | | 20호봉 | | | 13호봉 | | | | |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 연구관·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 | | | | 연구사·지도사 | | | | | | |
| | 15호봉 | | | | | 16호봉 | | | | | |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
|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 차안장감·
소방장감 | 차안감·
소방감 | 경무관·
소방준감 | 총경·
소방정 | 경정·
소방령 | 경감·
소방경 | 경위·
소방위 | 경사·
소방장 | 경장·
소방교 | 순경·
소방사 | | |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
|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 1급 상당
직위에 보
직된 장학
관 | | 2급 상당
직위에 보
직된 장학관 | |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
의 직위에
보직된 장
학관 및 교
육연구원 | |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
위에 보직된 장
학관 및 교육연
구관 |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원 | | |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 | 35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 | 30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 | | |
| | 26호봉 | | 26호봉 | | 26호봉 | | 26호봉 | | 26호봉 | | | |
|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 13호봉 | 12호봉 | 12호봉 | 12호봉 | 9호봉 | 5호봉 | 중위
2호봉 | 20호봉 | 12호봉 | 12호봉 | 5호봉 | 2호봉 |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말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 지 급 등 급 | | 지 급 액 |
|---------|--------------------------------------|--|
| 등급 | 지급인원 | |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C등급 | 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하지 않음 |

비고: 소속 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3. 9. 19.>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연구사·지도사 |
| 전문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 우정직군 공무원 | 전체 |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1. 1. 5.>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 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 | |
|-------------------|--|-----------|---|---|---|---|---|
| |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
의
7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
의
6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
의
4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
의
3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
의
20퍼센트)
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
할
금
액 | 수당액의
100퍼센트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액의
60퍼센트 | 수당액의
70퍼센트 |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비고 |
|---------------------------|------------------------|---------------------------|--|
|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 배우자 | 40,000원 | |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 | 자녀 | 첫째자녀 | |
| | | 둘째자녀 | |
| | | 셋째 이후 자녀 | |
| 2. 재외공무원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자녀 1명당 | 60달러 |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 국외학교 | 지급액 |
|--|---|
| 1. 유치원(제11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 2. 초등학교·중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 3. 고등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비고

1. 위 표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 또는 전쟁·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

롤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나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팜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한다.

2. 재외공무원이 위 표가 적용되는 재외공관으로 전임(轉任)할 때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오던 자녀(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인 자녀로 한정한다)가 학업의 연속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며, 해당 자녀가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거나 취학하게 되는 그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위 표를 적용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3. 1. 6.>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 적용 범위 | 월 지급액 | 비 고 |
|----------|--|---|
| 1. 군 인 | 160,000원 | |
| 2. 재외공무원 |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 (제12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적용대상 | | 급지별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 북한 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 | 비고
1.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시·도소방공무원 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 | | |
| 2. 재외공무원 | 1·2·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준장·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 2,500달러 | 1,500달러 | 800달러 | | |
| | 4·5·6·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 2,300달러 | 1,400달러 | 720달러 | | |
| | |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 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3. 군인·군무원·의무경찰 |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상사·중사·하사, 3급부터 9급까지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다군 | 갑지역·을지역: 6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6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 | | | |
| |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 의무경찰 | 갑지역: 25,000원
을지역: 20,000원
(가산금: 서해 5개도서 40,000원,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 | | | |
| |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고,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불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 | | | |
|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 |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 | | | | |

| | |
|--|---|
| | <p>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급금
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p>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 등급 구분 요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
|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 가지역:
39점 이상

· 나지역:
31점 이상 38
점 이하

· 다지역:
23점 이상 30
점 이하

· 라지역:
15점 이상 22
점 이하 |
|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
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하
행 운행 횟수의 합) | 17회 이상
20회 미만 | 13회 이상
16회 이하 | 9회 이상
12회 이하 | 5회 이상
8회 이하 | 4회 이하 | |
|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 1.5% 이상
2%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0.5% 미만 | | |
|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
|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
|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
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
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
의 거리 | 1km 이상
2km 미만 | 2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6km 미만 | 6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 |
|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
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 |
|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
|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 1명 | | |
|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
교가 있는지의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 |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 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 등급 구분 요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
|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 가지역 :
31점 이상

• 나지역 :
23점 이상 30
점 이하

• 다지역 :
15점 이상 22
점 이하

• 라지역 :
14점 이하 |
|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
|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출항 횟수의 합) |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 1일 1회 | 1일
1회 미만 | |
|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보건소가
있는 경우 |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 약국만
있는 경우 |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 |
|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 | |
|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 광역상수도
사용 | 간이상수도
사용 | 우물 사용 | 상시 급수
지원 | | |
|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 |
|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 |
|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
|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 5명 이상 | 3명 이상 | 2명 | 1명 | | |

| | | | | | | |
|----------------------|-------------------------|----------------|-----------------------|--------------|--|--|
| | 10명 이하 | 4명 이하 | | | | |
|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말한다),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과 접촉하는 지역

| 가 지 역 | 비무장지대 |
|-------|--|
| 나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 다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 라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과 접촉하는 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적과 접촉하는 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개정 2016.1.8.>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본문 관련)

| 등 급 | | 월 지 급 액 |
|-----|---|---------|
| 갑 | 종 | 60,000원 |
| 을 | 종 | 50,000원 |
| 병 | 종 | 40,000원 |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등급
부문 | 갑종 | 을종 | 병종 |
|-------------------------|---|--|--|
| 1. 해상
부문 | 가.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합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 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마.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검색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가.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다.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제선(「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방제선으로 한정한다)에 승무하여 해양오염 방제작업, 예방 및 단속활동, 선박점검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
문 | |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 가. 결핵·한센병·감염병·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사체 검사)을 담당하는 사람 |
| 3. 공업
연구 부
문 | |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
| 4. 농수
산업연
구부문 | |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

| | | | |
|----------|---|---|---|
| | | <p>· 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 <p>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씨가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
| 5. 소방 부문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6. 각 부문 | <p>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p> <p>나.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의무경찰대·기동대·방법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일반직 공무원</p> <p>다. 이론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 <p>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p> <p>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라.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마.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바.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사.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落盤: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절벽·바위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아.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p> | <p>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p> <p>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p> <p>다. 구급차의 운전원</p> <p>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바.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 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사. 해양경찰청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아.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경찰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p> <p>자.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차.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림토목, 벌목·집재, 조림·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가공, 보호, 양묘 등의 산림사업 업무에 종사하는</p> |

- 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가유산 비파괴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유독성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국가유산 연구 및 보존 처리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항공기 성능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항공기에 동승 근무하는 항공기 검사공무원
- 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에서 원전 관련 시설 및 방사능 방재분야 안전규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 파,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 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복구·조사하는 사람 또는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실험, 연구 및 훈련을 하거나 취급 시설을 점검하여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따르는 사람
- 거,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정비, 작업차량 운전, 교량·터널 등 국도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너,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정 발부에 따른 집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 사람
- 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생체 시료, 발암 물질,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 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 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타,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 협의,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공무원
- 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측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위험기상·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관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구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 | | |
|--|--|--|
| | <p>출입국관리공무원</p> <p>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p> <p>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p> <p>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통관우체국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국제우편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어,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검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 |
|--|--|--|

비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위 표 제1호 갑종란의 나목
2. 위 표 제5호 갑종란
3. 위 표 제6호 갑종란의 가목·나목 또는 라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3조 단서 관련)

| 등 급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액 |
|-----|--|--|
| 갑 종 | 가. 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을 종 | 가.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해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훈련한 사람
나.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다. 반기에 6회 이상 제압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용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병 종 | 가.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사.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아.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비고: 1.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해군(UDT, 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특수잠수, 심해잠수) 중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단서 관련)

| 등 별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
| 갑 종 | 가. 각 공장에서 항공기·합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무기체계의 운용·정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50,000원 이하 |
| 을 종 | 가. 각 공장에서 항공기·합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병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 군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바. 현장감식 및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해상시설물 설치, 철거, 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 | 40,000원 이하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 1. 기술 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 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 운전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중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에 |
| | |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
| | |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과·정보통신경과·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합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 | |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 | |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합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
| | | 6) 「연구직 및 지도직공 | |

| | |
|--|--|
|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p>계는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소방장 이하에 계는 월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
|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
|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 | | | |
|---------------|------------|---|--|
| | |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p>가) 지급액</p> <p>(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p> <p>(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p> <p>(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p> <p>(비고)</p> <p>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p> <p>나) 지급방법</p> <p>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 업무수당 | 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p>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25,000원 이하</p> <p>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15,000원 이하</p> <p>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10,000원 이하</p> |
| |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 <p>가) 지급액</p> <p>(1)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p> <p>(2)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p> <p>나) 지급방법</p> <p>(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p> <p>(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p> <p>(비고)</p> <p>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
| | | 3) 연구직공무원 | <p>가) 지급액</p> |

| | |
|--|---|
| | <p>월 80,000원 이하</p> <p>나) 가산금</p> <p>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
|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p>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p> <p>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p> <p>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p> |
|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국립법무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 <p>가) 지급액</p> <p>(1) 5급(5급 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p> <p>(2) 6급(6급 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p> <p>나) 지급방법</p> <p>(1)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비고)</p> <p>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

| |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 | | | | | | | | | | |
|---|---|-----------|------|----|----------|------------|----------|----|----------|------------------------|---------|--|
| 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 6)의 해당자
(가)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나)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 | | | | | | | | | | | |
|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 (2) 7)의 해당자 : 월 20,000원
(3) 8)의 해당자 | | | | | | | | | | | |
| 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 (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가) 지급액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월지급액</th> </tr> <tr> <td>원장</td> <td>110,000원</td> </tr> <tr> <td>교수·부교수·조교수</td> <td>110,000원</td> </tr> <tr> <td>부장</td> <td>100,000원</td> </tr> <tr> <td>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td> <td>80,000원</td> </tr> </table>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

(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구분 | 월지급액 | 원장 | 110,000원 | 교수·부교수·조교수 | 110,000원 | 부장 | 100,000원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 80,000원 | |
| 구분 | 월지급액 | | | | | | | | | | | |
| 원장 | 110,000원 | | | | | | | | | | | |
| 교수·부교수·조교수 | 110,000원 | | | | | | | | | | | |
| 부장 | 100,000원 | | | | | | | | | | | |
|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 80,000원 | | | | | | | | | | | |
| 나. 교원 | 1) 국공립의 대학 및 전 | 월 20,000원 | | | | | | | | | | |

| | | |
|------------|--|---|
| 등에 대한 보전수당 | 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 월 60,000원 |
| | 3)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 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
| 다. 교직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 월 250,000원 |

| | |
|---|---|
|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
|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p>월 50,000원</p> <p>(비교)</p> <p>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p>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p>월 150,000원</p> |
| <p>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p> <p>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p> <p>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제가 미감아(未感兒)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p> | <p>(지급액)</p> <p>(1) 가)의 해당자: 월 120,000원</p> <p>(2)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p> <p>(3)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p> <p>(4)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p> <p>(비교)</p> <p>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

또는 초등학교의 미
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
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중학교 및 고등학
교 부설 방송통신중
학교 겸직 교원
바)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등하
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월 200,000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
원 중 학급담당교원

5) 농업·수산·해운 또 (지급액)

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
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의 교장·교감과 다음
의 표시과목에 해당하
는 교원자격증을 가지
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
하는 실과담당교원

| 호봉별 | 월 지급액 |
|---------|---------|
| 31 ~ 40 | 50,000원 |
| 22 ~ 30 | 45,000원 |
| 14 ~ 21 | 40,000원 |
| 9 ~ 13 | 35,000원 |
| 5 ~ 8 | 30,000원 |
| 1 ~ 4 | 25,000원 |

가) 「교원자격검정
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
교의 정교사 및 준
교사, 초등학교 정
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
물자원, 농공, 농산

(비교)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
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
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
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
감 및 전기, 전자, 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
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위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p>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 공예, 정보·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 인쇄,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의상</p> <p>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p> | |
| <p>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전교사</p> | <p>월 40,000원</p> |
| <p>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p> <p>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 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p> <p>다) 「초·중등교육</p> | <p>(1) 겸임교장: 월 100,000원</p> <p>(2) 겸임교감: 월 50,000원</p> |

| | | | |
|--------------------|---------------------------------|--|--|
| | |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
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
등학교 중 둘 이상
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 |
| | |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
양교사 | 가) 지급액: 월 4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
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
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
관이 정한다. |
| | |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교에서 근무하는 사서
교사 | 월 30,000원 |
| | | 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
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 월 30,000원 |
| 3. 특수
업 무
분야 | 가. 선택
및 합
정 등
근무수
당 | 1) 교육부·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관세청·국
가유산청·기상청·해양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택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3) 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5) 가산금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
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
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 |

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 등을 이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합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지급액

(1) 경찰공무원

| 계급 | 월 지급액 | |
|-------|----------|----------|
| | 경비합정근무자 | 특수합정근무자 |
| 경정 이상 | 172,000원 | 123,000원 |
| 경감 | 141,000원 | 101,000원 |
| 경위 | 133,000원 | 95,100원 |
| 경사 | 122,000원 | 87,800원 |
| 경장 | 112,000원 | 80,500원 |
| 순경 | 92,000원 | 65,800원 |
| 의무경찰 | 20,000원 | 20,000원 |

(2)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

| 계급 | 월 지급액 |
|----------|---------|
| 소방령 이상 | 65,000원 |
| 소방경 | 50,000원 |
| 소방위 | 37,000원 |
| 소방장 | 34,000원 |
| 소방교 | 30,000원 |
| 소방사 | 21,000원 |
| 전문경력관 가군 | 65,000원 |
| 전문경력관 나군 | 34,000원 |

(3)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 계급 | 월 지급액 |
|-------|------------|
| 5급 이상 | 39,000원 이하 |
| 6급 | 32,000원 이하 |
| 7급 | 25,000원 이하 |
| 8급 | 20,000원 이하 |

| | | <p>나) 가산금</p> <p>(1)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시·도소방공무원인 함정장에게는 월 10,000원으로 한다)을 가산 지급한다.</p> <p>(2)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p> <p>(3)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7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p> | | | | | | |
|----------------|---------------------------------------|--|-----|-----|---------|----------------|----------|----------|
| |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p>가) 지급액</p> <p>(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p> <p>(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p> <p>(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급액의 80% 이하</p> <p>(2) 병</p> <p>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p> <p>나) 지급방법</p> <p>(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p> <p>(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 | | | | | |
| | 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 <p>가) 지급액</p> <p>(1) 하사 이상: 월봉급액의 55% 이하</p> <p>(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p> <p>나) 지급방법</p> <p>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 | | | | | |
| 나. 항공수당 |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소방공무원과 경찰청·소방청·해 |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조종사</th><th>정비사·전탐사</th></tr> <tr> <td>경찰, 소방청, 5급 이상</td><td>631,700원</td><td>313,400원</td></tr> </table> | 구 분 | 조종사 | 정비사·전탐사 | 경찰, 소방청, 5급 이상 | 631,700원 | 313,400원 |
| 구 분 | 조종사 | 정비사·전탐사 | | | | | | |
| 경찰, 소방청, 5급 이상 | 631,700원 | 313,400원 | | | | | | |

양경찰청·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 | | |
|-----------------------|----------|----------|
| 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 | 505,300원 | 279,100원 |
| 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 | 404,200원 | 217,800원 |
| 경사, 소방장,
7급 | 323,400원 | 196,000원 |
| 경장, 소방교,
8급 | 258,600원 | 184,200원 |
| 순경, 소방사,
9급 | 205,900원 | 174,200원 |
| 전문경력관 가군 | 631,700원 | 313,400원 |
| 전문경력관 나군 | 410,900원 | 230,900원 |
| 전문경력관 다군 | 232,200원 | 179,200원 |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
전술장교 및 해상초
계기 조작사로서 분기
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
서 분기에 1회 이상 비
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
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
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
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산림청 산림항
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항공대 소속 공
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
서 분기 1회 이상 비행
하는 공무원

가)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및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월 50,000원

나)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월 40,000원

다) 8·9급 및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 | | |
|---|--|--|
| | 5) 삭제 <2024. 1. 5.> | |
| 다. 외무
공 무
원 ·
군 인
등 의
장 려
수 당 | <p>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 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p> <p>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및 준사관·부사관</p> <p>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p> <p>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p> <p>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중사 군무원</p> <p>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p> <p>7)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p> <p>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p> <p>9)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중인 사람, 잠수함</p> | <p>가) 지급액</p> <p>(1)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p> <p>(2)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p> <p>(3) 3)의 해당자: 월 180,000원 이하</p> <p>(4)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p> <p>(5)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p> <p>(6)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p> <p>(7) 7)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p> <p>(8) 8)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p> <p>(9) 9)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p> <p>(10) 10)의 해당자: 월 800,000원 이하</p> <p>나) 지급방법</p> <p>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서 승무유지훈련을 한
사람

10) 비행부대 외의 부대
·기관에 근무하는 항
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
하는 장교

라. 개방
형 직
위 등
보 전
및 전
문직위
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4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
위에 임용되어 근무하
는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5에 따라 공모직
위(소속 장관을 달리하
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
정한다)에 임용되어 근
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
32조의2에 따라 인사교
류 직위(인사혁신처장
이 정하는 직위로 한정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
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 계급·직무등급 | 월 지급액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
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
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 300,000원 |
|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
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 200,000원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
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장 | 100,000원 |
|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
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 50,000원 |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
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
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
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 계급·직무등급 | 월 지급
상한액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
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
지의 외무공무원 | 600,000원 |
|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 400,000원 |

| | <div> <div>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300,000원 </div> <div>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150,000원 </div> </div> <div> (비고) <div> 1.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 또는 별표 15의 비교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div> </div> | | | | | | | | | | | | | | | | | | | | |
|---|---|----------|----------|--|--------------------------|-------|-------|----------|---------|-------------|----------|---------|-------------|----------|----------|-------------|----------|----------|-------|----------|----------|
| 4) 「공무원임용령」 제 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div> <div>가) 지급상한액</div> <table> <tr> <th rowspan="2">근무기간</th> <th colspan="2">월 지급 상한액</th> </tr> <tr> <th>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th> <th>5급 이하</th> </tr> <tr> <td>1년 미만</td> <td>10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20,000원</td> <td>90,000원</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80,000원</td> <td>150,000원</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300,000원</td> <td>250,000원</td> </tr> <tr> <td>4년 이상</td> <td>450,000원</td> <td>400,000원</td> </tr> </table> <div>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div> <div> (비고) <div>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div> </div> </div> | 근무기간 | 월 지급 상한액 |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급 이하 | 1년 미만 | 100,000원 | 7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20,000원 | 9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80,000원 | 1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0원 | 250,000원 | 4년 이상 | 450,000원 | 400,000원 |
| 근무기간 | 월 지급 상한액 | | | | | | | | | | | | | | | | | | | | |
|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100,000원 | 70,000원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0,000원 | 90,000원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80,000원 | 150,000원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0원 | 250,000원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450,000원 | 4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마. 의료업 무 등 의수당 | <div> <div>가) 지급액</div> <div>(월 지급액, 단위: 원)</div> </div> <div> 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div>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공무원 및 약무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

| 의무직렬 공무원 | | | 약무직렬 | 간호직렬 |
|-----------------------------|------------|--------------------|---------|---------|
| 지역별 | 자격 | 금액 | 공무원 | 공무원 |
| 가(군지역) | 전문의
일반의 | 950,000
850,000 | 140,000 | 100,000 |
| 나(다·라 외의
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850,000
750,000 | | |
| 다(라 외의 도
청 소재지인 시
지역) | 전문의
일반의 | 750,000
650,000 | | |
| 라(특별시·광
역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700,000
600,000 | | |

나) 가산금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국립법무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3)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약무직렬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

월 250,000원

축 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월 100,000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

| | 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 | | | | | |
|------------------|--|---|------|------|-------------|-------------------|------------------|--------------|
| | 5)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간호조무군무원을 포함한다) |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 | | | |
| 바. 특수직무수당 |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 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나) 6급(6급 상당 포함) 및 7급(7급 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다) 8급(8급 상당 포함) 이하: 월 20,000원 이하

(1) 가)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3)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4) 라) 해당자: 112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h>출동시간</th><th>출동사건</th></tr><tr><td>06시부터 22시까지</td><td>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td></tr><tr><td>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td><td>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td></tr></table>
(비고) 출동사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마)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 출동시간 | 출동사건 | 06시부터 22시까지 | 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 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 |
| 출동시간 | 출동사건 | | | | | | | |
| 06시부터 22시까지 | 긴급성이 높은 범죄사건 등 처리 | | | | | | | |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 주요범죄 사건 등 처리 | | | | | | | |

| | |
|--|--|
| <p>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p> <p>마) 경찰청 소속 경비부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p> | |
| <p>3)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p> <p>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p> <p>나) 소속 장관이 가)의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 10퍼센트 이내에서 선정한 공무원. 다만,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p> | <p>(1)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p> <p>(2) 나)의 해당자: 월 30,000원 이하</p> <p>(3) 가산금
소속 장관은 가)의 해당자 중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4)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액·지급기준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
| <p>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p> | <p>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p> <p>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p> <p>다) 5급: 월 100,000원 이하</p> <p>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p> |
| <p>5)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p> <p>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p> | <p>(1)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p> <p>(2) 가산금
(가)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p> |

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 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외국인 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 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전산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
|--|---|
|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
| 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월 30,000원 이하 |
| 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경찰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 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 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라)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 | (1)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

| 무원 | |
|---|--|
| 10)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원 중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 (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 11)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화재조사 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근무자 중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시·도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 업무담당자로 한정한다)
다) 산림청 산림항공본 | (1) 가), 나) 또는 마)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라)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의 해당자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나)의 해당자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나)와 (다)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라)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 및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으로 한정한다)

마)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나 같은 법 제50조의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등 긴급구조활동의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지원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 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
- 나)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월 600,000원 이하
다)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0원 이하
라) 6급(상당), 7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400,000원 이하

| | |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마) 8급(상당), 9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0원 이하 |
| 13)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30퍼센트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 월 360,000원 |
| 15)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240,000원 이하 |
| 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
| 17)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 | 월 50,000원 |

| | |
|---|--|
| 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 |
| 19)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40%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
|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일 16,000원을 지급하되, 월 1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22)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사로서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의 항행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지급대상자 중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공항의 교통량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의 가산금 지급대상자 중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 | 가) 지급액: 월 80,000원
나) 가산금
(1) 소속 장관은 업무의 양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50,000원 |

| | 원으로서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업
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
무원 | 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소속 장관은 동일한 직위에서 2년 이상 계속하
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
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과 (2)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서 독성 및 마약 분야
의 감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약사 면
허가 있는 공무원 | 월 2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중요
직무급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 가) 지급상한액
<table><tr><th>지급대상</th><th>월 지급 상한액</th></tr><tr><td>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td><td>300,000원</td></tr><tr><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과장급)</td><td>200,000원</td></tr><tr><td>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td><td>150,000원</td></tr><tr><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td>100,000원</td></tr></table>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지급대상 | 월 지급 상한액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00,000원 |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과장급) | 200,000원 |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 150,000원 |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100,000원 | | | | | | | | | | | | | |
| 지급대상 | 월 지급 상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
(과장급) | 2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 15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1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우수
대 민
공무원
수당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
무원 | 가) 지 급 액: 월 20만원
나)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 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전문
직무급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
정」 제2조에 따른 전문
직공무원 | (지급액)
<table><tr><th rowspan="2">근무기간</th><th colspan="2">월 지급액</th></tr><tr><th>수석전문관</th><th>전문관</th></tr><tr><td>1년 미만</td><td>310,000원</td><td>250,000원</td></tr><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335,000원</td><td>280,000원</td></tr><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400,000원</td><td>350,000원</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525,000원</td><td>460,000원</td></tr><tr><td>4년 이상 7년 미만</td><td>680,000원</td><td>620,000원</td></tr><tr><td>7년 이상</td><td>835,000원</td><td>780,000원</td></tr></table>
(비고)
1.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으로 임용(전
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근무기간 | 월 지급액 |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1년 미만 | 310,000원 | 25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335,000원 | 28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400,000원 | 350,000원 | 3년 이상 4년 미만 | 525,000원 | 460,000원 | 4년 이상 7년 미만 | 680,000원 | 620,000원 | 7년 이상 | 835,000원 | 780,000원 |
| 근무기간 | 월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석전문관 | 전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310,000원 | 25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335,000원 | 28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3년 미만 | 400,000원 | 35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 525,000원 | 46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7년 미만 | 680,000원 | 62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35,000원 | 78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2.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4. 재외
직 분
야

가. 재외
근무수
당

재외공관에
외공무원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마
지역 | 바
지역 | 사
지역 | 아
지역 | 자
지역 | 차
지역 |
|--|---------|---------|---------|---------|---------|---------|---------|---------|---------|---------|
| 14등급 | 4102 | 4339 | 4510 | 4701 | 4928 | 5162 | 5349 | 5533 | 5723 | 5900 |
| 1급,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12
· 13등급,
소장·준장
2·3급, 고
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
급까지, 대령
· 중령, 국가
정보원 전문
관(3급 상당
직위) | 3544 | 3746 | 3883 | 4046 | 4237 | 4440 | 4591 | 4754 | 4916 | 5120 |
| 4급, 6등급부
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
보원 전문관(4
급 상당 직위) | 2865 | 2813 | 2893 | 3011 | 3147 | 3294 | 3403 | 3530 | 3641 | 3797 |
| 5급, 5등급,
대위, 국가
정보원 전
문관 | 2463 | 2599 | 2666 | 2774 | 2899 | 3033 | 3131 | 3240 | 3350 | 3464 |
| 6급, 4등급 | 2261 | 2394 | 2440 | 2538 | 2650 | 2772 | 2861 | 2969 | 3068 | 3181 |
| 7급, 3등급 | 2097 | 2209 | 2254 | 2345 | 2446 | 2559 | 2639 | 2730 | 2839 | 2922 |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 일본,
요코하마
(엔) | 고베, 나고
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 영국
(파운드) |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
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유로) |
|-------------------------------|-------------------------------|--------------------|---|-------------|---|
| 14등급 | 7,177 | 665,697 | 608,550 | 3,715 | 3,991 |
| 1급, 고위공
무원단 가등
급, 12·13 | 6,136 | 567,447 | 520,213 | 3,232 | 3,406 |

| | | | | | |
|---|-------|---------|---------|-------|-------|
| 동급, 소장
·준장 | | | | | |
| 2·3급, 고
위공무원단
나동급, 9등
급부터 11
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5,054 | 466,263 | 428,483 | 2,738 | 2,801 |
| 4급, 6등급
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4,385 | 405,260 | 371,729 | 2,428 | 2,438 |
|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
보원 전문관 | 4,016 | 369,611 | 340,516 | 2,257 | 2,226 |
| 6급, 4등급 | 3,648 | 337,279 | 309,302 | 2,087 | 2,032 |
| 7급, 3등급 | 3,347 | 307,572 | 283,763 | 1,948 | 1,856 |

| | | | | | |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스페인,
라스팔마
스, 그리
스, 포르
투갈,
크로아티
아,
슬로베니
아
(유로) | 터키,
이스탄
불
(유로) | 아일랜드,
오스트리
아,
프랑크푸
르트,
교황청, 벨
기에,
이탈리아,
빌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
이시디, 네
덜란드, 유
네스코, 예
스트나,
룩셈부르크
(유로) | 핀란드
(유로) | 덴마크
(크로
네) |
| 14등급 | 4,535 | 4,690 | 4,718 | 4,899 | 37,775 |
| 1급, 고위
공무원단
가 등 급,
12·13등
급, 소장
·준장 | 3,869 | 4,000 | 4,022 | 4,178 | 32,201 |
|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등
급, 9등급
부터 11등
급까지 대
령·중령,
국가정보
원 전문관
(3급 상당
직위) | 3,180 | 3,333 | 3,307 | 3,433 | 26,466 |
| 4급, 6등급
부터 8등급
까지 소령 | 2,766 | 2,898 | 2,877 | 2,985 | 23,086 |

| | | | | | |
|--------------------------------------|-------|-------|-------|-------|--------|
|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 | | | |
| 5급, 5등
급, 대위,
국 가 정 보
원 전문관 | 2,524 | 2,646 | 2,624 | 2,724 | 20,998 |
| 6급, 4등급 | 2,307 | 2,416 | 2,397 | 2,487 | 19,166 |
| 7급, 3등급 | 2,103 | 2,202 | 2,185 | 2,266 | 17,473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노르웨
이
(크로
네) | 스웨덴
(크로
나) | 스위스,
제네바
(프랑) |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 호주,
시드니,
멜버,
브리즈
번
(달러) | 뉴질랜
드,
오클랜
드
(달러) |
|--|-----------------------|------------------|---------------------|--------------------------------------|--|-------------------------------|
| 14등급 | 45,565 | 46,626 | 8,463 | 6,110 | 6,602 | 8,855 |
| 1급, 고위공
무원단 가
등급, 12·
13등급, 소
장·준장 | 38,841 | 39,745 | 7,215 | 5,214 | 5,631 | 7,555 |
| 2·3급, 고
위공무원
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31,906 | 32,673 | 5,927 | 4,288 | 4,693 | 6,212 |
| 4급, 6등급
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 27,745 | 28,402 | 5,154 | 3,731 | 4,084 | 5,407 |
| 5급, 5등
급, 대위,
국 가 정 보
원 전문관 | 25,295 | 25,928 | 4,698 | 3,405 | 3,729 | 4,935 |
| 6급, 4등급 | 23,083 | 23,666 | 4,287 | 3,107 | 3,405 | 4,507 |
| 7급, 3등급 | 21,055 | 21,568 | 3,911 | 2,837 | 3,105 | 4,111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대만
(달러) | 시안, 광저
우, 선양,
청두, 칭다
오, 우한,
다롄
(런민비) | 중국, 상하
이
(런민비) |
|--|------------|---|----------------------|
| 14등급 | 174,955 | 32,168 | 33,593 |
| 1급,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
급, 소
장·준장 | 149,137 | 27,500 | 28,716 |
| 2·3급,
고위공무 | 122,516 | 22,957 | 23,970 |

| | | | |
|---|---------|--------|--------|
| 원단 나
등급, 9
등급부터
11등급까
지 대령·
중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3
급 상당
직위) | | | |
| 4급 6등급
부터 8등
급까지 소
령 국령
보원 전문
관(4급 상
당직위) | 106,535 | 19,913 | 20,796 |
| 5급, 5등
급, 대위,
국가정보
원 전문관 | 97,129 | 18,241 | 19,047 |
| 6급 4등급 | 88,628 | 16,568 | 17,299 |
| 7급 3등급 | 80,846 | 15,201 | 15,872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애틀란타,
휴스턴,
하갓나, 델
러스, 필라
델피아
(달러) | 미국, 국제
연합, 뉴욕,
로스앤젤레
스, 보스턴,
샌프란시스
코, 시애틀,
시카고, 앵
커리지
(달러) | 호놀룰루
(달러) |
|--|--|--|--------------|
| 14등급 | 4,748 | 4,975 | 5,149 |
| 1급 고위
공무원단
1등급 12
·13등급,
소장준장 | 4,084 | 4,279 | 4,425 |
| 2·3급,
고위공무
원단 나
등급, 9등
급 부 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
원 전문관
(3급 상당
직위) | 3,395 | 3,556 | 3,674 |
| 4급, 6등급
부터 8등
급까지 소
령 국령
보원 전문
관(4급 상
당직위) | 2,969 | 3,107 | 3,210 |
| 5급, 5등
급, 대위,
국가정보
원 전문관 | 2,735 | 2,861 | 2,954 |

| | | | |
|---------|-------|-------|-------|
| 6급, 4등급 | 2,498 | 2,615 | 2,698 |
| 7급, 3등급 | 2,308 | 2,413 | 2,488 |

비고

1.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2. 위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2)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구분 \ 등급 | 1급 | 2급 | 3급 |
|--|---|---|---|
| 제1종 특수외국어
(불어·독어) | 월 300달러 이하 | 월 250달러 이하 | 월 200달러 이하 |
| 제2종 특수외국어
[러시아어·아랍어·팔레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디(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파인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헝가리어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월 900달러 이하 | 월 600달러 이하 | 월 450달러 이하 |
| 급별 기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감액(증액)률
계급·직위·등급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
| 14등급 | 64 | 128 | 192 | 256 | 321 | 385 | 449 | 513 | 577 | 641 |
| 1급, 고위
공무원
가
12등급
· 13등급
소장·
주 | 55 | 109 | 164 | 218 | 272 | 327 | 382 | 436 | 490 | 545 |
| 2·3급, 고위
공무원
나
9등급
· 11등급
지
중
정보
원
상
당
(3
급
직
위) | 44 | 88 | 132 | 176 | 220 | 264 | 308 | 352 | 396 | 440 |
| 4급, 6등급
부터
8등급
까지
국가
정보
원
(4
급
직
위) | 38 | 76 | 114 | 152 | 190 | 229 | 267 | 305 | 343 | 381 |
| 5급, 5등급
대위
국가
정보
원
전
관 | 35 | 69 | 104 | 139 | 173 | 208 | 242 | 277 | 312 | 346 |
| 6급, 4등급 | 31 | 63 | 94 | 126 | 157 | 189 | 220 | 252 | 283 | 315 |
| 7급, 3등급 | 29 | 57 | 86 | 114 | 143 | 172 | 200 | 229 | 257 | 286 |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text{○ 감액(증액)률(\%)} = \frac{\text{나-가}}{\text{가}} \times 100$$

| | | | |
|--|--|--|--|
| | | | <p>"가"는 액(증액)을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p> <p>(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p> |
|--|--|--|--|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지 급 대 상 | 기 준 호 봉 |
|---|---|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다.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라.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0호봉,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11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경장·소방교 이상: 10호봉
나. 순경·소방사: 9호봉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
|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대위: 8호봉
나. 중위: 7호봉
다. 소위: 3호봉
라. 준위: 11호봉
마. 원사: 1호봉
바. 상사: 7호봉
사. 중사: 9호봉
아. 하사: 10호봉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제17조의2제1항 관련)

| 구 분 | 지 급 대 상 |
|-----------------------|---|
|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수석전문관 포함) |
| 2. 외무공무원 | 6등급 |
| 3.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 4. 지도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 5.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 6.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 7.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 8.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 9. 소방공무원 | 소방장 이상 |
| 10. 교육공무원 | 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총장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실장·부장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 11.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가급 |

비고

1.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삭제 <2011.1.1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 대통령 | | | | 3,200,000원 |
| 국무총리 | | | |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총장 | 치안총감, 소
방총감 | | 950,000원 |
| | 소장 | |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
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
방정감 |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
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 대령 | 치안감, 소방
감 |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
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
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
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
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 중령 | 경무관, 소방
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교
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
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
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원장, 장학관·교육연구
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
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
군,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원감, 장학관·교육연구
관 | 250,000원 |
| | 준위 | | | 20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
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경위,
소방경·소
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85,000원 |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
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 180,000원 |
| 8·9급(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
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
무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순경,
소방교·소
방사 | | 175,000원 |
| | 하사 | | | 165,000원 |

비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교장·원장·교감·원감은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
|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
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
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소장, 준장,
대령 | 치안정감·치안감·경무
관, 소방정감·소방감·
소방준감 | 대학원장, 대학교(한국
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한다)의 학장·처장·
실장·부장, 한국예술총
합학교 원장·처장, 교
장, 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 4·5급(상당), 연구관·지
도관(4·5급 상당 직위), 5
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
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
원(가급·나급), 국가정보
원 전문관(4·5급 상당 직
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
군무경력관 가군 | 중령, 소령,
대위 | 총경·경정, 소방정·소
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
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
관(4·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 6·7급(상당), 연구사·지
도사, 3·4등급 외무공무
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준위, 원사,
상사 | 경감·경위·경사, 소방
경·소방위·소방장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30,000원 |

7. 교수보직경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1.
- 2.
- 3.



[2026. 7. 1.] [36492 , 2026. 6. 30.,]

() 044 - 201 - 8403

1

1 () 가 (公務) 가 .

[2010. 11. 10.]

2 () 가 .

3 () 가 (“ ”) 1 .

[2010. 11. 10.]

4 () . ,

[2010. 11. 10.]

5 () . ,

[2010. 11. 10.]

6 () (滞在)

[2010. 11. 10.]

7 () 가 가 . , 가 .

[2010. 11. 10.]

8 ()
(赴任) (職)

[2010. 11. 10.]

8 2() 가 ()
() 「 」 24 5
(“ ”) 「 」 2 3
(“ ”)

가 . <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起算) 2

,

.

.<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2

.< 2013. 3. 23.,

2014. 11. 19.>

1

,

.< 2013. 3. 23., 2014. 11. 19.>

1

3

「

」

13

1

,

.<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2010. 11. 10.]

[2011. 2. 9.]

2

9 ()

.

.

.

,

,

(水路)

,

,

.

1

[2010. 11. 10.]

10 () 2 . ,

， (實費) .

1. 2 :
 2. :
 3. :
- [2010. 11. 10.]

11 () 2 .
[(舢舨) (埠頭)]

.< 2021. 1. 5.>

1. 2 :
 2. :
 3. :
- [2010. 11. 10.]

12 () 2 .
3 .< 2021. 11. 30.>
(가
， “ ”)

，
(
) .<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3 1 2
， 3

.< 2013. 12. 11., 2014. 11. 19.>

.< 2026. 6. 30.>

[2010. 11. 10.]

12 2 <2021. 5. 25.>

13 () 2 .

[2010. 11. 10.]

14 <2007. 11. 13.>

15 () .
 . < 2021. 11. 30.>

[2010. 11. 10.]

3 .

16 (. .) (日費) . 2

, 4 . ,

()

10 3 ,

2 1 가

. < 2011. 2. 9.>

1 가

1 (2)

.< 2011. 2. 9.>

,

2 1

.< 2013. 3. 23., 2014. 11.

19., 2024. 7. 2.>

. ,

가

,

.

. ,

가

.

<2012. 1. 6.>

[2010. 11. 10.]

17 ()

15

10

1 , 30

10 2

, 60

10 3

. ,

. <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1

[2010. 11. 10.]
[2011. 2. 9.]

18 () 16

4 2 , 4
1 , 「 」 4

1 . <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1 “ ”

.< 2026. 6. 30.>

1. (,) • ()
()

2. 가 12

[2010. 11. 10.]

4 • 가

19 () ()
“ ”) (前任地)(2
() (新任地)(2)

1.

2.

1

.< 2026. 6. 30.>

가

가

6

1

.< 2026. 6. 30.>

.< 2026. 6. 30.>

[2010. 11. 10.]

20 () (移轉費) 5 .
6
(.)
(가 .
)

가
1 1

[2010. 11. 10.]

21 (가) 가 가 (,
.
가 .
가 가
6 가
가 가
가 가 1
1. :
2. : 12 가
3 2, 12 가 3 1
3 가 6

가 가 2 가
가 가 ()
2 가 가
가 가
()
가 20 3 .

[2010. 11. 10.]

22 (가) 가 6 2 . ,
26 가 ,
26

가

29

가

[2010. 11. 10.]

23 ()

. < 2013. 3. 23., 2014. 11. 19.>

1

2

. < 2011. 2. 9.>

[2010. 11. 10.]

5

24 ()

(前職)

(本職)

(가

가

)

1

3

, 가

22

가

1

4

가 」 71 2

[2010. 11. 10.]

25 ()

(殘務)

[2010. 11. 10.]

26 ()

2

2 .

(22 가 가)

2 .< 2016.

1. 22.>

2 7 1 2 9

16 1 , .<

2021. 5. 25.>

2 가 1 22

가 .

,

가 3 9 16

1 .< 2015. 1. 6.>

[2010. 11. 10.]

27 ()

가 가 가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가 가 1

.< 2015. 11. 20., 2016. 11. 29.>

1 가 가

.< 2014. 11. 19., 2017. 7.

26.>

[2010. 11. 10.]

6

28 ()

가

.

.

2

3 1 () .

.

[2010. 11. 10.]

29 () ,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8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4 . ,

.<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2010. 11. 10.]

29 2()

.

[2020. 3. 10.]

30 ()

, 9 .

[2010. 11. 10.]

31 (가) 「 가 」 48 3

5

가 . < 2021. 11. 30.>

1

.<

2013. 3. 23., 2014. 11. 19.>

[2013. 1. 9.]

< 15680 ,1998. 2. 24.>

1 () .

2 () .

1.
2.
3 () .
24 “ ” “ ” .
13 “ ” “ ” .
8 2 11 “ ” “ ” .
9 “ ” “ ” .
21 “ ” “ ” .
6 “ ” “ ” .
21 “ ” “ ” .
58 1 4 “ ” “ ” .
2 1 “ 15 1 2 4
• • ” “ 16 1 2 4
• • ” , 2 “ ” “ ” , “
3 • 4 • 13 • 15 2 3 ” “ 4 • 5
• 14 • 16 2 4 ” .
3 “ ” “ ” .
26 “ ” “ ” .
< 15715 ,1998. 2. 28.> ()
1 () .
2 5
6 () .

17 1 “ ” “ ” .
 22 1 8 29 3 “ ” “ ” .
 27 1 , 29 1 3 “ ” “ ”
 27 3 “ ” “ ” .
 1 “ ” “ ” ,
 “ ” “ ” ,
 “ ” “ ” 3
 “ 가
 가
 3 “ ” “ ” “ ” “ ”
 ” .
 4 7 “ ” “ ” ,
 ” .

< 16326 ,1999. 5. 24.>()
 1 () .
 2 3
 4 ()

27 1 29 1 3 “ ” “ ”
 .
 <109>

< 16691 ,2000. 1. 8.>
 , 2000 1 1 .

< 16785 ,2000. 4. 18.>()
 1 () .
 2 ()

17 1 “ ” “ ” .
 27 1 “ ” “ ” , 3 “ ” “ ” .
 29 1 3 “ ” “ ” .
 1 1 1. “ , 1 ” “ , 1 , 33
 2 가 1 ” . 2 1. “ 2 3
 ” “ 2 3 , 33 2 가 2 3
 ” , 3 1. “ 4 5 ,
 가 ” “ 4 5 , 33
 2 가 4 5 , 가
 3 “ ” “ ”

< 17153 ,2001. 3. 20.>

< 17165 ,2001. 3. 27.> ()

1 () 2001 3 29 .
 2 ()
 8 1. “ () ”
 “ () ” .

< 17275 ,2001. 6. 30.> ()

1 () 2001 7 1 .
 2 ()
 7 1 “ ” “ . ” .
 24 3 “ ” “ . ” .
 1 “ 1 ” “ 14
 ” , 1 1 “ 2 ” “ 12
 13 ” , 2 1 “ 2 3
 ” “ 2 3 , 9 11 ” , 3
 1 “ 4 5 ” “ 4 5 , 5 8

” .

3

< 17484 ,2002. 1. 4.>
 , 2002 1 1 .

< 17776 ,2002. 11. 14.>
 , 2002 11 1 .

< 17881 ,2003. 1. 7.>
 , 2003 1 1 .

< 17994 ,2003. 6. 13.>
 2003 6 13 .

< 18220 ,2004. 1. 10.>
 .

< 18673 ,2005. 1. 7.>
 , 2005 1 1 .

< 19270 ,2006. 1. 12.>
 , 2006 1 1 .

< 19414 ,2006. 3. 29.>()

1 () .

2 () .

16 2 “ ” “ ” , 18 1 “ ”
 “ ” “ ” “ ” “ ” .

< 19523 ,2006. 6. 12.>
2006 7 1 .

< 20152 ,2007. 7. 2.>()
1 () , 2007 7 1 . < >
2 4
5 () 「 」 .
1 1 “ ” “ () ” ,
2 “ ” “ () ” .

< 20381 ,2007. 11. 13.>
1 () 2008 1 1 . , 19 21
5 .
2 (가) 19 21 5
2007 7 1
가 .
3 ()
가
7 , 8 2, 10 14 , 16 ,
17 , 26 , 1 4 7
.
1
.
1 2 가
.

< 20402 ,2007. 11. 30.>()
1 () .
2
3 ()

8 3 “ ” “ ”

.

4

< 20741 ,2008. 2. 29.> ()

1 () . < >

2 5

6 ()

8 2 3 4 “ 가 ” “ ” .

17 1 “ ” “ ” .

27 1 , 29 1 3 “ ”

“ ” .

29 4 “ ” “ ”

” .

1 1 , “ ” “ ”

” .

. , 가 , ,

2 1 “ 가 ” “ ”

” , 2 “ ” “ ”

.

3 “ ” “ ”

” .

8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방법 | | | | | | | | | | | | | | | | | | |
|-----------------------|---|---|----|------|-------|---------|-------|------------------------|-----|---------|------|---------|------|---|------|-----|------|--------------------------------|-----|----------|
| 1. 수산관계 공무원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2. 산림보호공무원여비 |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table><tr><th>구분</th><th>도서지역</th></tr><tr><td>부산광역시</td><td>강서구 천가동</td></tr><tr><td>인천광역시</td><td>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td></tr><tr><td>경기도</td><td>안산시 대부동</td></tr><tr><td>전라북도</td><td>부안군 위도면</td></tr><tr><td>전라남도</td><td>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통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td></tr><tr><td>경상북도</td><td>울릉군</td></tr><tr><td>경상남도</td><td>통영시 산양읍·육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td></tr><tr><td>제주도</td><td>북제주군 추자면</td></tr></table> | 구분 | 도서지역 | 부산광역시 | 강서구 천가동 | 인천광역시 |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 경기도 | 안산시 대부동 | 전라북도 | 부안군 위도면 | 전라남도 |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통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 경상북도 | 울릉군 | 경상남도 | 통영시 산양읍·육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 제주도 | 북제주군 추자면 |
| 구분 | 도서지역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천가동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 안산시 대부동 | | | | | | | | | | | | | | | | | | | |
| 전라북도 | 부안군 위도면 |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통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 울릉군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 통영시 산양읍·육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 | | | | | | | | | | | | | | | | | | |
| 제주도 | 북제주군 추자면 | | | | | | | | | | | | | | | | | | | |
|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4. 축산물검사공무원여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6. 정부구매물자 가격조사요원여비 |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7. 징병검사 공무원여비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8.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공무원여비 |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9. 지식경제부 현업기관공무원여비 |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 공무원 |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 | | | | | | | | | | | | | | | | |
| 10. 농산물품질관리공무원여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105>

< 20916 ,2008. 7. 17.>

.

< 21452 ,2009. 4. 30.>(가)

1 () .

2 ()

.

1 2 가 “ 2 3 ” “ 2
3 , 가 ” .

< 22474 ,2010. 11. 10.>

1 () .

2 () 5 2010 6 1
(,)

.

3 () 23

,

.

< 22661 ,2011. 2. 9.>

1 () 2011 7 1 .

2 ()

8 2, 16 , 17 , 23 4

.

1

.

1 2

.

< 22962 ,2011. 6. 7.>()

1 () 2011 6 15 .

2 ()

.

8 1 “ [(支院)] ” “

() ” , 3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3

< 23116 ,2011. 9. 6.>(.)

1 () 2011 12 28 .

2 4

5 ()

.

1 1 “ () ” “ ” .

< 23501 ,2012. 1. 6.>

1 () .

2 () 5 20

.

3 () 16 , 1 1 ()
2 가 , 2 , 4 9

.

< 23644 ,2012. 2. 29.>()

1 () . , . . . < > . . . 2

3 2012 7 22 .

2

3 ()

1 2 가 “ ” “ ” .
<69>

4

< 23676 ,2012. 3. 26.> ()
1 () .
2 () .
8 1 3 “ () ” “ () ” .

< 24149 ,2012. 10. 29.>

.

< 24298 ,2013. 1. 9.>

1 () . , 31 2013 6 12
2 (가) 31 2013
6 12 .

< 24425 ,2013. 3. 23.> ()

1 () . , 6

.

2 5

6 () 1&

1*

8 2 2 , 3 5 , 12 3 , 16 3 , 17
1 , 18 1 , 23 1 , 27 1 , 29 1 3
4 “ ” “ ” .

29 3 “ ” “ ” .

24298 31 2 “

” “ ” .

1 1 가 “ ” “ ” , ” ,

“ ” “ ” “ ” .

가 , ,

2 1 2, 2 4 “ ” “

” , 3 “ ” “

” .

3 “ ” “ ” .

4 1 2 4 “ ” “ ”

6 2 7 8 “ ” “ ”

8 1 “ () ” “

() ” , 2 “

” “ ” .

8 1 “ ”

“ ” , 4 “ ” “ ”

, 7 “ ” “ ” .

1(<129>

< 24924 ,2013. 12. 11.>

1 () 2014 1 1 . , 1 2013

12 12 .

2 () 12 3

2014 1 1

3 () 12 3 , 4 , 2

4 2014 1 1 .

< 25375 ,2014. 6. 11.>()

1 () . < >

2 4

5 ()

1 1 “ ” “ ” .

< 25751 ,2014. 11. 19.> ()

1 () . , 5

2 4

5 () <117>

<118>

8 2 2 , 3 5 , 12 3 . , 4
 , 5 , 16 3 , 17 1 , 18 1 , 23 1 ,
 27 1 , 29 1 4 31 2 “ ”
 “ ” .

27 3 “ . ” “
 . ” .

1 1 “ ” “ , ” .
 2 1 2, 2 4 “ ” “
 ” .

3 “ ” “ ” .
 4 1 2 4 “ ” “ ” .

<119> <418>

< 26042 ,2015. 1. 6.>

1 () .

2 () 26 5 , 1, 2, 4, 6 2 8
 2015 1 1 .

3 () 5 2015 1 1 20

< 26659 ,2015. 11. 20.>()

1 () 2016 1 25 . < >

2

3 ()

.

27 2 “ ” “ ” .

2*

4

< 26935 ,2016. 1. 22.>

1 () .

2 () 26 2 4 2016 1 1

.

3 () 6 2 2016 1

1

.

< 27617 ,2016. 11. 29.>(

)

1 () 2016 11 30 .

2 4

5 ()

.

27 “ , (警備矯導) ” “ ” .

1&

< 27787 ,2017. 1. 10.>()

1 () 1 .

2

3 ()

.

1 2 가 “ 3 () 5

” “ 3 () 5

(「 」 3 1) ”

.

< 27825 ,2017. 1. 31.>

1 ()

2 () 5 2017 1 1

< 28211 ,2017. 7. 26.> ()

1 () , 8

2 7

8 () <355>

<356>

27 3 “ ” “ •
” .

1 1 “ 가 , ” “ ,

8 7 “ ” “ ” .

<357> <388>

< 30515 ,2020. 3. 10.> (가

28)

2020 4 1 . < >

< 31380 ,2021. 1. 5.> (473

)
. < >

< 31706 ,2021. 5. 25.>

1 ()

2 () 1, 4 9

3 ()
 4 2 “ 「 」 1 2 ” “ 「
 」 1 2 ” .

< 32168 ,2021. 11. 30.>
 . , 31 1 2021 12 9

< 32627 ,2022. 5. 9.>(가)
 1 () 2022 7 21 .

2

3 ()
 .
 1 1 “ ” “ 가 ” .

< 33312 ,2023. 3. 2.>
 1 ()
 2 () 2

< 34626 ,2024. 7. 2.>()

1 () .

2

3 ()

16 3 “ ” “ ” .
 18 1 “ 「 」 ” “ 「 」 ” ,
 “ ” “ ” “ ” “ ” “ ” .

< 35811 ,2025. 10. 1.> (306)

・ ,

・

< 35948 ,2025. 12. 30.> ()

1 () 2026 1 2 . , 4

・

2 3

4 () <153>

<154>

・

27 1 , 29 1 3 , 4 , 2 2 ,

4 3 “ ” “ ” .

<155> <176>

< 36013 ,2026. 1. 2.> ()

1 () .

2 3

4 () .

1 1 가 “ 「 」 12 1 ” “ 「

」 12 1 ” , “ 「 」 12

1 가 ” “ 「 」 12 1 가 ” .

< 36492 ,2026. 6. 30.>

2026 7 1 .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 구분 | 해당 공무원 |
|-----|---|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위 표의 제2호란에 따른 숙박비를 적용할 때 통합특별시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시·군 및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25. 12.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 구분 | 항공운임 |
|--------------------|---------|
|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1등석) |
|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2등석) |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 60 | 실비(상한액: 471) | 186 |
| | 나 | 60 | 실비(상한액: 422) | 136 |
| | 다 | 60 | 실비(상한액: 271) | 102 |
| | 라 | 60 | 실비(상한액: 216) | 85 |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50 | 실비(상한액: 389) | 160 |
| | 나 | 50 | 실비(상한액: 289) | 117 |
| | 다 | 50 | 실비(상한액: 215) | 87 |
| | 라 | 50 | 실비(상한액: 161) | 73 |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40 | 실비(상한액: 282) | 133 |
| | 나 | 40 | 실비(상한액: 207) | 99 |
| | 다 | 40 | 실비(상한액: 162) | 72 |
| | 라 | 40 | 실비(상한액: 108) | 61 |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35 | 실비(상한액: 223) | 107 |
| | 나 | 35 | 실비(상한액: 160) | 78 |
| | 다 | 35 | 실비(상한액: 130) | 58 |
| | 라 | 35 | 실비(상한액: 85) | 49 |
|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 30 | 실비(상한액: 176) | 81 |
| | 나 | 30 | 실비(상한액: 137) | 59 |
| | 다 | 30 | 실비(상한액: 106) | 44 |
| | 라 | 30 | 실비(상한액: 81) | 37 |
| 6. 삭제 <2021. 5. 25.> | | | | |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경비 총액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액 |
|--------|--|---|
| 국내 이전비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
| |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국외 이전비 |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 |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이전비 지급 기준표 (제20조 관련)

|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액 |
|--------|---|---|
| 국내 이전비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
| |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국외 이전비 |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실비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 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 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 |
|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 |
|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 |
|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
|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 |
|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때 |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
| 8.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 |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7] 삭제 <2010.11.10>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9조제2항 관련)

|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방법 |
|--------------------------|--|---|
|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2. 동물·식물 검역 공무원의 여비 |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 |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 |

| | |
|----------------------------|---|
| 원의 여부 | |
| 7. 농산물품질
관리 공무원
의 여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
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
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
무원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 해 당 자 | 지 급 기 준 |
|--|--|
|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
| 2. 사립학교의 교원 |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
|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2021. 1. 5.] [31359 , 2021. 1. 5.,]

() 044 - 203 - 6501

1

1 () 「 」 22 , 「 • 」 21 , 「 」
46 「 」 37 42
 , •

[2013. 7. 15.]

2 () 1 (“ ”)
 , , •
 「 」 2 1 3 5
 , • • (“ ”
)
 가 .

1. : ,
2. : ,
3. : , , , , ,
4. : , , , , ,

2 ()
 가 .
 (數) 가 .
 3 가 가

가 .< 2018. 4. 3.>
(“ ”) ,
. < 2018. 4. 3.>

1. , , :

2. :

3. :

4. :

.< 2018. 4. 3.>

• •

.< 2018. 4. 3.>

「 」 2 1

23 3 27 1

6 1 .< 2018. 4. 3., 2021. 1. 5.>

[2013. 7. 15.]

[2018. 4. 3.]

2 2(가)

가 .

1 가

가

1 가

[2018. 4. 3.]

2 3()

(.) 2

1. 2 4 가

2. 2 2 1 가 가

3. 2 2 2

4. 9 가

5. 11

1 •

1 가 15

, 가 30

1 가

1

.

4

,

.

1

4

[2018. 4. 3.]

3 ()

. < [2017. 2. 22.](#)>

1. : 「 」 2 2 「 . 」 2

2. : 1 . . . 「
」 23 .

3. : 1 2

.

1 2

[2013. 7. 15.]

4 ()

,

.

1

,

가

.

.

[2013. 7. 15.]

5 ()

(4

)

. ,

.

[2013. 7. 15.]

6 ()

. <

[2021. 1. 5.](#)>

1.

가. 18

가

. 「 」 45 3
.

2. : 「 」 22 1 3 , 1 2, 「 .
」 21 1 3 , 1 2

(

.)

(1) , (2) , (
) , (1) , (1) ,

(1) , (1) , , , , , .

[2013. 7. 15.]

6 2() .

1 .

1.

2. . 가

3. 가

4.

5.

6.

7.

.
3

가 .

[2013. 7. 15.]

7 () 1 ,

[2013. 7. 15.]

8 () (實費)

[2013. 7. 15.]

8 2()

, ,

5 . < 2013. 3. 23.>

가

.< 2013. 3. 23.>

[2012. 9. 28.]

[8 2 8 3 <2012. 9. 28.>]

8 3(•)

• .

[2013. 7. 15.]

2

9 (가) 가 가

가

100

60

10

[2013. 7. 15.]

10 ()

•

[2013. 7. 15.]

11 () 가

•

1.

2.

3.

4.

5.

6.

7.

「 가

」 78 1

「 」 69 1

.

1. 1 1 6

2.

2

[2013. 7. 15.]

3

12 ()

「 」 (“ ”)

40 1

.

1.

2.

3. .

4. ,

5.

6.

7.

8.

[2013. 7. 15.]

13 ()
()

(2

. <

[2013. 3. 23.>](#)

.

(啓發

)

1

18

가 가

< [2013. 3. 23.>](#)

[2012. 9. 28.]

-

-

•

,

■

40 1 6

6

) 6

()

가

■

• ,

. < 2017. 7. 24. >

1. 44 1 1 , 2 , 5 7 , 7 2 8 12

2. 「가」 73 3

[2013. 7. 15.]

가

2

1.

2.

3. 14

4. 15

5. 16 1

1

가

90

40 5

[2013. 7. 15.]

4

가 < 2011. 2. 25.>

18 (가)

37

42

「

」

2

2

「

.

」 2

가(

“

가”)

. < [2017. 2. 22.>](#)

가

가

.

[2013. 7. 15.]

19 (가)

가

1. 가 가 가

2. 가 가 가

3. 가 ,

4. 가

[2013. 7. 15.]

20 (가) 가 가

가 . < [2017. 2. 22.>](#)

1. , , :

2. : .

3. :

[2013. 7. 15.]

21 (가) 가
가 ()

가 , ,

[2013. 7. 15.]

22 (가) , 「 」 2 2
(「 」 9
) 「 . 」 2 가
, (「 」 9)
가 (“ ”) .

. < 2017. 2. 22.>

, 가 5 11

.

, .< 2017. 2. 22.>

[2013. 7. 15.]

23 (가) 가

.

1. 가 가

2. 가 ,

3. 가 가

4. 가

5. 가

6. . 가

7. 가

[2013. 7. 15.]

< 12891 ,1989. 12. 30.>

()

() “ ”

“ ”

< 13282 ,1991. 2. 1.> ()

1 () .

2 4

5 () 1*

1() .

2 2 , 3 6 , 4 1 , 5 , 6 4 , 12 1 • 2 , 13 ,

14 1 • 3 , 15 , 16 1 • 2 17 1 • 2 “

” “ ” , 2 2 6 3 “ ” “

” .

2) <148>

< 14940 ,1996. 3. 11.>

() .

()

16 1

.

< 15445 ,1997. 7. 29.>

1997 9 1 . , 8 2 1998 3 1

.

< 16733 ,2000. 2. 28.>

1 () .

2 ()

.

.

.

3 ()

.

4 () .

32 1 “ ” “ ” , 2 “

” “ ” , “ ” “ ” ,

“ ” “ ” , “ (.)
 ” “ ” , 4 “ ” “ ”
 , 1 “ ” “ ” , “ ” “ ”
 ” .
 33 1 1 “ ” “ ” ,
 3 “ ” “ ” .
 5 2 “ ” “ ” .

< 17115 ,2001. 1. 29.>(
 1 () .
 2 4
 5 ()
 .
 2 2 • 4 , 3 7 , 12 1 , 13 ,
 14 1 • 2 • 3 3 , 15 , 16 1 17 1
 • 2 “ ” “ ” .
 2 2 , 6 3 8 2 2 “ ” “ ”
 ” .
 <152>

< 18075 ,2003. 7. 30.>

< 20611 ,2008. 2. 19.>
 1 () 2008 3 1 .
 2 (가)
 가 2
 2 가 .
 3 ()
 7 1 .

< 20740 ,2008. 2. 29.>()

1 () .

2 6

7 ()

.

2 2 , 4 , 3 6 , 6 2, 12
1 , 13 , 14 1 • 2 • 3
• 3 3 , 15 , 16 1 , 17 1 2 “
” “ ”

.

2 2 , 6 3 , 6 2, 8 2 2 “
” “ ”

.

<102>

< 20797 ,2008. 6. 5.>()

1 () .

2 ()

.

2 2 4 “ ” “ 「
」 2 5 ” , 3 5 “
” “ 「 」 2 5 ” .
1*

< 20942 ,2008. 7. 29.>

.

< 22119 ,2010. 4. 13.>

.

< 22676 ,2011. 2. 25.>

.

< 23246 ,2011. 10. 25.>
2011 10 26 .

< 23608 ,2012. 2. 3.>
. , 1 2012 3 1 .

< 24122 ,2012. 9. 28.>
.

< 24423 ,2013. 3. 23.>()
1 () . < >
2 6
7 ()
.
2 2 . , 3 • 4 , 2 2, 3 6 ,
6 2 1 , 2 7 , 3 • 4 , 8 2 1 • 2 , 12
1 , 13 1 , 2 , 14 1 • 2 ,
3 , 3 , 15 , 16 1 , 17 1
, 2 , 18 1 , 19 , 21 1 • 2 , 22
3 23 “ ” “ ” .
2 2 , 6 3 , 6 2 1 8 3 2 “
” “ ” .
2 6 “ 「 」 2
” “ 「 」 2 ” .

<105>

< 24662 ,2013. 7. 15.>
.

< 27865 ,2017. 2. 22.>

2017 3 1 .

< 28198 ,2017. 7. 24.>

1 () .

2 () 16 2

16

1

.

< 28780 ,2018. 4. 3.>

.

< 31359 ,2021. 1. 5.>

.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제7조 관련)

| | | |
|------|---|----------|
| 구분 |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특수학교 실
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
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수석교사, 교감 및 원감 | 교장 및 원장 |
| 기간 | 15일 이상 | 25일 이상 |
| 이수시간 | 90시간 이상 | 180시간 이상 |

연수 경비의 반납액 산정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

| 구 분 | 기 준 | 반납액 |
|-------------------------------|--|-----|
| 1.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수 경비 전액 | |
| 2.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text{연수 경비} \times \frac{1}{2}$ | |
| 3.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text{연수 경비}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 수} - \text{근무 개월 수}}{\text{의무복무 개월 수}}$ | |

비고

1. 의무복무 개월 수 및 근무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국외 연수를 위하여 받은 외화로 표시된 연수 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 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추가 반납액} = \text{연수 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 수} - \text{근무 개월 수}}{\text{의무복무 개월 수}}$$



[2022. 4. 27.] [265 , 2022. 4. 27.,]

() 044 - 203 - 6501

1 () 「 」

[2013. 8. 16.]

2 <2008. 2. 25.>

3 (가) 「 」 (“ ”) 2
2 가

1.

2.

3.

4.

5. , , ,

6.

7.

가. : (校地), (校舍),

. : (校舍), , ,

8.

1 6 .

1.

2.

3.

4.

5. .

6.

7. 가

2 4 “ ” .

< 2018. 7. 25.>

1.

2.

3.

4. 가

2 4 가(“ • 가 ”)

.< 2018. 7. 25.>

1. 가

가.

.

.

2. 가

가.

.

1

가

•

가

가

.< 2018. 7. 25.>

1. 가: 60

2. • 가: 30

[2013. 8. 16.]

[2018. 7. 25.]

3 2(가)

2 2 1

2 2 4

()

2 가 .

2 3 가

가 .

[2018. 7. 25.]

[3 2 3 4 <2018. 7. 25.>]

3 3() 2 3 1

4

1 .

[2018. 7. 25.]

3 4() 5

.

1.

- 2.
- 3.
- 4.
- 5.
- 6.
- 7.

1

[2013. 8. 16.]

[3 2 <2018. 7. 25.>]

- 4 () 6 (“ ”)
- 「 」 (“ ”) 2 3 5
- (“ ”) ,
-
- 가
-
- 6 (“ ”) (1) , (2)
-) , (.),
- (1) , (1) , (1) , (1) ,
- 「 」 1
- 2 「 • 」 1 2
- ,
- ,
-
- (1) , (2) , ,
- (1) , (1) , (1) (1)
- (“ ”)
- 가
- 「 」 32 「 」
- 54 4 (“ ”)
- , 2 5
- .< 2019. 4. 1.>
1. : , ,
 2. (1) : (1) (2)

3. (2) : (2)

4. :

5. (1) , (1) , (1) (1)
 : (1) , (1) , (1)
 (1) (2), (2),
 (2) (2)

5 . (“ ”)
 「 」 40

. , 「 」 33 1 2
 “ =9 - (-
) × 0.025 ” .< 2012. 2. 9.>
 4

4
 . 「 가 3
 . 「 18
 2 2 60
 .< 2015. 4. 20.>

「 1 「 . 「 1 , 1
 「 「 23 .
 . ,

.< 2015. 4. 20.>
 7

「 「 40 .
 .< 2015. 4.
 20., 2019. 4. 1.>

[2013. 8. 16.]

4 2() 「 」
 22 3 「 . 「 21 3 가

1

1

, 가

(

“ ”)

, 7 9

, , , , ,

가

,

3

1

1

5

[2013. 8. 16.]

5 <2013. 8. 16.>

6 () 6 2

1.

2.

3.

()

1.

2.

3.

4.

2 1

< 2017. 7. 21.>

[2013. 8. 16.]

7 ()

2

,

,

. < 2018. 7. 25., 2021. 1. 6.>

2

2

8

.< [2021. 1. 6.>](#)

[2013. 8. 16.]

8 (•)

8 3 1

15

1

.

8 3

.

.

[2013. 8. 16.]

9 () 4 13

. < [2013. 8. 16.>](#)

. , 4

5

.< [2013.](#)[8. 16.>](#)<[1973. 7. 12.>](#)

10 () 13

가

.

1

가

.

[2013. 8. 16.]

11 ()

가

.

1

가 가

.

가

.

[2013. 8. 16.]

12 ()

.

.

, 6

(日數)

2

2

」 3 「 3

」 4 .

[2013. 8. 16.]

13 () 15

1

[2013. 8. 16.]

14 () 15

3

1

30

가

[2013. 8. 16.]

15 () 17 1

가가 () .

[2013. 8. 16.]

16 () 3 3 1

2022 3 1 3 (3

)

[2022. 4. 27.]

< 307 ,1972. 12. 29.>

< 317 ,1973. 7. 12.>

< 360 ,1975. 5. 17.>

()

()

.

< 405 ,1977. 3. 12.>

.

< 410 ,1977. 8. 3.>

.

< 416 ,1977. 11. 12.>

.

< 434 ,1978. 12. 30.>

.

< 520 ,1983. 11. 25.>

.

< 555 ,1987. 3. 9.>

.

< 568 ,1988. 10. 19.>

1989 1 1

.

< 583 ,1990. 4. 2.>

()

.

()

“ ”

“ ”

.

< 594 ,1991. 3. 16.> ()

.

< 626 ,1993. 1. 26.>

.

< 684 ,1996. 6. 1.>

()

.

()

.

< 714 ,1998. 2. 28.>

()

1998 3 1

.

(

.

) 8

.

1998 2 28

.

.

< 764 ,2000. 3. 16.>

()

.

(

)

.

(

)

.

< 779 ,2001. 1. 31.>()

1 () .

2

3 ()

3 1 , 4 2 • 3 • 5 , 7 2 , 10 2
 • 3 , 11 1 • 2 , 12 1 • 2 , 13 1 14
 1 • 2 “ ” “ ” .
 4!

< 793 ,2001. 10. 24.>

.

< 808 ,2002. 9. 30.>

() .

()

4 5 .

< 835 ,2004. 5. 29.>

.

< 928 ,2008. 2. 25.>

2008 3 1 .

< 1 ,2008. 3. 4.>()

1 () .

2 4

5 ()

3 1 3 , 4 2 , 3 •
 5 , 6 1 6 , 3 4 , 7 2 ,
 10 2 • 3 , 11 1 2 , 12 1 2 , 13 1 ,

14 1 2 “ ” “ ”

.

<63>

< 24 ,2008. 12. 31.> ()

1 () 2009 1 1 .

2 ()

.

7 1 “ ” “ ” .

< 58 ,2010. 4. 16.>

.

< 122 ,2011. 10. 26.>

.

< 130 ,2011. 12. 27.>

2012 1 1 .

< 137 ,2012. 2. 9.>

1 () . , 4 5

2014 1 31 .

2 (.) 4 5 2014

1 31 .

< 1 ,2013. 3. 23.> ()

1 () . < >

2 6

7 ()

3 1 , 3 , 4 2 , 3 • ,
 5 , 4 2 6 , 6 3 , 7 1 • 2 , 10
 2 • 3 , 11 1 , 2 , 12 1 , 2 , 13
 1 , 14 1 2 “ ” “
 ” .
 7 3 “ ” “ ” .
 <61>

< 2 ,2013. 5. 20.>()
 1 () 2013 6 12 .
 2 ()
 4 1 “ 「 」 (“ ”) 2 2 4 ”
 “ 「 」 (“ ”) 2 3 5 ” ,
 6 4 2 5 “ ” “ ” .

< 4 ,2013. 8. 16.>

.

< 59 ,2015. 4. 20.>
 2018 1 1 .

< 134 ,2017. 7. 21.>

.

< 160 ,2018. 7. 25.>

.

< 179 ,2019. 4. 1.>
 1 () .

2 ()
2

.

< 223 ,2021. 1. 6.>

1 () .

2 ()

7 1 .

< 265 ,2022. 4. 27.> (7
)

.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 제1호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나.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 제2호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다.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 제3호 | 운영정지
4개월 | 운영정지
8개월 |
| 라. 영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 제4호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 마. 영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 제2조의3제1항 제5호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4개월 |

비고: 시정명령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 개별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2개월
2. 제2호 개별기준 라목 및 마목의 경우: 1개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표(제7조제1항 관련)

1. 정교사(1급)과정 및 정교사(2급)과정

| 정교사(1급)과정 | | 정교사(2급)과정 | |
|--|-----------------|--|-----------------|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관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
질 | 30 ~ 50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관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
질 | 30 ~ 50 |
| 나. 전문역량: 정교사(1급)
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의 전공지식을
포함한다) | 50 ~ 70 | 나. 전문역량: 정교사(2급)
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의 전공지식을
포함한다) | 50 ~ 70 |
| 합계 | 100 | 합계 | 100 |

2. 준교사과정 및 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

| 준교사과정 | | 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
· 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 | |
|---|-----------------|---|-----------------|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관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
질 | 30 ~ 50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관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
질 | 30 ~ 50 |
| 나. 전문역량: 준교사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필
요한 지식이나 기술(「교
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 50 ~ 70 | 나. 전문역량: 전문상담교사
(1급)·사서교사(1급)·보
건교사(1급)·영양교사(1
급)로서 전문적인 직무수 | 50 ~ 70 |

| | | | |
|-------------------------------|-----|----------------|-----|
|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의 전공지식을 포함한다) | | 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 |
| 합계 | 100 | 합계 | 100 |

3. 수석교사과정, 교감과정·원감과정 및 교장과정·원장과정

| 수석교사과정 | | 교감과정·원감과정 | | 교장과정·원장과정 | |
|---|-----------------|---|-----------------|---|-----------------|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영역 | 이수시간
배정비율(%) |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원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 30 ~ 50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원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 30 ~ 50 | 가. 기본역량: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교육관·교직원 등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 30 ~ 50 |
| 나. 전문역량:
수석교사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 50 ~ 70 | 나. 전문역량:
교감·원감으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 50 ~ 70 | 나. 전문역량:
교장·원장으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 50 ~ 70 |
| 합계 | 100 | 합계 | 100 | 합계 | 100 |

제 호

교육연수 이수증

성명

생년월일

연수 종류

이수시간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연수 목적

을 위한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수원장

직인

1. 가



가

[2026. 6. 23.] [36442 , 2026. 6. 23.,]

(- , ,) 044 - 201 - 8436
 (- , , 가,) 044 - 201 - 8445
 (- 가, 가, 가) 044 - 201 - 8446
 (- ,) 044 - 201 - 8442

1

1 () 「 가 」 55 59 , 59 2 60
 67 가 .
 [2011. 7. 4.]

2 () 가 (“ ”) 「 가 」 (“ ”
) 55 .
 1 1 .

, .< 2013. 3. 23., 2014. 11. 19.>

[2011. 7. 4.]

2 2()

[2011. 7. 4.]

3 ()

.
 (「 가 3 3 」
) • (連名) 가 가
 .

[2011. 7. 4.]

4 (•) (公私)

.

[2011. 7. 4.]

4 2()

· ,

·

1.

2.

3.

4.

가

[2011. 7. 4.]

5 ()

·

·

·

, 가

. < 2024. 7. 2.>

·

,

가

·

. < 2013. 3. 23., 2014. 11.

19.>

[2011. 7. 4.]

6 ()

(“ ”)

,

·

가

,

,

· ,

. < 2019. 12. 31.>

· ,

·

30

· , 가

·

. < 2017. 3. 20.>

[2011. 7. 4.]

6 2() (.
((休務) . ,
가 6

1. 「 」 146 2 1

2. 「 」 147 9

3. 「 」 148 3

4. 「 」 174 1

5.

1 1

[2024. 4. 2.]

[6 2 6 3 <2024. 4. 2.>]

6 3() 32 3

. ,
.

[2011. 7. 4.]

[6 2 <2024. 4. 2.>]

7 () 32 4

. .

[2011. 7. 4.]

8 ()
15

[2011. 7. 4.]

8 2()

.
3

.
 .< 2013. 3. 23.,
 2014. 11. 19.>

[2011. 7. 4.]

8 3(•)

, .< 2019. 12. 31., 2021. 12. 31.>

1. 1 , , 10 2 , ,
 가,

2. 1 (「 」 2 5
)

3. 1 3 가
 「 가 」 83 2 1 .

4.

5.

, , 10 2
 , , 가,

.<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2021. 12. 31.>

2 .
 .<

2013. 3. 23., 2014. 11. 19., 2019. 12. 31.>

1 3 •

.< 2019. 12. 31.>

[2011. 7. 4.]

8 4()

(“ ”

) • .

1.

2.

3.

(“ ”)

’ 4

가

1 5

[2024. 7. 2.]

2

9 () 1 40 ,

. < 2024. 4. 2.>

1 9 6 , 12

1 , ,

1

1 40

.< 2013. 3. 23., 2014.

11. 19.>

「 」 32 3

.< 2018. 7. 2.>

[2011. 7. 4.]

10 () ,

(“

”) 9 1 2

. < 2013. 3. 23., 2014. 11. 19.>

9 1 2 .

9 4 (“ ”)

.< 2015. 10. 6.>

< 2013. 3. 23., 2014. 11. 19.>

[2011. 7. 4.]

11 ()

9 10 (“
”) . < 2020. 10. 20.>

1

. , 가
. < 2020. 10. 20.>

1

1

9

8

, . < 2017. 3. 20., 2021. 12. 31.>

1.

2. 1 가

1

「

」 15

가

. < 2018. 7. 2.>

2

4

,

가

. < 2018. 7. 2., 2020. 10. 20.>

[2011. 7. 4.]

12 ()

.

1.

2. 1 가

가

3. 「 . 」

[2011. 7. 4.]

2

2

< 2016. 11. 22.>

13 ()

,

(

“ ”) .

1.

.

2. 1

.

.

1

13 8 .

1. 「 」

2. 「 」

3.

4.

5. 「 」 「 」

6. 「 」

7. 「 」

8.

9. 가

1

2

(

“ ”) .

13 2 2 • 3 13 6 3 . < [2024. 7. 2.>](#)

[2016. 11. 22.]

13 2(가) (“ ”) (「 」 2 3 .) 가 .

10 ()

, (“ ”)

가 , 가 가 .

, 가 , [가
(外廳長)] 가

2

가

가

가

[2016. 11. 22.]

13 3()

가 .

. < [2019. 12. 31.>](#)

1.

• ()

2. , ,

3.

4. 10

5. 가

1 .

.< 2019. 12. 31.>

[2016. 11. 22.]

13 4 <2024. 7. 2.>

13 5()

. < 2024. 7. 2.>

, .<

2024. 7. 2.>

(國威)

,

.

[2016. 11. 22.]

13 6() 30

.

1

15 가 . , 가 ,

.< 2017. 3. 20.>

14

.

, 「 」 4

2

.< 2021. 11. 30.>

2 4

.

[2016. 11. 22.]

13 7(가) 13 2 가

[2016. 11. 22.]

13 8() 가

13 6 ,

가

[2016. 11. 22.]

3 가

14 (가) 가 가(年暇), 가, 가(公暇) 가

[2011. 7. 4.]

15 (가) 가 , 28 2
2 • 3 10 5

5

가 3 . <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8. 7. 2., 2023. 7. 18., 2024. 7. 2.>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1 “ ” 「 」 25 1 3

, (年月日數)

(算入)

.<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71 2 4 「 」 31 2 1

2.

3. 「 」

• (71 1 1
) • •

1 가(18 2 가) 1 .< 2019. 12. 31.>
 2. 16 5 가 가 가
 [2011. 7. 4.]

15 2 <1981. 6. 24.>

16 (가) 가
 • (公・私)
 가 . < 2015. 10. 6.>

<2015. 10. 6.>

가 (半日) , 가 2 가 1
 .< 2015. 10. 6.>
 가

.< 2015. 10. 6.>

가 가
 가 (11 4 가 , 가
) 가
 가 . 가 가 20
 .< 2015. 10. 6., 2018. 7. 2.>

15 1 가 가
 가 가 가 15 1
 가 .< 2015. 10. 6.,
 2016. 11. 22., 2018. 7. 2.>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
| 1년 미만 | 5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10 |

[2011. 7. 4.]
 [2015. 10. 6.]

16 2(가) 가
 3 31 10 가

가 가 , 가

가 가

16 5 가 . <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가 가 (

가) 가 .< 2018. 7. 2., 2019. 12. 31.>

1. 6 1 7 31
가 , 10

2. 1 가
10 31 1 가
가

2

가 가 .< 2018. 7. 2.>

12 1 2 2
가 (가
2

.< 2018. 12. 18.>

[2015. 10. 6.]

16 3(가) 가 가 11
4 가

• .< 2016. 11. 22., 2018. 7. 2., 2021. 12. 31., 2023. 7. 18.>

1 • 가(“ 가 ”)
16 5 가 .< 2021.

12. 31., 2024. 7. 2.>

1 2 가 • , 가 ,
가 가 .< 2021. 12.

31., 2024. 7. 2.>

[2015. 10. 6.]

16 4(10 가) 15
1 가 16 3 1 가 ,
가 3 10 가

가 , 가

1 10 가

[2015. 10. 6.]

17 (가) , , 「 31 2
가 , 「 2
가 . < 2018. 7. 2.>

가

, 15 1

, 15

.< 2018. 7. 2.>

| | | |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 해당 연도의 |
| 12(개월) | | 연가 일수 |

2

가 (16 3 가) 가
(16 6 가)
. < 2018. 7. 2.>

. 8 가 1 .

< 2018. 7. 2.>

18 1 가 6 가 가 ,
가 가 가 .< 2018. 7. 2.>

[2011. 7. 4.]

18 (가)

60 가
8 가 1 , 17 5 가 가 가
. < 2015. 10. 6., 2018. 7. 2.>

1.

2. 가

180 가 .< 2015. 10. 6.>

가 가 6

.< 2018.

7. 2.>

[2011. 7. 4.]

19 (가) (12 「
 」 3 3 2)
 가 .

<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2020. 10. 20., 2021. 12. 31., 2023. 12. 5., 2025. 12. 4., 2026. 6. 23.>

1. 「 」 . .
- 가
2. , , , 가
3. 가
4. .
5. (遠隔地) (轉補)
6. 가
7. 「 」 129 131 , 「
 」 52 「 」 11 1
8. 「 」 가
9. 「 」 32 5
10. , 가 가
11. , 가
12. 가. 「 」 9
 (選任)
 . 「 」 17 「
 」 17 (「)
 , 1)
 . 「 」 17 「
 」 25 (2)
13. 「 」 5 1
 가
14. 「 」 1 24
 25 42 2 3

[2011. 7. 4.]

20 (가) 가
2 가 . < 2017. 3. 20.>

90 (100 , 120) 가
, 가 45 (60)
가 44 (59) 가 .< 2014. 6. 30., 2015. 10. 6.,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 」 14 1
. 3) •
2. 가 40
3. • (早産)

1 가 .
가 .< 2011. 7. 4., 2019. 12. 31., 2024. 7. 2.>
1 2
. 12 32
.< 2013. 5. 31., 2018. 7. 2., 2024. 7. 2., 2025. 2. 11., 2025. 7. 22.>

8 2 가 36
1 2 .< 2018. 7. 2., 2024. 7. 2., 2025. 2. 11.>

「
」 9 1 15 가
가 .< 2011. 7. 4., 2013. 5. 31., 2021. 6. 1.>
<2005. 6. 30.>
<2005. 6. 30.>

「 」 3 1 [, () 가 .
5 (14 1
10) 가 .< 2020. 10. 20.>

가 가

.< 2011. 7. 4.,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15 : 10
 2. 16 21 : 30
 3. 22 27 : 60
 4. 28 : 90
- 가 10 3
- 가 가 .< 2019. 12. 31., 2024. 7. 2.>

가 .< 2011. 7. 4.,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
가. : 2 (1 , 2
1)
 . : 3 (1
 , 2 2)
 . : 4 (1 ,
1 , 2 , 2
2)
2. : 1
가
가 10 가 .

.< 2015. 10. 6., 2019. 12. 31.>
10 가 가

.<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 「 」 , 「 」 「 . 」
2 (“ ”) . . ,
2. 가
3. 가 「 」 「 .
- 「 2
4. 「 」 2 2 (“ ”
) . (「 」 52
「 」 24 25)

5. , , , , (), ,

14 가 가 , (5
) 가 가 (14
1)

1 가 . , 가 「
가 」 4 1
가 1 가 .< 2020. 10. 20., 2024.
7. 2., 2026. 6. 23.>

<16> 10 가
. <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17> 4
, 가 .
가 , 가
. < 2023. 7. 18.>

1. 「 」 5
가 .

2. 1 가 .

<18> 5
가 1 .
15 2 .< 2025. 7. 22., 2026. 6. 23.>

1. 5 10 : 3
2. 10 20 : 5
3. 20 : 7

<19> 10
가 .< 2025. 7. 22.>

<20> 1 6 , 9 16 , 18 19
가 .<
2025. 2. 11., 2025. 7. 22.>

21 <1972. 5. 4.>

22 (가) 가 가
. , 가
. < 2015. 10. 6., 2021. 12. 31.>

1. 18 1 가 30
2. 18 2 가 30
3. 가 30
4. 가 30

[2011. 7. 4.]

23 ()

[2024. 7. 2.]

24 (가) 가 가 .

[2011. 7. 4.]

24 2(가) 「 」 2 1 1 가
 . < [2013. 3. 23.](#)>

[2011. 7. 4.]

24 3(가) 「 」 3 2 3
 , 4 , 3 3 1
 57 3 1
 (“ ”) 가 11 2 , 15 1 ,
 16 2 1 , 17 4 , 18 1 • 2 , 20 4 • 5 22
 3 .

[2019. 12. 31.]

4 < 2011. 7. 4.>

25 ()

, 가
 , 가

1. , ,

2. , , (私企業體)

3.

4.

[2011. 7. 4.]

26 (가) 25
가

1 가 .

1 “ ”

, 3 .<

[2013. 12. 11.>](#)

[2011. 7. 4.]

5 < 2011. 7. 4., 2023. 12. 5.>

27 () 65
가 .

1. , ,

2.

3.

1 1 가

.

1. . 가

2. . .

3.

. .

4. (旗)

5.

[2011. 7. 4.]

28 () 66

(

) . < 2011. 7. 4.,

[2013. 3. 23., 2013. 12. 11., 2013. 12. 16., 2015. 3. 11., 2017. 7. 26.>](#)

1. •

2.

3.

4. 「 」 가

5.

[2011. 7. 4.]

29 () 「

」 3 3 2

3 4

「

」 2 3 2

2 4

[2023. 12. 5.]

< 5043 ,1970. 6. 15.>

.

< 6161 ,1972. 5. 4.>

1972 4 1

. , 15

28

1973 1 1

.

< 8544 ,1977. 4. 22.>

.

< 9638 ,1979. 10. 6.>

.

< 10373 ,1981. 6. 24.>

.

< 10804 ,1982. 4. 29.>

()

() 8 2 3

가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1084 ,1983. 3. 30.>

()

() 10,804

2

< 11783 ,1985. 10. 28.>

< 12113 ,1987. 4. 1.> ()

1 ()

2 () .
28 “ ” .

< 12328 ,1987. 12. 19.>

.

< 12529 ,1988. 10. 8.>

.

< 12640 ,1989. 3. 7.>

.

< 13860 ,1993. 2. 24.> ()

1 () 1993 3 1 .

2

3 () .

20 4 “ ” “ ” , “ ” “ ” .

< 14262 ,1994. 5. 16.>

.

< 14438 ,1994. 12. 23.> ()

1 () .

2 4

5 () <264>

<265> .

8 2 3 ' ' ' ' .

<266> <327>

< 14825 ,1995. 12. 14.>
1996 1 1 .

< 15244 ,1996. 12. 31.>
1997 1 1 . , 15 3 1998 1 1
.

< 16610 ,1999. 12. 7.>
.

< 17399 ,2001. 10. 31.>
() .
(가) 20 2 2001 11 1
.

< 17582 ,2002. 4. 18.>
.

< 18438 ,2004. 6. 24.>
() . , 9 13 2004 7
1 , 15 1 2006 1 1 .
() 2005 6 30 13 1
2 .

< 18580 ,2004. 11. 3.>()
1 () 2005 1 1 .
2
3 ()

가

28

2*

< 18892 ,2005. 6. 30.>

() 2005 7 1 . , 16 6 , 20 3 6
8 2 2006 1 1 , 26

(40) . . 가 . 가
5 가 40 9 , 11 , 13
1 , 16 6 , 20 3 • 6 8 , 22 2

(가) 20 7
2005 12 31 20 가
2006 6 30 10 가 가 .
15 2

< 19513 ,2006. 6. 12.>()

1 () 2006 7 1 .

2 3

4 () 3&

3* 가 .

26 3 “ 3 ” “ 3
”

3(<241>

< 19722 ,2006. 11. 1.>

< 20059 ,2007. 5. 16.>()

1 () . , . . . < > . . . 4 1
• 2 2008 1 1 .

2 3
 4 () 가 .
 15 2 1 .
 1. . (1 1
 1)

< 20741 ,2008. 2. 29.> ()
 1 () . < >
 2 5
 6 () 2*
 2(가 .
 5 3 8 2 4 “ ” “ ” .
 8 3 1 • 2 , 9 3 , 10 23 “
 ” “ ” .
 8 3 1 “ ” “ ” .
 24 2 “ ” “ ” .
 28 “ ” “ ” .
 3) <105>

< 21021 ,2008. 9. 18.>

.

< 21861 ,2009. 11. 30.>

.

< 21920 ,2009. 12. 30.> ()
 1 () 2010 4 2 .
 2 ()
 가 .
 28 “ ” “ ”
 ” .

< 22151 ,2010. 5. 4.>()
 1 () 2010 5 5 .
 2 3
 4 () 2(
 3) 가 .
 9 4 “ 「 」 30
 ” “ 「 」 32 2 ” .
 3! <192>

< 22274 ,2010. 7. 15.>
 1 () . , 15 1 3
 2 () 15 2
 3 (가) 17 1
 4 (가) 20 10 1 2
 5 () 22
 가 가
 6 (가) 2 가
 가
 7 (가 가)
 15 3
 8 () .
 12 2
 1
 [1]
 (12 1)

, 가 ,
.

< 22564 ,2010. 12. 29.>()
1 () 2010 12 30 . < >
2 6
7 ()
가
18 1 2 “ ” “ ” .
2(
8

< 22691 ,2011. 3. 7.>()
1 () .
2 4
5 () 가 .
15 2 1 “ 1 1 1
” “ 1 1 1 ,
1 ” .

< 23010 ,2011. 7. 4.>

.

< 23015 ,2011. 7. 4.>()
1 () 2011 8 24 .
2 ()
가
28 “ (” “
() ” .

< 24077 ,2012. 8. 31.>()
 1 () 2012 9 1 . < >
 2 7
 8 ()
 가
 19 6 “ 「 」 47 ” “ 「 」 52 ” .
 3)
 9

< 24425 ,2013. 3. 23.>()
 1 () . , 6
 .
 2 5
 6 () 3%
 3^ 가
 2 3 , 5 3 8 2 4 “ ” “
 ” .
 8 3 1 , 2 , 9 3 , 10 1 , 4 , 15
 1 , 16 6 23 “ ” “
 ” .
 8 3 1 “ ” “ ” .
 23 “ ” “ ” .
 24 2 “ ” “ ” .
 28 “ ” “ ” .
 3& <129>

< 24554 ,2013. 5. 31.>
 2013 7 1 .

< 24927 ,2013. 12. 11.>

1 () 2013 12 12 . , 15 1
 (28 2 2 • 3 10
) 2014 1 1 .
 2 (가가) 11530 가
 3 2 3
 2
 가 2 가 2 .

< 25000 ,2013. 12. 16.> ()

1 () . < >
 2 7
 8 ()
 가 .
 24 3 “ ” “
 ” .
 28 “ ” “
 ” .
 3 “ ” “ ” ,
 2 가 , 3 “
 ” “ ” .

< 25417 ,2014. 6. 30.>

1 () 2014 7 1 .
 2 (가) 20 2
 .
 20 2 가
 .

< 25751 ,2014. 11. 19.> ()

1 () . , 5

2 4
 5 () <136>
 <137> 가
 2 3 , 5 3 8 2 4 “ ” “ ”
 .
 8 3 1 , 2 , 9 3 , 10 1 , 4 , 15
 1 , 16 6 23 “ ” “
 ” .
 8 3 1 “ ” “ ” .
 3 2 가 “ ” “ ” .
 <138> <418>

< 26140 ,2015. 3. 11.> ()
 1 () .
 2
 3 ()
 가
 28 4 “ ” “ 가 ” .

< 26581 ,2015. 10. 6.>
 1 () .
 2 (가) 16 2 가
 (12 1 2
) 2015
 가 10 31 .

< 26944 ,2016. 2. 3.> ()
 1 () .
 2
 3 ()
 가
 19 8 “ 「 」 ” “ 「 」 ” .

2#

4

< 27608 ,2016. 11. 22.>

1 ()

2 ()

3 () 「 」 (2

. “ 「 」 ”)

.

4 (가) 「 」 3

가 13 2 가 13 3

「 」 4

「 」 4

13 3

5 (가) 가

가 16 6

6 () 「 」

「

」

< 27620 ,2016. 11. 29.> ()

1 () 2016 11 30

2 3

4 ()

가

19 1 “ ” “ ”

2^

< 27822 ,2017. 1. 31.> ()

1 ()

2

3 () 가 .
15 2 1 “ ” “ ” .

< 27948 ,2017. 3. 20.>

1 () .
2 () 13 6 2 .

< 28211 ,2017. 7. 26.> ()

1 () . , 8 .

2 7
8 () <362>
<363> 가 .
28 “ ” “ ” .
<364> <388>

< 29012 ,2018. 7. 2.>

1 () .
2 (가) 11 4 2018 7
1 .
3 (. 가) 16 3 1 2
가 .
4 (가) 17 1 .
17 2 .

5 (가) 18 3 가 가 6
가 가 6
가 가 .
6 (가) 19 6 11 .

7 () 20 5 3 4

8 (가) 2 가

9 (가) 17 2
가 17 3

< 29180 ,2018. 9. 18.>()

1 () 2018 9 21 .

2 17

18 ()

가

15 2 3 “ 「 」 ” “ 「 」 ” .

4#

19

< 29181 ,2018. 9. 18.>()

1 () 2018 9 21 .

2 23

24 ()

가

15 2 “ 「 」 23 1 ” “ 「

」 25 1 ” .

2#

25

< 29375 ,2018. 12. 18.>

.

< 30256 ,2019. 12. 24.>()

1 () 2020 1 16 . < >

2 31

32 ()

가

19 6 “ 「 」 43 ” “ 「 」 129

131 ” .

4)

33

< 30310 ,2019. 12. 31.>

1 () 2020 1 1 . , 20 3 • 10 • 11

15

2 (가 가) 20 10

1 가 가

20 11 1 가 20

10

3 (가) 1 20

3 가 20

15 가 .

< 31118 ,2020. 10. 20.>

1 () .

2 () 11 2 • 5 3 5

3 (가) 20 9

가

가 20 9 가

4 (가 가) 가

20 14 15 가

가 .

< 31709 ,2021. 6. 1.>()

1 () 2021 7 13 .

2

3 ()

가

20 6 “ 「 」 ” “ 「 」 9 1 ” .

< 32172 ,2021. 11. 30.>()

1 () 2022 1 13 . < >

2 6

7 ()

가

13 6 4 “ ” “ , ” .

< 32310 ,2021. 12. 31.>

1 () 2022 1 1 .

2 (가) 20 12

() .

< 33638 ,2023. 7. 18.>

1 () . , 15 1 3

2 (가) 15 1

1 28 2 2 • 3 10

2023 가 .

3 (가) 20 17

가 .

4 (가) 2

가 .

< 33905 ,2023. 12. 5.>
2023 12 11 .

< 34381 ,2024. 4. 2.>
.

< 34660 ,2024. 7. 2.>
1 () .
2 (. 가) 16 3 2 3
 . 가 .
3 () 20 5 3 4
 .
4 (가) 2 가 .

< 35258 ,2025. 2. 11.>
1 () .
2 (가) 20 2 .
3 (가) 2 가
 . 가
2 가 .
1. 가
2. 가

< 35665 ,2025. 7. 22.>
1 () .
2 (가) 18 20
20 18 2

1 가 .

< 35893 ,2025. 12. 4.>

1 () .

2 (가) 19 6 가

.

< 36442 ,2026. 6. 23.>

1 () .

2 (가) 8 10

20 18 1 2

가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0.7.15>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5. 2. 1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 <개정 2025. 7. 2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15조에 따른 제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 다.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한 권장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3. 병가

-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text{시간}$$

- 나. 가목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4. 특별휴가

-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다. 삭제 <2019. 12. 31.>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가. 행정기관의 장은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나. 시간외근무 시간이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2026. 8. 4



가